

Form 20-F 한글 요약번역본

당사가 공시하는 Form 20-F의 한글 요약번역본(이하 ‘요약번역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91조,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7조 제1항 2호 가목 (7) (나)에 의하여 공시된 것으로서, 당사는 2011. 6. 20. 미합중국(이하 ‘미국’)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EC)에 공시된 Form 20-F Annual Report(2010)의 내용을 그 취지에 따라 요약하여 본 요약번역본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당사가 공시한 요약번역본의 원문인 Form 20-F Annual Report(2010)는 당사의 영문 홈페이지의 SEC Filings-Form20-F(US GAAP)¹나 SEC 홈페이지²에 공시되어 있으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Form 20-F Annual Report(2010) 중, 당사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관한 정보 등을 나타내는 표와 그 표에 대한 설명은 본 요약번역본에서는 명칭(또는 간략한 설명)과 표만으로 기재하여 본 요약번역본에 첨부하였으며, 원문과 본 요약번역본 상의 당사와 관련된 법령과 관련규정 등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금융감독법규’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요약번역본에서 “원문”이라 함은 당사의 “Form 20-F Annual Report(2010)”를,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연결감사보고서 포함)”라 함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어 있는 당사(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은행)의 “2010 년도 사업보고서”와 “2010 년도 감사보고서”를, “US GAAP”이라 함은 “United States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를, “K GAAP”이라 함은 “Korean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를 각 의미합니다. 다만, 본 요약번역본에 명시된 일부 금융용어는 US GAAP 과 K GAAP 정의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주소: http://www.kbfng.com/Eng/Public/FbUSgaap/kbfng/eng_list.jsp

2. 주소: <http://www.sec.gov/Archives/edgar/data/1445930/000119312511168541/0001193125-11-168541-index.htm> 이며, SEC 홈페이지 상에서는 Search for Company Filings-Company or fund name...-KB Financial Group-CIK(0001445930)-20-F 를 참조할 것.

재무 및 기타 정보의 제공

당사의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및 2010년 말 현재의 각 회계연도에 관한 모든 재무정보는 본문에서 다른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US GAAP에 따라 작성하였음. KB금융지주는 2008.9.29. 국내 관련법규상의 포괄적 주식이전을 통하여 설립되었음. 이 주식이전은 US GAAP상 동일지배하의 당사자 사이의 거래로 회계처리 되었음. 따라서 이 공시자료에 포함된 연결재무제표는 위 주식이전 전의 날짜 혹은 기간의 것이면 국민은행과 그 자회사에 대한 것을 의미하며, 위 주식이전 후의 날짜 혹은 기간의 것이면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을 포함한 KB금융지주의 자회사에 대한 것임. 본 요약번역본에서 다른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당사”, “우리” 또는 “KB금융그룹”은 KB금융지주 및 KB금융지주의 자회사 등을 의미하고, KB금융지주의 설립일인 2008.9.29. 이전의 기간이면 국민은행 및 국민은행의 자회사를 의미함. 또한 본 요약번역본에서 인용되거나 첨부되는 표에서, 어떠한 항목의 총액과 합계금액의 불일치는 반올림한 결과임. 편의상 원문에서의 원화(W)와 미화(\$)의 환율은 2010.12.31. 뉴욕연방준비은행의 정오매입율인 1,130.6원 = 미화1.00달러의 환율을 기준으로 하였음.

미래 상황에 대한 서술

SEC는 투자자들이 회사의 전망에 대한 더 나은 이해와 정보를 통한 투자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회사가 미래 상황에 대한 서술을 공시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는바, 원문은 이에 따라 미래 상황에 대한 서술을 담고 있음. 다만, 원문의 “Item 3D. 투자 리스크 요소”와 더불어, 전략의 성공적 수행능력, 미래의 무수익여신 수준, 당사의 성장과 발전, 신용손실과 투자손실에 대한 총당금의 적정성, 기술의 변화, 이자율, 투자소득, 자금조달과 유동성의 용이성, 자금운용전망, 시장리스크의 노출 정도, 비우호적인 시장상황 및 감독규제 등 기술되지 않은 여러 위험요소로 인하여 원문의 미래 상황에 대한 서술과는 크게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위험요소는 그 본질상 추정치이므로, 향후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크게 다를 수 있으며, 그 결과 영업성과와 수익에 대한 실제장래이익, 손실 또는 영향 등은 실제와 크게 다를 수 있음(예를 들면, 수익감소, 비용증가, 자본비용증가, 자본투자의 지연, 예상되는 영업성과 향상의 미실현 등). 또한, 영업 또는 투자에 대한 국내외의 정치경제적 영향, 국내의 통화 및 이자율 정책,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예상외의 이자율 변동, 외화환율, 주식과 채무증권의 가격과 수익률, 국내 금융시장의 동향, 국내외 법규정의 변경, 국내 경쟁과 가격결정의 변화, 자산가치의 지역적 또는 전반적 변화 등 기술되지 않은 여러 위험요소들에 의하여 원문에서 평가된 것과는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투자자들은 위험요소에 관한 세부내용에 관하여 원문과 본 요약번역본상의 “Item 3D. 투자 리스크 요소”를 참조하기를 바라며, 본 미래 상황에 대한 서술은 원문 작성시점에 국한된 자료에 의한 것이므로, 원문의 내용을 맹목적으로 수용하지 말아야 할 것임.

당사는 법에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문의 미래 상황에 대한 서술을 업데이트 또는 수정하지 않으며 이에 관한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음.

Item 1. 이사, 경영진, 고문 : 해당사항 없음.

Item 2. 공모 통계 및 예상 일정 : 해당사항 없음.

Item 3. 주요 정보

Item 3A. 요약재무제표

원문에 있는 당사의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및 2010년 말 현재 각 회계연도의 각 요약연결재무제표와 영업정보는 US GAAP에 따라서 작성된 당사의 연결재무제표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음. 2006년, 2007년 및 2008년 말 회계연도의 연결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인 Deloitte Anjin LLC가 감사하고 2009년 및 2010년 말 회계연도의 연결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인 Samil Pricewaterhouse Coopers가 감사함.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자료는 본문의 “Item 5. 영업 및 재무상태에 대한 검토 및 전망” 부분을 참조.

연결손익계산서: 첨부 표1)

원문의 연결손익계산서 부분은 US GAAP에 의한 것이며,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다만, 원문의 연결손익계산서 부분은 사업보고서 XI.재무제표 등 1.나.연결손익계산서와 K GAAP상의 감사보고서 중 연결손익계산서(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연결재무상태표: 첨부 표2)

원문의 연결재무상태표 부분은 US GAAP에 의한 것이며,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다만, 원문의 연결재무상태표 부분은 사업보고서 XI.재무제표 등 1.가.연결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와 K GAAP상의 감사보고서 중 연결재무상태표(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수익성지표 및 기타 자료: 첨부 표3)

원문의 수익성지표 및 기타 자료 부분은 US GAAP에 의한 것이며,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K GAAP상의 자기자본비율: 첨부 표4)

원문의 자기자본비율 부분은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다만, 원문의 자기자본비율 부분은 사업보고서 II.사업의 내용 6.가.자본적정성 관련 지표(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자산건전성 비율 및 기타 자료: 첨부 표5)

원문의 자산건전성 비율 및 기타 자료 부분은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요약통계정보

평균잔액 및 관련 이자손익: 첨부 표6)

원문의 평균잔액 및 관련 이자손익 부분은 US GAAP에 의한 것이며,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다만, 원문의 평균잔액 및 관련 이자손익 부분은 K GAAP상의 감사보고서 주석(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순이자이익의 변동 추이 분석 - 규모 및 이자율 분석: 첨부 표7)

원문의 순이자이익의 변동추이 부분은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환율

원문은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조. 원문에 기재된 환율은 뉴욕연방준비은행의 정오매입율에 의한 것임.

Item3B. 자본 및 부채 : 해당사항 없음.

Item3C. 공모 사유 및 대금의 사용 : 해당사항 없음.

Item3D. 투자 리스크 요소

당사의 가계여신 포트폴리오 관련 리스크

장래 시장 상황의 변화 등 기타 요소로 인하여 당사 가계여신부문의 연체수준이 증가할 수 있음.

가계여신(주택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이 2007.12.31. 88,839십억원에서 2010.12.31. 현재 98,233십억원으로 증가하였음. 이는 2010년 말 기준으로 여신 총액의 50.0%에 해당함. 당사의 가계여신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당사의 기타가계자금대출은 주택자금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대개는 무담보대출로서 상대적으로 신용리스크가 큰 경향이 있는데, 당사의 기타가계자금대출 잔액은 2007.12.31. 23,020십억원에서 2010.12.31. 현재 27,790십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가계여신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7.12.31. 25.9%에서 2010.12.31. 현재 28.3%로 증가하였음. 가계여신부문은 보통 다른 여신부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마진율을 보이므로, 당사 가계여신부문의 성장은 최근 당사의 이자수익과 수익률에 크게 기여하였음.

한국과 전세계의 경제위기와 더불어 최근 가계여신 포트폴리오의 증가는 연체 수준과 자산건전성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음. 2007년부터 연체수준이 비교적 안정되어 당사의 무수익 가계여신(연체기간 90일 초과여신) 규모가 2007.12.31. 398십억원에서, 2010.12.31. 현재 389십억원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1년에는 증가할 수도 있음. 높은 가계여신 연체율로 인하여 당사의 대손충당금 및 대손상각 규모는 증가할 수 있고, 이는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당사의 가계여신에 대한 익스포저가 크다는 것은 당사가 한국 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 변동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함. 즉, 한국 가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업률의 증가, 이자율의 상승, 부동산 시장의 계속되는 하락세 또는 기타 한국 경제의 계속되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당사 가계여신부문의 성장이 둔화되고 자산건전성은 더 악화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국내 상황 관련 리스크” 부분 참조.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당사는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관리 강화, 가계대출절차의 개선 및 가계신용평가제도의 강화 등을 포함한 리스크 관리 절차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당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 가계여신 포트폴리오의 자산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장담할 수는 없음.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한국 경제의 악화를 고려하여, 2009년 3월 금융위원회는 당사를 포함한 국내 은행들에게 “프리 워크아웃 프로그램(pre-workout program)”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음. 이는 단기 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신용상당과 신용회복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서, 2009년 4월부터 운영 중이며 한국 정부가 프로그램 시행기간을 수 차례 연장함에 따라 2013년 4월까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총 채무액이 5억원 미만, 연체일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인 채무자에게 지원됨. 이러한 “프리 워크아웃 프로그램(pre-workout program)” 혹은 개인 채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해주는 정부의 다른 지원들로 인하여 당사가 여신을 확대하지 않았을 채무자들에게까지 여신을 확대하게 될 수 있으며, 제공하지 않았을 조건을 제공하게 될 수 있음. 이는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음.

당사의 신용카드사업은 장래에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이것은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당사의 신용카드포트폴리오에 관해서는, 당사의 연체비율(신용카드 총대출잔액에 대하여 1일 이상 연체된 금액의 비율을 뜻함)은 2007.12.31. 3.60%에서 2010.12.31. 2.15%로 감소하였음.

또한, 업계 관행에 따라, 당사는 신용카드 계정의 연체잔액(1일 이상 연체된 잔액을 의미)중 일정부분을 대환론(restructured loan)으로 취급하였음. 2010.12.31. 현재 대환론 잔액은 25십억원임. 대환론은 취급시점 또는 그 이후 일정기간 동안 연체채권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의 연체채권비율은 연체채권의 규모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 대환론 채권을 포함한 1일 이상의 연체채권 금액은 2010.12.31 현재 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채권의 2.30%임. 무엇보다도 한국의 부정적 경제 상황과 한국 가계대출자의 증가된 가계부채 관리능력의 부재의 결과로, 연체금액은 2011년도와 그 이후에 증가될 수 있음.

신용카드의 자산건전성 및 영업실적을 유지·향상시키려는 당사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당사의 신용카드 사업에서 연체의 증가와 신용카드 포트폴리오 자산건전성의 악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대손충당금과 상각을 증가시키거나 당사의 전반적인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신용카드사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기타 사업들과의 시너지효과를 증진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당사는 2011년 3월, 국민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업 부문을 인적 분할하여 신규 회사를 설립하였음. 그 결과, 당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신설 자회사인 주식회사 KB국민카드가 당사의 신용카드업을 운영하고 있음. 단, 당사는 별개의 카드회사를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 예상치 않은 사업운영상 혼란, 인력 및 사무기능을 재조직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 및 잠재적 고객이탈과 같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이러한 회사분할로부터 기대되는 효과를 실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중소기업 대출 관련 리스크

당사의 중소기업에 대한 적지 않은 익스포져 규모를 감안할 때, 중소기업이 겪을 수 있는 재무적 어려움은 당사의 자산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당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당사의 중소기업대출은 2007.12.31. 54,116십억원에서 2010.12.31. 현재 66,308십억원으로 증가하였음. 같은 기간 동안, 당사는 중소기업대출 중 무수익여신은 2007.12.31. 882십억원에서 2010.12.31. 현재 762십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산하며, 무수익여신비율은 2007.12.31. 1.6%에서 2010.12.31. 현재 1.1%로 감소되었다고 추산하나 2011년에는 증가될 수도 있음. 한편, 금융감독원 집계 자료에 의하면 국내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원화대출의 연체율은 2010.12.31. 기준으로 1.3%임. K GAAP에 따른 당사의 중소기업 원화대출의 연체율은 2007.12.31. 현재 금융감독원의 연체율 산정 방법에 따라 0.6%로 감소하였으나, 2010.12.31. 1.1%로 다시 증가하였으며, 2011년 더 증가할 수 있음. 따라서, 당사는 중소기업대출 연체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건설업, 숙박업, 음식점업 및 부동산업 등과 같이 경기 침체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고 높은 연체율을 보이는 산업에 속하는 중소기업고객의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여신사후관리에 대한 점검을 면밀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음. 다만, 이와 같은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대출의 연체 수준이 장래에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은 없음. 특히 최근 한국과 세계 경제의 침체에 의해 중소기업들이 겪게 되는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당사의 중소기업대출 부문의 자산건전성이 저하되었고 앞으로도 저하될 수 있음.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납품업체로서 재벌과의 밀접한 사업관계를 가지고 있는바, 재벌기업들의 상황 악화는 당사가 익스포져를 제공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전체 중소기업의 재무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당사의 중소기업 고객들의 상환능력에 손상을 줄 수 있음.

당사의 중소기업대출 중 적지 않은 부분은 이른바 소호(SOHO, Small Office/Home Office)고객에 대한 대출임. 이와 같은 소호 고객은 대체로 다른 기업고객에 비하여 경기 변동에 훨씬 크게 영향을 받음. 당사는 잠재 고객 특히, 소호 고객의 평가를 위한 신용평가시스템을 내부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 부문에서의 자산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종류의 고객들에 대한 익스포져를 관리해 나갈 것이지만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음.

2008년 하반기에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한국의 중소기업들의 재무상태 및 유동성이 악화되자, 한국 정부는 국내 은행들로 하여금 중소기업에 재무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음. 이에 당사는 2008년 11월, 중소기업에 적절한 유동성 비율을 향상시키는 등의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금융감독원과 체결하였음. 2008년 10월, 금융감독원은 당사를 포함한 국내 은행들에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해주는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fast track program)”을 실행할 것을 요구하였음. 당사는 2011.12.31까지 시행하는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fast track program)”을 통하여 신규대출, 대출기간연장, 이자율재조정 등의 유동성 지원을 함. 2011년과 그 이후 한국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은 불투명하지만, 한국 정부는 기존의 정책 및 지침을 연장하거나 한국 은행들이 중소기업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새로운 정책이나 지침을 도입할 수 있음. 당사는 이러한 정부 주도의 지침에 참여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중소기업 여신을 확장하게 될 수 있음. 이러한 지원을 받게 되는 중소기업의 재무상태와 유동성이 반드시 나아지리라는 보장은 할 수는 없

으며, 따라서 정부 주도의 지침에 따른 당사의 중소기업 익스포저의 증가는 향후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당사는 한국의 건설·조선업체들에 대한 익스포저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업체들의 재무 악화는 당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2010.12.31. 현재 당사의 건설업체에 대한 대출잔액은 6,422십억원, 조선업체에 대한 대출잔액은 1,178십억원이며, 이는 전체 대출의 각 3.3%, 0.6% 임. 당사는 한국의 건설·조선업체에 보증의 형태로 다른 익스포저도 가지고 있음. 건설업체의 경우, 주택·상업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위하여 당사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으면서 당사에 담보로 제공해준 익스포저가 있으며, 선박업체의 경우, 발주 계약의 지연 또는 불이행으로 인하여 조선업체가 환급하게 될 경우에 보전하기 위한 환급보증의 익스포저가 있음.

한국의 건설산업은 2008년 하반기에 시작된 한국 경제의 악화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하락 등으로 인하여 최근 하향세에 있으며, 2008년 10월 한국 정부는 미분양부동산매입 등 건설 산업에 9조원을 지원할 것을 발표하였음. 한편 한국의 조선업 역시 최근 세계경제 침체에 따라 선박 주문이 감소하여 심각한 하향세에 있음. 건설·조선업체의 재무상태 악화와 유동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는 2009년 상반기에 주요 은행들이 기업구조조정을 실행할 것을 독려했음. 그에 따라 2009년, 24개의 건설업체와 5개의 조선업체가 당사를 비롯한 금융기관과 한국 정부의 평가에 따라 워크아웃에 들어갔음.

또한, 2010년 6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6개의 채권금융기관들(당사 포함)이 미상환부채가 5백억원 이상인 한국 회사들을 대상으로 신용위험평가를 수행한 후, 워크아웃, 청산 또는 법정관리의 형태로 구조조정을 받을 65개의 회사를 선정하였다고 발표함. 상기 65개 회사들 중 가운데 16개 회사가 건설업체들이었으며 3개 회사가 조선업체들이었음. 그러나 이러한 방안이 한국의 건설·조선 산업을 성공적으로 재건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음.

건설업체들(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포함) 및 조선업체들에 대한 당사의 신용익스포저의 자산건전성이 하락하고 해당 회사들에 관한 워크아웃 절차가 2010년에 개시됨에 따라, 당사의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은 2009년 2,204십억원에서 2010년 3,568십억원으로 증가하였음. 당사의 한국의 건설·조선업체에 대한 익스포저에 대비한 총당금이 장래의 모든 손실을 보전하기에 부족할 수 있으며, 건설·조선업체에 대한 당사의 익스포저가 담보에 의해 보장된다고 하여도, 담보가액이 부족할 수 있음.

당사는 또한 한국에서 부동산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로 인한 건설 관련 신용익스포저를 가지고 있음. 한국의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의 자산건전성이 일반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국민은행을 비롯한 한국 은행들은 2010년 9월 부동산개발 프로젝트 평가 및 해당 프로젝트 대출의 자산건전성 분류를 위한 공통된 ‘모범규준’을 시행하였음. 2010년 3분기부터 발효된 해당 지침에 따라, 한국 은행들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의 자산건전성을 평가할 때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함. 그 결과, 당사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미상환대출금에 관한 추가적인 총당금을 설정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이는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음.

당사의 금융지주회사 구조와 전략 관련 리스크

당사는 지주회사 연혁이 길지 않아, 지주회사의 장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데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음.

당사는 2008년 9월 국민은행, KB부동산신탁, KB창업투자(현재는 KB인베스트먼트로 사명이 변경되었음), KB신용정보, KB데이터시스템, KB자산운용, KB선물, KB투자증권의 포괄적 주식이전을 통하여 설립되었음. 자세한 내용은 “Item 4A. 회사의 연혁과 발전” 부분 참조.

신용카드사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기타 사업들과의 시너지효과를 증진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당사는 2011년 3월, 국민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업 부문을 인적 분할하여 신규회사를 설립하였음. 그 결과, 당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신설 자회사인 주식회사 KB국민카드가 당사의 신용카드업을 운영하고 있음.

당사의 주요 전략은 기존의 폭넓은 가계·기업 고객에 대하여 전반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포괄적인 금융서비스의 제공자가 되어 금융지주회사의 이점을 누리는 것임. 이러한 계획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자본, 기반시설, 인력 및 경영에 대하여 투자가 요구됨. 만일 이러한 전략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당사는 투자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당사의 영업실적과 재무상태가 어려워질 수 있음.

나아가 금융지주회사로서의 성공은 당사가 다양한 자회사의 사업을 조정하여, 예상되는 시너지, 성장 기회, 비용 절감을 현실화 시키는 능력에 달려있음. 당사가 자회사의 업무를 금융지주회사 구조로 통합시켰다고 하여도, 자회사는 독립적인 경영진과 조직원을 가진 독립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해 나아갈 것임. 따라서 당사가 자회사의 일상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제한적임. 당사의 금융지주회사 구조가 가질 수 있는 이점 중의 하나는 당사가 전략의 일부로 추후에 추진하고자 하는 합병 및 인수에 참여할 수 있는 당사의 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임. 예를 들면, 당사는 추후에 민영화될 정부 소유의 금융기관들 중 하나를 포함하는 국내의 금융기관 또는 해외의 금융기관을 인수·합병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자회사의 통합과 향후 있을 수 있는 다른 회사의 통합을 위하여는 많은 시간과 재무, 경영 역량을 필요로 함. 게다가 그러한 과정은 당사의 업무와 IT 시스템에 혼란을 줄 수 있고, 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당사의 기준·조정·절차·정책 등에 의도치 않은 불일치를 가져올 수 있음. 이는 고객과의 관계 및 주요 구성원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음. 금융지주회사 구조의 예상되는 이점의 실현 및 당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인수나 합병은 자회사의 다양한 업무 통합의 어려움과 같은 요소들로 인해 제한될 수 있음.

금융지주회사의 자금 조달 형태에 제한이 있음.

당사는 자회사 주식의 소유 이외에는 다른 주요 자산을 소유하지 않은 금융지주회사이므로 당사의 자금 조달과 유동성의 주요 원천은 자회사의 배당임. 당사가 유동성 등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자회사로부터의 적절한 배당이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의 주식거래 및 사채발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함.

자회사의 배당은 자회사의 재무상태와 영업성과에 달려 있음. 장래에 당사의 자회사가 하이일드(high-yield) 또는 후순위채와 같은 채권계약을 맺게 되어 배당에 제한이 가해지고, 그 조건과 국내 관련법규에 따라 당사에 충분한 배당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음.

또한 자회사의 채권자들이 자회사의 자산에 대하여 당사의 채권자보다 선순위를 주장할 수 있음. 나아가 당사가 유리한 조건의 주식매매, 자금조달에 실패하게 되면 유동성 등의 재무 요건을 맞추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금융지주회사로서의 영업의 존속에 영향을 줄 수 있음.

금융지주회사로서, 당사의 이익을 배당하기 위하여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아야 함.

금융지주회사로서 당사의 기본적인 자산은 자회사의 지분임. 당사의 이익배당 능력은 자회사의 배당에 크게 달려있음. 이러한 배당은 상법, 은행법 및 여러 관계 당국에 의해 부과된 자본 기준 등에 의한 감독규정 등에 의한 규제를 받음.

당사의 자회사가 장래에 배당을 위하여 요구되는 각종 법규 등의 규제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자회사는 당사에 대하여 배당을 중지하거나 감축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가 배당을 하는 데에 있어 악영향을 줄 수 있음.

당사 전략의 중요 부분은 수수료 수익을 증가시키는 것이나,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을 수 있음.

당사의 주요 수익원은 이자수익이었음. 당사는 영업전략의 일환으로서 새로운 수수료 수익원을 개발하고자 하지만, 당사가 수수료 수익을 증가시키고 그에 따라 이자수익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당사의 고객들이 일반적으로 수수료를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는다는 개념을 얼마나 수용할 것인지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것임. 역사적으로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고객들이 부가가치형 금융서비스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수료 지불에 대한 고객들의 지속적인 거부감은 당사의 영업전략 실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007년 3월, 당사는 고객 요구에 부응하여 은행 서비스에 부과하던 수수료를 인하하거나 폐지하였음. 특히, 당사는 ATM을 통한 이체 및 영업시간 후 인출과 인터넷, 모바일 및 폰뱅킹 서비스를 통한 자금이체수수료를 인하하거나 폐지하였음. 당사는 또한 송금수수료를 인하하고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및 소득공제용 증명명 발행수수료를 폐지하였음. 이러한 조치가 당사의 은행업무 관련 수수료 수익 상승을 지속적으로 제한할 수도 있음.

당사의 경쟁 전략으로 인하여 고객의 수가 감소하거나 순이자마진이 감소할 수 있음.

당사는 마진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높이고, 가능하면 가격경쟁을 회피하는 전략을 계속적으로 추구하고자 함. 이러한 전략을 실행하려면 수신금리를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하고 동시에 여신금리는 높게 책정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다른 은행 및 금융기관들이 이자율경쟁을 통하여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전략을 채택한다면, 금리에 대한 민감성에 따라 당사의 고객층이 감소될 수 있음. 또한, 당사가 장래 이자율의 측면에서 다른 은행 등과 경쟁하기로 결정한다면, 이는 당사의 순이자마진을 감소시키게 될 것임. 이로 인한 당사의 고객층 감소 또는 순이자마진 감소 어느 쪽이든 당사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경쟁 관련 리스크

국내 금융산업에서의 경쟁 심화로 당사의 시장점유율 및 마진이 감소할 수 있음.

한국의 금융산업에서의 경쟁은 심화되어 있음. 당사의 경쟁사인 금융기관들 중 일부는 금융지주회사로서 당사보다 오랜 연혁을 가지고 있으며, 당사에 비해 더 큰 재무 원천과 특화된 능력을 가지고 있기도 함. 당사의 전통적인 주요 영업부문인 가계여신 및 중소기업여신 부문에서의 금융기관간 경쟁은 더욱더 격화될 것으로 전망됨. 대부분의 국내 은행들은 일반적으로 대기업에 대한 익스포저를 확대하였으나 최근에는 가계여신과 중소기업여신에 중점을 두어왔음. 또한, 가계대출 및 신용카드 부문에서의 시장포화상태, 치열한 이자율 경쟁, 신용카드 수수료율에 대한 인하 압력, 마케팅 비용의 증가 등으로 인해 당사의 가계금융 및 신용카드 영업에서의 수익성이 저하될 수도 있음.

또한 2007년 제정된 자본시장법이 2009년 2월 시행되기 시작하는 등 국내 관련 법률의 개정과 선진화된 영업관행의 확립은 금융기관간 경쟁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또한 당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험과 자산이 풍부한 다수의 외국계 금융기관들도 단독 또는 다른 국내 금융기관과의 합작을 통하여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의 공급경쟁 대열 참여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됨. 2004년도에 이루어진 씨티은행 계열사의 한미은행 인수, 2005년도에 이루어진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제일은행 인수 및 2006년 4월에 이루어진 조흥은행과 신한은행의 합병, 그리고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펀드로부터 외환은행에 대한 지배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2010년 11월 계약 등을 포함하여 최근 10여 년간 국내 금융산업에서 다수의 주요한 M&A가 이루어졌으며, 향후 금융산업의 합병은 계속되리라고 예상됨. 특히, 한국 정부는 산업은행을 민영화하고 우리금융지주 주식회사(우리은행의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지배회사지분을 처분하거나 줄이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다른 금융기관들은 상기 금융기관들을 인수 또는 그와의 합병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인수·합병으로 생겨난 일부 금융기관들은 증가된 규모와 영업력을 바탕으로 당사와의 경쟁을 더욱더 심화시킬 수 있음. 심화되는 경쟁과 계속되는 금융기관간의 합병으로 인하여 당사의 마진은 감소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하여 당사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가 악화될 수 있음.

대기업여신 포트폴리오 관련 리스크

당사는 재벌에 대한 익스포저를 보유하고는, 재벌의 현재 또는 장래의 재무상태의 악화는 당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010.12.31. 현재 당사의 상위 20대 기업익스포저 중 5개 기업익스포저가, 잔여 여신규모에 근거하여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국내 37대 재벌에 대한 것임. 2010.12.31. 현재 위 37대 재벌에 대한 총익스포저 규모는 18,279십억원으로 당사 총익스포저의 7.4%를 차지하고 있는데, 만약 당사의 재벌에 대한 익스포저의 건전성이 악화될 경우에는, 당사가 거액의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며, 이는 당사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당사가 현재 적립하고 있는 충당금이 위와 같은 재벌에 대한 익스포저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실을 보전하기에 충분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음. 또한, 당사는 현재 워크아웃 또는 청산절차에 있거나 장래에 이와 같은 상황이 예상되는 기업에 대한 익스포저와 관련하여 장래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당사는 구조조정 중에 있거나 구조조정의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익스포저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대손충당금의 추가설정 또는 당사가 동의하지 않은 경영정상화계획의 채택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을 수 있음.

2010.12.31. 현재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기업들에 대한 당사의 대출과 보증은 총 1,793십억원으로서, 이는 당사의 대출 및 보증 총액의 0.9%를 차지함. 당사의 위 기업들에 대한 대출 및 보증은 모두 부실채권으로 분류되고 그 중 64.5%에 해당하는 1,156십억원은 고정이하 익스포저로 분류됨. 2010.12.31. 현재 위 대출 및 보증과 관련한 대손충당금은 905십억원으로서, 이는 위 기업들에 대한 당사의 대출 및 보증의 50.5%에 해당하나, 위 대손충당금은 위 기업들에 대한 익스포저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장래의 손실을 충분히 보전하지 못할 수 있음. 한편, 당사는 위와 같은 기업들에 대한 채무증권 및 주식(출자전환을 통하여 당사가 취득한 주식 포함)도 보유하고 있는바, 워크아웃이나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기업들에 대한 당사의 채무증권 및 주식 관련 총익스포저 규모는 2010.12.31. 현재 125십억원으로서 당사 총익스포저의 0.1%에 미치지 못하나 장래에 증가할 수 있음. 또한, 워크아웃 대상인 기업고객의 경우,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결의한 채권 재조정계획에 따라, 당사는 당사의 여신을 재조정하거나 또는 당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당사의 채권을 다른 채권자들에게 처분해야만 할 수도 있음.

당사는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계열회사에 대한 익스포저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회사들의 재정적 어려움은 당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한국의 재벌 중의 하나인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몇몇 계열회사들은 과도한 차입을 통한 2006년 주식회사 대우건설의 인수 및 그 이후 2008년 하반기에 시작한 금융위기의 결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및 금호산업 주식회사는 2010년 1월 당사를 포함한 채권자들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법정외 채무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개시하도록 합의하였음.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와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는 자발적 구조조정을 진행하기로 발표하였고, 이에 당사를 포함한 채권자들은 2010년 말까지 두 회사의 채무지급을 유예해 주기로 합의하였음. 상기 네 회사는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계열회사임. 2010.12.31. 현재 금호타이어, 금호산업, 금호석유화학 및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당사의 대출 및 보증 총액은 468십억원에 달하며, 이 중 139십억원은 고정 이하 여신으로 분류됨. 2010.12.31 현재 해당 대출 및 보증에 관한 당사의 신용손실충당금의 규모는 113십억원임. 또한, 당사는 2011년 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금호타이어의 구조조정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추가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총 약 미화 3백만 달러의 추가여신을 금호타이어에게 공여하였음. 당사는 또한 금호타이어에 관한 38십억원 및 금호산업에 관한 총 9십억원의 대출금을 해당 회사의 지분으로 전환하였음. 당사의 충당금은 해당 회사에 관한 당사의 익스포저에서 발생하는 모든 미래 손실을 충당하기에 부족할 수 있음. 이 회사들의 재정 상태가 추후에 더 악화되는 경우, 당사는 추가적인 신용손실충당금 및 대손상각액과 평가손실 또는 손상차손이나 처분손실을 인식해야 할 수도 있는데, 이는 당사의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에 중대하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음.

당사 기업 신용 익스포저의 일부가 소수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당사의 기업여신 포트폴리오의 리스크가 높다고 볼 여지도 있음.

2010.12.31. 현재 당사의 상위 20대 차주에 대한 대출 및 보증 총액은 4,368십억원이고, 당사의 대출 및 보증 총액의 2.1%를 차지함. 그 중 최대규모의 단일차주는 삼성중공업으로 1,329십억원 규모임. 이는 대부분 보증 및 인수의 형태로서 당사의 대출 및 보증 총액의 0.6%에 해당됨. 만약 당사가 여신을 공여한 대기업차주의 재무상태가 더욱 악화된다면, 당사는 적지 않은 금액의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할 수도 있고, 이는 당사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

당사의 영업 관련 기타 리스크

전세계적인 금융시장의 어려운 상황은 당사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007년 2/4분기 및 3/4분기에 미국 신용시장은 어려운 상황과 심한 변동을 겪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전세계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쳤는바, 특히, 2007년 7월 하순 및 8월 초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분의 불확실성이 급격하게 증가되어 차입금융, 부채담보부증권 및 기타 신용구조화채권으로 확대되었음. 이로 인하여 미국 및 전세계 신용 및 금융시장에서 유동성 감소, 변동성 증가, 신용스프레드 확대 및 가격 투명성 감소 등이 발생함. 이에 각국의 입법자들과 금융 규제기관들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내놓았음. 추가적으로, 다른 국가들의 통화당국이 취한 조치와 유사한 선상에서, 2008년 3/4분기부터 2009년 1/4분기까지 한국은행은 금융시장안정과 국내 경제의 침체 타파를 위하여 기준금리를 325bp 인하하였음. 세계경제는 2009년 하반기부터 2010년에 걸쳐 회복세를 나타내었음에도, 국내외적으로 여전히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음. 전세계의 여러 국가, 특히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등을 비롯한 남유럽 국가들은 재정 악화의 징후를 보여 왔으며,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이집트, 튀니지, 리비아, 바레인 그리고 시리아를 포함한,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의 최근 정치적 불안정은 전세계적인 금융 및 에너지 시장에서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초래함. 2011년 3월 일본 북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및 쓰나미와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해당 지역의 원자력발전소로부터의 방사능 유출은 이러한 세계 경제 전망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가중시켰음. 상기에 언급되거나 유사한 사항은 또 다른 재정 및 경제 위기를 촉발할 수 있음. 나아가, 전세계적으로 많은 정부가 세계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채택한 경제 부양조치에 관하여 정부의 재정지출의 축소, 정책금리 인상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출구 전략”의 시행을 고려하거나 이미 시행 중에 있는데, 그러한 전략은 시기, 강도나 기타의 요소와 관련한 여러 요인들로 인하여, 전세계적 경제 및 재정 어려움을 연장하거나 악화시키는 의도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 세계 경제의 높은 상호의존성을 고려할 때, 상기와 같은 진행사항은 한국 경제 및 금융시장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또한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당사는 또한 당사의 외화표시 자산 및 부채와 구조화 상품들을 포함한, 단기매매증권 및 투자증권을 보유함으로써 세계 및 한국 금융시장의 부정적 변화 및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음. 또한, 전세계 및 한국의 부정적인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당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및 외국회사의 주가를 포함한, 주식가격이 상당한 폭으로 등락을 거듭해 오고 있음. 이러한 변동성은, 당사가 2008년 최초 취득한 카자흐스탄 은행인 JSC Bank CenterCredit에 대한 비지배 지분을 포함하여, 당사의 단기매매 및 투자증권 포트폴리오의 매매 및 평가손실이나 지분법에 따라 회계처리된 당사의 투자에 관한 손상차손을 초래하였거나 추가적으로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Item 4B.사업의 개황-자본시장업무와 국제금융-국제금융을 참조”

당사에 대한 소송 등은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당사는 사업의 일반적인 경과로 소송 등의 위험을 가지고 있음. 이것은 평판에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금전 손해배상 등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당사의 위험관리 시스템은 위험과 손실을 줄이는 데에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음.

당사는 다층화된 리스크관리구조, 보고 및 모니터링 시스템, 조기경보시스템, 은행업무를 위한 중앙신용리스크관리시스템과 그 밖의 관리 구조를 아우르는 그룹차원의 리스크관리환경을 통해 리스크 노출을 모니터하고 관리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리스크관리 전략과 기술을 사용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Item 11. 시장리스크에 대한 계량적·비계량적 정보” 부분 참조. 그러나 당사의 이러한 리스크관리 전략·기술과 그에 따른 판단은 모든 시장 환경의 경제적·재무적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며, 과거 시장의 움직임에 기초한 리스크관리의 전략과 기술은 중대한 시장 압박과 그 밖의 예측불가능한 환경에서 효율성이 제한될 수 있음. 나아가 유동성이 저하된 환경에서는 다른 시장 참여자들이 당사와 같은 방식으로 시장 조건을 다루려 할 수 있으므로, 당사의 리스크관리전략은 비효율적일 수도 있음.

당사는 다른 국가와는 다를 수 있는 내용의 한국 기업지배구조 및 공시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함.

당사는 한국 기업으로서 한국 상장법인에 적용되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위 기준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나라의 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SEC에 등록되고 NYSE(New York Stock Exchange)에 상장된 법인으로서 당사는 2002년 사베인즈-옥슬리 법(Sarbanes-Oxley Act)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관련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나, 당사를 포함한 NYSE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사베인즈-옥슬리 법이나 NYSE 규정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요건의 일부를 면제받고 있음. 당사와 같은 한국 기업의 경우, 다른 나라의 상장법인 또는 비상장법인에 의하여 일상적으로 공개되는 정보에 비하여 미공개 정보의 범위가 더 넓을 수 있음. 위와 같은 기업지배구조 및 정보 공개 범위의 차이가 일부 지역의 투자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의 기업지배구조 또는 공시로 인식될 수 있음.

당사의 대출에 대한 담보가치의 하락과 담보가치의 충분하지 못한 실현은 당사의 여신 포트폴리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당사 대출의 상당한 부분은 부동산으로 담보되고 있으나, 부동산의 가치는 최근 수년간 큰 변동을 겪었음. 당사는 대출한도를 담보감정가의 최고 40~80%까지로 제한(정부가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당사가 대출한도를 담보감정가의 40~60%로 제한하는 경우 제외)하고 정기적으로 담보가치를 재평가하고 있으나, 최근 몇 년간 국내 부동산시장의 침체는 일부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떨어뜨렸음. 장래에 부동산가격이 더욱 하락한다면, 부동산담보가치의 하락으로 당사 담보부대출의 미회수금액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할 수 있음. 부동산 및 기타 담보가치가 장래에 더욱 하락할 경우 또는 담보가치 하락시에 추가 담보 설정이 어려울 경우, 당사의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으며, 당사는 이로 인하여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할 수도 있음.

한국에서 담보물을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법원에 서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신청서가 접수되는 경우, 법원의 사법절차와 관계당국의 행정절차 등의 지연으로 인하여 담보물의 가치가 감소할 수 있음. 당사로서는 담보권 실행절차의 지연과 담보권의 대항력의 결함 등으로 인하여 담보가치의 완전한 실현을 장담할 수 없음. 담보물의 기대가치를 확보하는 데에 실패하는 경우, 당사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당사의 은행자회사인 국민은행은 일부 금융계약상 약정사항을 위배한 바 있었음.

당사의 은행자회사인 국민은행이 체결한 차입계약 중에서는 보유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는 약정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계약이 있음. 국민은행은 2009년 초 국민은행이 일반적인 영업상 행한 자금조달의 과정에서 위와 같은 약정사항을 위반하였던 사실을 인지하였음. 담보로 제공된 자산은 주로 국채증권이나 기타 채권, 또는 주택담보대출채권임. 이러한 자금조달로 관련 차입계약하에서 약정 위배가 되어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다른 금융계약, 스왑계약 등에서도 약정·진술위반, 채무불이행, 크로스디폴트(cross-default) 및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음.

2009년 3월과 4월 동안, 국민은행은 관련 차입계약들의 대주 등으로부터 약정위반 및 크로스디폴트(cross-default)를 선언하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권리행사포기를 받았으며 또한 장래에 일

상적인 영업상의 금융활동이 가능하도록 관련 계약을 수정하였음. 국민은행은 계약을 수정하지 못하거나 waiver를 받지 못한 관련 차입계약에 대해서는 관련 채무를 상환하였음.

국민은행의 몇몇 차입계약서는 국민은행 주식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서의 상장폐지, 국민은행 ADS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의 상장폐지, 금융지주회사의 구조 채택등을 포함한 당사의 설립을 위한 포괄적 주식이전이 결과적으로 계약위배가 되는 진술, 약정, 채무불이행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2009년 4월, 국민은행은 관련 당사자로부터 권리행사포기를 받거나 계약수정을 하였음.

그러나 당사는 국민은행의 다른 금융관련 계약 등의 당사자 또는 채권자들이 계약상의 진술위반, 크로스디폴트(cross-default), 기한이익상실 등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음.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면 당사의 유동성과 재무상태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음.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국내 회사채 유통시장으로 인해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무증권을 매각할 경우 해당 채무증권의 시장가치를 충분히 실현하지 못할 수 있음.

2010.12.31. 현재 당사는 당사의 단기매매증권 및 투자유가증권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 있는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다만, 한국전력, 한국은행, 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기업은행과 같은 정부가 소유 또는 통제하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은 제외)이 발행한 채무증권을 보유하고 있고, 단기매매증권 및 투자유가증권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이들의 총장부가치는 8,861십억원임.위와 같은 증권의 시가는 장래의 이자율 상승 또는 채권 발행회사나 국내경제 전반에 걸친 재무상태와 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하여 하락될 수 있음. 이러한 요소들은 각각 또는 복합적으로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무증권의 공정가치로 손상을 인식하도록 할 수 있고, 그 결과 당사에 손상차손이 발생할 수도 있음.

국내 회사채 유통시장이 아직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사 재무상태표상 보유증권의 시가는 국내 신용평가 기관들이나 한국증권업협회가 제시한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결정된 가격은 당사가 실제로 매도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는 가격과는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당사는 보유증권을 매각하는 시점의 시장가치를 충분히 실현하지 못할 수도 있고, 따라서 당사는 손실을 입을 수도 있음.

당사는 원본보전신탁계정의 손실을 일반은행계정으로부터 보전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는 당사의 영업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당사는 자회사인 국민은행을 통하여 금전신탁 계좌를 관리하고 있음. 국내 관련법규 하에서 은행의 신탁계좌 자산은 은행의 일반영업자산과 분리하게 되어 있음. 이렇게 분리된 자산은 은행의 예금주 혹은 기타 일반적인 은행 업무와 관련된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키는 데에 이용될 수 없음. 당사는 일부 신탁상품에 대하여 투자자의 투자원금을 보전해주고 있음. 2004년 1월부터 연금 또는 퇴직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 신탁을 제외한, 은행들의 신규 원본보전신탁계정 설정이 금지되었음.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보증규정을 포함한 기존의 원본보전신탁계정에 대해서는 원금 보전을 계속 해줄 것임.

원본보전신탁계정에서 발생한 수익이 보전약정금액을 지불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그 부족분은 신탁계정에서 보유하는 특별유보금, 해당 신탁계정에서 나오는 당사의 수수료 및 당사의 일반은행계정에서 전입된 자금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충당됨. 2010.12.31. 현재 당사는 원본을 보전하기 위하여 신탁계정 자산에 81십억원의 특별유보금을 보유하고 있음. 2008년, 2009년 및 2010년도에 원본보전신탁계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반은행계정으로부터 전입된 금액은 없으나, 장래에는 원본보전신탁계정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은행계정으로부터 전입을 해야 할 수도 있고, 이는 당사의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당사의 인터넷뱅킹 서비스는 인터넷의 상업적 사용에 따른 보안관리 측면에 영향을 받음.

당사는 개인고객과 기업고객에게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바, 해당 서비스는 비밀번호 및 계좌번호를 포함하는 중요한 고객정보를 요구하고, 인터넷상의 보안이 유지된 경로로 전송됨. 하지만 인터넷접속이 비록 안전하다고는 하더라도 여전히 보안상의 문제가 존재할 수 있음. 당사는 장래에 인터넷뱅킹 서비스와 관련된 보안상의 문제 또는 예상하지 못한 장애로 인하여 고객과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는바, 이는 당사의 영업과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음.

당사의 IT시스템에는 장애, 지연 또는 기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당사는 고객서비스, 금융거래, 청구, 기록 등을 포함하는 일일 업무와 관련하여 IT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바, IT시스템의 장애, 지연, 기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영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당사에 대한 고객의 신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당사는 US GAAP에 따른 분기/반기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지 않음.

당사와 당사의 자회사는 US GAAP의 기준에 따라 분기/반기 재무제표 등을 작성할 의무는 없음. 또한 US GAAP과 K GAAP은 상당한 측면들에서 차이가 있는바, 특히 대손충당금 설정 기준에서 차이가 있음. 이에 관하여는 “Item 5B. 유동성 및 자본조달재원” 부분 참조. 결과적으로 당사의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및 2010년도의 K GAAP에 따른 대손충당금 및 전입액은 위 기간 또는 장래에 있어서 US GAAP에 의한 것과 크게 다를 수도 있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 IFRS)의 채택은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

모든 상장회사는 2011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 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함. 따라서, 2011년부터 당사의 분기 및 연간 재무제표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함. 국제회계기준은 US GAAP과는 상당한 점에서 차이가 나며, 특히 대손충당금 및 전입액의 설정 부분에서 그러함. 그 결과,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에 반영될 기타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항목들과 당사의 대손충당금 및 전입액 수준은 US GAAP에 따라 반영될 항목들과 상당히 다를 수도 있음.

유동성과 자본관리 관련 리스크

이자율의 상당한 상승은 당사 채무증권 포트폴리오의 가치 하락 및 자금조달비용의 증가를 가져오는 한편, 대출수요 감소 및 차주들의 상환능력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당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자율은 최근 몇 년간 상당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음. 2008년 후반부터 2009년 초까지, 한국은행은 한국경제를 부양하기 위하여 총 325bp의 정책금리를 인하하고 해당 금리를 2009년 동안 유지함. 인플레이션과 호전된 성장전망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은행은 2010년 7월 2.25%, 2010년 11월 2.50%, 2011년 1월 2.75%, 2011년 3월 3.00% 및 2011년 6월 3.25%로 정책금리를 인상함. 모든 사항이 동일하다면, (시장)금리 상승은 일반적으로 당사가 보유중인 채권의 가치 하락을 초래함. 또한 이자율의 지속적인 상승은 당사의 자금조달비용을 증가시키고, 반면에 대출수요, 특히 가계소비자의 대출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음. 따라서 이자율의 상승으로 인해 당사에 자산-부채의 잠재적 불일치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산-부채를 조정하여야 할 수 있음.

이자율 상승은 국내경제뿐만 아니라 당사 신용카드 고객을 포함한 기업고객이나 개인고객의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당사 여신포트폴리오의 악화를 유발할 수 있음. 가계 및 기업대출의 이자율은 대부분 시장금리를 기준으로 하여 주기적으로 변동되므로, 지속적인 금리 상승은 당사의 개인고객 및 기업고객들의 이자비용을 높여 그들의 대출금 상환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당사의 자금조달은 단기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므로, 이러한 높은 의존도는 당사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당사는 필요한 자금의 상당부분을 일차적으로 고객예금으로 구성되는 단기자금을 통해 조달하고 있음. 2010.12.31. 현재 당사 예금의 약 95.9%가 만기 1년 이하인 단기에금이거나 요구불예금으로서, 과거에는 고객예금의 대부분이 만기시 재연장되었지만 장래에도 이러한 만기의 재연장이 계속될 지 여부는 당사로서는 장담할 수 없음. 따라서 단기에금 고객의 상당수는 수익성이 더 좋은 투자기회가 나타난다면 언제라도 예금을 인출하거나 만기 연장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의 유동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당사가 영업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보다 고비용의 장단기 자금조달원을 찾아야만 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음. “Item 5B. 유동성 및 자본조달재원-재무상태-유동성” 참조.

당사는 자본적정성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본을 조달해야 할 수도 있고, 그 경우 당사는 유리한 조건으로 또는 전혀 추가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수도 있음.

금융위원회의 자본적정성 기준에 의하면, 당사는 은행지주회사로서 연결기준으로, 연결기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인 최소연결기준 자기자본비율을 8.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함. 또한 당사의 자회사인 국민은행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자본적정성 기준에 의하면, 연결기준으로, 기본자본(Tier I)비율 4.0% 이상과 기본자본(Tier I)과 보완자본(Tier II)을 합한 자기자본비율 8.0%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보완자본(Tier II)은 기본자본(Tier I)의 100%의 범위 내에서 기본자본(Tier I)과 보완자본(Tier II)을 합한 자기자본에 산입할 수 있음.

2010.12.31. 현재 당사의 연결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3.08%이고, 국민은행의 기본자본(Tier I)비율은 10.89%이며, 기본자본(Tier I)과 보완자본(Tier II)을 합한 자기자본의 비율은 13.44%인데, 이는 금융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것임. 그러나, 앞으로 당사의 가계대출(신용카드채권 포함) 및 중소기업대출의 자산건전성 악화를 포함하여 당사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가 악화되거나, 당사의 자금을 리스크가 낮은 자산에 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사의 자본구조 및 자본비율이 악화될 수 있음.

만약 자본비율이 악화된다면, 당사는 자본적정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기본자본(Tier I) 또는 보완자본(Tier II)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반드시 당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자기자본을 추가 확보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음. 당사가 추가자본을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는 국내 및 아시아의 다른 국가의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이 동시에 자본조달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 당사의 자본적정성 비율이 금융위원회가 정한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당사에 대하여 경고 또는 영업 정지나 은행업 인가 취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음.

신BIS협약 하에서 당사의 필요자기자본이 증가할 수도 있음.

금융감독원은 바젤II로 불리는 신BIS협약을 2008.1.1.부터 시행하였으며, 이는 국민은행을 포함한 국내 금융기관들의 리스크 측정방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 1988년도 최초로 시행된 바젤협약은 신용 및 시장리스크와 리스크의 측정기준이 되는 자본적정성 및 자산건전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신BIS협약은 이러한 리스크 측정 대상을 기존의 신용리스크 및 시장리스크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운영리스크와 같은 영역까지 확대함.

또한 신BIS협약은 신용리스크 필요자기자본 산출에 있어 은행이 표준방법이나 내부등급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국민은행은 자발적으로 신용리스크 자기자본을 평가하는데 리스크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는 내부등급법을 채택하였음. 2007년 12월 금융감독원은 신용리스크에 대한 국민은행의 내부등급법을 승인하였으며, 국민은행은 국내에서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최초의 은행이 되었음. 감독기관 보고 목적으로, 국민은행은 신용리스크 산출 대상 중 소매, 중소기업 및 자산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2008년 1월부터, 대기업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2008년 6월부터, 소매형소호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부터 각각 내부등급법을 적용하였고, 그 외의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의 논의 하에 2012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내부등급법을 추가로 적용할 예정이며, 가까운 미래에 감독기관 보고 목적으로 “고급내부등급법”을 적용할 예정임.

표준방법은 내부등급법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거나 내부등급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익스포저(정부, 공공기관 및 은행 등)의 신용리스크 측정에 적용하고 있음. 운영리스크와 관련하여 국민은행은 2009년 1월부터는 감독기관 보고 목적으로 “고급측정법”을 적용하였음.

국민은행의 2008년 내부등급법의 시행이 기존 방법(1988년도 최초로 시행된 바젤협약)을 적용하는 것에 비교하여 자본적정성비율 증가와 신용위험관련 필요자기자본의 감소를 가져왔으나, 신BIS 협약 하에서의 내부등급법으로 인하여 국민은행의 신용위험 자기자본요건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으며, 이 경우 국민은행은 자산건전성을 개선하거나 추가자본을 조달해야 할 수도 있음.

2009년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더 높은 수준의 최소자본요건, 자본적정비율의 보완수단으로서의 레버리지 비율의 도입과 경기순환 단계별로 유동적인 자기자본요건 등을 포함하여, 신BIS협약을 보완하는 새로운 일련의 조치들을 발표함.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이사들(Governors) 및 국장들(Heads) 그룹은 2010년 9월 추가적인 자본보존 완충장치 및 경기 역행적 완충자본금, 단기유동성 비율 및 기타 보완적인 조치들을 포함한, 해당 신규 조치들에 관한 추가적인 세부사항을 발표하였음.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새로운 규제의 영향을 추가적으로 평가하고 관찰기간을 거친 후에 바젤III라고 명명된 새로운 일련의 조치들을 2013년에 시행할 것으로 예상됨. 한국에서 바젤III의 시행시기 및 범위는 불확실하게 남아있음. 한국에서 바젤III의 시행은 당사를 포함한, 한국 금융기관의 필요자기자본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음.

이에 관하여는 “Item 5A. 영업실적-개관-신BIS협약” 및 “Item 5B. 유동성 및 자본조달재원-재무상태-자본적정성” 참조.

정부의 규제 및 정책 관련 리스크

정부는 정책의 일환으로 특정부문의 차주들에 대하여 한국금융산업이 대출 및 금융지원을 촉진하도록 할 수 있고, 당사를 포함한 금융기관은 이를 따를 수 있음.

정부는 과거에도 특정 분야의 차주에 대한 한국금융산업의 대출을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한 바 있고 앞으로도 이를 장려하려는 시도를 계속할 수 있음. 정부는 진흥하고자 하는 특정 경제부문을 지정하고, 이러한 부문에 대하여 금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대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저리의 자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정책자금대출을 지원하여 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수 있음. 정부는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저당권부 대출과 중소기업 대출을 장려할 의도로 위와 같은 정책자금대출을 제공한 바 있음.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제공되는 모든 대출 및 여신은 당사의 신용평가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게 됨. 다만, 이와 같은 정책자금대출을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당사는 만약 그와 같은 정책자금대출이 지원되지 않았다면 여신을 제공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특정 부문에 또는 특정 방식으로 여신을 제공하여야 할 수도 있음.

과거 정부는 국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특정 부문에 대한 자금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장려하는 정책을 발표하기도 하였음. 예를 들면, 2008년 하반기부터의 세계 경제 위기로 인하여 한국의 중소기업들의 재무상태와 유동성이 저하되고,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한국 경제 상태가 계속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한국 정부는 국내 은행들로 하여금 중소기업과 가계차주에게 금융 지원을 장려하고자 하는 목적의 조치들을 발표함.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정책적인 측면에서 당사를 포함한 국내 금융기관들에게 국내경제의 특정 부문에 대한 투자 또는 다른 형태의 금융지원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당사를 포함한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을 수용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음. 이 경우, 당사는 위와 같은 금융지원의 결과로 비용과 손실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음.

금융위원회는 당사 또는 자회사가 재무적으로 건전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사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금융위원회가 당사 혹은 자회사의 재무상태가 불건전하다고 판단하거나, 당사 혹은 자회사가 최소자본적정성 또는 유동성 비율과 같은 감독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자본금

의 증액 또는 감액, 주식의 소각 또는 병합, 영업의 양도, 자산의 매각, 영업소의 폐쇄, 다른 금융 기관과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와 같은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 또는 명령을 할 수 있음.

만일 위와 같은 금융위원회의 요구 또는 명령이 있다면, 당사의 재무상태와 영업에 손해가 있을 수 있음. 또한 만약 금융위원회가 당사에 자본금의 전부 또는 부분 감액을 명하는 경우, 투자자들의 투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실될 수도 있음.

자본시장법에 관한 법률은 국내 금융업계의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음.

2007년 7월, 한국 국회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상품산업의 통합에 관한 새로운 법률인 자본시장법을 제정하였으며, 2009년 2월에 시행되기 시작하였음. 동법의 시행으로, 국민은행을 비롯한 국내 은행들은 한국 금융서비스 시장에서 금융투자회사 및 기타 비은행권 금융기관들로부터 상당한 도전을 받게 되었음. 예를 들면, 과거에 관련 법규상으로는 증권회사가 증권투자 이외의 목적으로 고객으로부터 예탁금을 받거나 고객의 예탁금에 관하여 결제 및 송금과 같은 증권투자를 위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음. 그러나, 동법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과거의 증권회사에 해당)가 위와 같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게 됨. “Item 4B. 사업의 개황 - 감독 및 규정” 부분 참조. 따라서, 국민은행을 포함한 국내 은행의 수신 규모가 축소될 뿐만 아니라(이는 은행들로 하여금 대체 자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고 결국 그를 위한 조달비용의 증가를 가져올 수도 있음) 결제 및 송금 수수료 수입이 감소할 수도 있음.

국내 상황 관련 리스크

북한과의 긴장고조는 당사의 영업과 당사가 발행한 ADS의 시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남북한 관계는 항상 긴장상태에 있어 왔으며, 그 긴장의 정도는 현재 및 장래의 사건들로 인하여 갑자기 변동될 수 있음. 최근 북한의 핵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안보 문제가 고조되었고 북한의 행위 및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였음.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 성공과 더불어 2006년 10월 북한은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공표하였고, 이로 인하여 지역에서의 긴장이 증가되었고 전세계적으로 이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 있었음. 이에 대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 회원국들이 미사일 개발 또는 대량살상무기에 관련된 대규모의 무기 또는 기술에 대하여 북한과 거래하고 북한에 사치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며,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관련된 자산 동결 및 여행금지 조치를 취하고, 북한으로 들어가거나 북한에서 출발하는 화물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포함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음. 북한은 2009년 4월 장거리 로켓을 태평양에 발사하였음. 한국, 일본, 미국은 이 발사는 주변국들에 대한 위협이며 2006년 북한 핵실험과 관련하여 채택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대응했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발사를 위반으로 선언하고 북한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의장성명을 발표하였음. 이어서 북한은 6자회담에 영구적으로 불참할 것이며 핵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할 것을 발표하였음. 또한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영변 핵시설에 있는 감시장치 등이 제거당하고 IAEA의 검증팀이 북한 밖으로의 추방명령을 받았다고 전했음. 북한은 2009년 5월 두 번째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음. 이에 대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결의함. 2009년 7월, 북한은 동해로 수개의 탄도미사일을 추가적으로 시험 발사함. 2010년 3월, 한국의 군함 1척이 수중 폭발에 의하여 침몰하면서 많은 선원이 사망하였음. 2010년 5월 한국 정부는 북한이 군함을 침몰시켰다고 공식적으로 지목하였고, 북한이 해당 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요구하였음. 한국정부는 해당 행위에 관하여 북한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비난성명을 채택하고자 함. 북한은 해당 사고에 책임을 물어 자신들에게 제재를 가하려고 할 경우 보복할 것이라고 위협함. 2010년 11월, 북한은 한국 서해안의 한국과 북한의 해상경계선 근처에 위치한 한국의 연평도에 백 개가 넘는 포탄을 발사하였다고 보고되었고, 그 결과 최소 두 명의 남한 군인들 및 두 명의 민간인들이 사망하였으며 많은 부상자들을 발생시키고 민간인의 집들을 불태움. 한국은 자국 군대로 하여금 서해안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경계태세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포탄

을 발사함으로써 반격함. 한국정부는 북한을 해당 행위와 관련하여 비판하고 추가적인 도발이 있을 경우 단호히 보복할 것이라고 맹세함.

북한의 정치적 리더십의 미래에 관한 불확실성과 그것이 이 지역의 경제 및 정치적 안정성에 가지는 영향에 관한 우려가 최근 증가되고 있는 상황임. 2009년 6월, 미국 및 한국 관리들은 2008년 8월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고 보고된 북한의 지도자 김정일이 20대로 알려진 그의 세 번째 아들인 김정은을 그의 후계자로 지목하였다고 발표함. 2010년 9월, 김정은은 권력승계계획의 일부라고 광범위하게 여겨지는 일련의 조치들을 통하여 북한 군대의 장군이 되었고, 중앙군사위원회의 부위원장 및 노동당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되었음. 그러나 권력승계계획은 불확실한 상태임. 북한 경제는 또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임. 예를 들면, 북한 정부는, 2009년 11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수입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편인 화폐개혁의 일부로 100대 1의 비율로 화폐단위를 재조정함. 화폐개혁과 동시에, 북한정부는 그의 주민들이 외화를 사용하거나 보유하는 것을 금하고 암시장을 폐쇄하였는데, 이는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식량부족을 초래함.

한반도의 긴장 수준이 장래에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할 수 없음. 예를 들어, 북한의 지도부의 위기로 인한 긴장 고조, 남북한 고위급회담의 결렬, 군사적인 적대행위 등은 당사의 영업 및 당사의 보통주와 ADS의 시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국내 금융 및 경제상황의 악화는 당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당사는 한국에서 설립되었고, 모든 실체적 업무가 한국에서 이루어지므로 한국의 정치, 경제, 법적, 규제적 리스크에 영향을 받음. 최근 몇 년 간 경제지표들은 경기회복과 불확실성이 복합된 징후를 보였고, 장래 국내경제의 경기회복이나 성장은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음.

최근 세계 금융시장의 부정적 상황과 변동, 유가와 물가의 변동, 미국과 세계 경제의 일반적인 악화는 세계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에 일조하였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한국 경제에도 계속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2008년 하반기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세계 주요 통화 및 특히, 미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가치가 큰 폭으로 변동함. 2010년 하반기부터 2011년까지 환율변동은 일반적으로 안정화되었으나, 향후 급격한 환율 변동이 미래에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보장할 수는 없음. 자세한 내용은 “Item 3A. 요약재무제표 - 환율” 부분 참조. 이러한 원화 가치의 하락은 재화와 용역을 수입하기 위한 비용을 증가시켰고, 외화표시채무를 제공하는 한국 회사들이 필요로 하는 원화의 가격을 상승시켰음. 반대로, 원화가치의 상승은 관련 외화로 표시된 한국 수출제품의 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수출경쟁력을 하락시키고 해당 제품의 판매로 인한 원화가치를 감소시킴. 나아가 한국과 세계 경제의 악화로 한국 회사들의 주식 가격이 상당한 폭으로 변동하였음. KOSPI로 알려진 한국종합주가지수는 2007.12.31. 1,897.1에서 2008.10.24. 938.8로 하락한 바 있음. KOSPI가 2008년 하반기부터 상당 부분 회복되었지만, 한국 기업들의 주가가 미래에 재차 하락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음. 장래 KOSPI의 하락,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주식의 대량 매각과 이어지는 투자금 회수는 원화가치와 한국의 금융기관의 외환보유고, 한국 기업들의 자본 조달 능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 장래에 한국과 세계 경제의 침체는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장래 국내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 미국 등에서의 주택과 금융 부문의 어려움과 그로 인한 국제 금융시장의 악영향;
- 외환보유고, 물가(유가 상승 포함), 환율(미국달러화 또는 일본엔화의 변동, 중국 위안화의 절상 포함), 이자율, 주식시장의 부정적 변화 또는 심한 변동;
- 주요 수출 상대국인 미국, 일본, 중국 및 아시아 등의 신흥개발도상국 등의 경기 후퇴 및 그로 인한 국내경제에 대한 신뢰 상실;
- 한국 부동산 시장가격의 상당한 하락;

- 가계고객 및 중소기업고객들의 연체 및 부도율의 증가;
- 소비자 신뢰의 감소와 소비자 지출의 침체;
- 저축은행부문을 포함한 한국의 금융분야의 어려움;
- 중국 경제 성장에 따른 경쟁의 심화로 이익(대중 수출의 증가 등)을 초과하는 비용(수출시장 등에서의 경쟁의 심화 등)의 증가;
- 재벌 또는 다른 대규모 부실 기업들의 구조조정 절차미흡 및 금융문제;
- 일부 재벌의 기업회계부정 및 기업지배구조 문제로부터 발생하는 투자자 신뢰도 상실;
- 한국에서 노령인구를 부양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 또는 인구의 감소로 인한 경제생산성의 감소;
- 현재와 장래의 자유 무역 협정 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사회불안 및 노동시장불안;
- 세수의 감소와 실업급여보상, 기타 사회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확대, 이로 인한 정부재정적자의 증가;
- 지정학적 불안과 전세계 테러 집단에 의한 추가 공격 위험성;
- 2011년 일본 북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및 쓰나미와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해당 지역의 핵발전소로부터의 방사능 유출과 같은, 한국이나 그의 주요 교역국에 상당한 경제적 또는 기타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자연재해;
- 아시아 및 기타 일부 국가에서 사스(SARS)의 재발 또는 신종플루 및 조류독감 또는 구제역의 발생;
- 무역분쟁이나 일관성 없는 외교정책으로 인한 무역상대국 또는 동맹국과의 경제, 외교관계의 악화;
- 국내 정당들 사이 또는 정당 내부의 정치적 불안 또는 정쟁의 격화;
- 중동 및 북아프리카 산유국가와 관련한 적대행위 또는 시민소요 및 석유 공급의 차단 또는 석유 가격의 상승;
- 북한과 한국 및 미국간의 긴장감 증가 또는 적대행위 발생; 그리고
- 한국 금융규정의 변경.

당사의 영업은 국내 노동시장의 불안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국내의 경기침체 또는 회생과 파산의 증가는 해고와 높은 실업률로 이어질 수 있는바, 이러한 요소들로 인하여 사회불안이 높아지고 실업급여와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지출이 크게 증가할 수 있음.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2007년도와 2008년도 실업률은 3.2%였음. 그러나 2009년에는 한국 경기 침체의 여파로 실업률이 3.6%로 상승하였고 2010년에는 3.7%로 더 상승하였음. 향후 실업률 상승과 고용시장 불안은 당사 고객의 영업활동이나 대출금 상환능력뿐만 아니라 당사의 영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국내 기업들의 재무상태를 악화시킴으로써 해당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가격을 하락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음. 이러한 전개는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당사의 보통주와 ADS 관련 리스크

당사나 당사의 주요주주는 당사의 보통주나 ADS를 장래에 처분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보통주 및 ADS의 시장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당사에 대한 투자 및 상대적인 소유비율을 희석시킬 수 있음.

2009년 9월, 당사는 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따라 30,000,000주의 보통주(ADS 형식의 2,775,585주의 신주를 포함)를 주당 37,250원의 인수가액(ADS의 경우 주당 미화 29.95달러)에 새로 발행함. 당사는 현재 보통주, ADS나 해당 증권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전환 가능한 주식들을 추가적으로 공모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음. 그러나, 당사는 장래에 해당 증권에 관해 공모를 시행하거나 매각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음. 2011.3.31. 현재 당사 100% 소유 자회사인 국민은행은 당사가 발행한 보통주 34,966,962주, 즉 당사 발행주식 총수의 약 9.05%에 해당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 국민은행은 한국의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주식을 2011년 9월까지 처분해야 함. 따라서, 국민은행은 2011년 9월 이전까지 언제라도, 1회 이상의 거래를 통해서, 해당 주식의 공모 또는 매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추가적으로, 당사의 주요주주인 ING Bank N.V. 및 국민연금은 2010. 12. 31. 현재 당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0% 및 4.9%를 각각 보유하고 있으나, 상기 주주들은 해당 주식을 언제든지 매각할 수 있음.

당사가 보통주, ADS나 해당 증권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전환 가능한 증권을 미래에 공모 또는 매각하거나, 주요주주가 당사의 보통주를 상당 부분 매각하거나, 해당 공모나 매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대중들 사이의 인식은 당사의 보통주 및 ADS의 시장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 추가적으로, 당사가 미래에 해당 증권을 발행하는 것은 당사에 대한 투자 및 상대적 소유비율을 희석시킬 수도 있음.

보통주의 소유권은 국내법에 의한 제한을 받음.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동일인은 그 계열사들과 함께 원칙적으로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음. 다만 비금융주력자의 경우에는 은행지주회사 주식의 9.0% 이상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음. 동일인 및 그 계열사들이 함께 보유하는 당사 보통주(미국예탁주식이 표창하는 보통주도 포함)의 총수가 해당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주는 해당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는 해당 주주에게 최대 육(6)개월 내에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하라고 명할 수 있음. 비금융주력자가 해당 은행지주회사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해당 은행지주회사등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 규정된 방법으로 해당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비금융주력자는, 기타 주주들에 의한 그들 지분의 매도와 같은,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승인된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한도초과주식을 보유하도록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획득해야 하며, 금융지주회사법에 규정된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되지 않도록 해당 지분을 처분하거나 조치를 취하여야 함. 비금융주력자는 해당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는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즉시 명할 수 있음. 이러한 명령 위반시에는 처분하는 날까지 매 1일당 처분하여야 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의 0.03%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 Item 4B. 사업의 개황-감독 및 규정-금융지주회사에게 적용되는 주요규정-금융지주회사의 소유권에 관한 제한을 참조.

당사의 ADS 보유자들은 당사의 ADS를 원주로 전환하여 직접주주의 지위를 취득하지 않는다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음.

당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의 양도 및 타사와의 합병 등의 특별한 경우, 이에 반대하는 주주는 국내 관련법규상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ADS 보유자는 주식예탁기관이 이를 거절한다면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 다만, ADS 보유자들은 그와 관련된 거래들이 승인될 주주총회 기준일 전에 ADS를 원주로 전환하여(전환에 따른 비용은 주주가 부담함), 직접주주의 지위를 취득해야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ADS 보유자는 보통주의 예약이나 인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당사의 주식예약계약에 의하면, 보통주 주주는 주식예약기관의 국내 보관기관에 보통주를 예약하고 ADS를 인수할 수 있으며, ADS 보유자는 주식예약기관에 ADS를 반납하고 보통주를 인출할 수 있음. ADS의 발행(ADS의 공모와 ADS에 대한 이익배당 또는 주식배당을 포함)을 위하여 당사가 예약하였거나 예약을 승인한 보통주의 총수와 주식예약기관의 명의로 국내보관기관에 예약한 보통주의 수 사이의 차이를 초과하는 보통주에 대하여는, 당해 예약에 대하여 당사가 동의를 하거나 국내 법령상 당사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가 아닌 한, 예약을 할 수 없음.

당사의 주식예약계약에 의하면, 만약 보통주가 주식배당, 무상증자, 유상증자 또는 보통주의 종류 변경 등을 통하여 취득된 것이라면 당사의 동의가 불필요함. ADS 보유자가 ADS를 반납하고 보통주로 전환시킨다면, 다시 ADS를 교부받기 위해 보통주를 예약할 수 없게 될 수 있음.

ADS 보유자는 신주인수권을 갖지 못할 수 있음.

상법과 당사의 정관은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신주가 발행될 때마다, 주주들에게 그들이 보유한 주식수의 비율로 보통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보장하고 있음. 주식예약기관은 당사와 협의하여 ADS주주들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도록 하거나, 그들을 대신하여 신주인수권을 처분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도록 할 수 있음. 그러나, (1) ADS 보유자들에게 유상증자에서의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이 적법하며 이행가능하다고 판단되고, (2) (i) 당사가 그러한 주식에 관련하여 1933년 미국 증권법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효력이 발생하거나 (ii) 또는 그와 같은 유상증자가 미국 증권법에 따른 등록의무를 면제받거나 등록의무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예약기관이 당사의 유상증자 절차에서 ADS 보유자에게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도록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님.

한편, 당사는 미국 SEC에 어떠한 종류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그와 같은 등록신청서의 효력 발생을 보장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ADS 보유자들에 대한 배당금 및 ADS 매각대금은 미달러화와 원화간의 환율변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당사의 보통주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며, 원화로 호가되어 거래됨. ADS에 대한 현금배당금은 주식예약기관에 원화로 지급되고, 이후 주식예약기관에 의해 일정요건에 따라 미달러화로 환전됨. 미달러화와 원화간의 환율변동은 ADS 보유자가 주식예약기관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ADS 보유자가 ADS를 교부하고 인출한 보통주 매매대금의 미달러화 가치 및 ADS의 유통 시장에서의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음. 환율변동은 보통주 주주가 받는 배당금과 주식매매대금의 미달러화 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당사가 발행한 ADS의 시장가치는 국내증권시장의 시황 변동에 따라 바뀔 수 있음.

당사의 보통주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며, 국내의 증권시장은 미국이나 유럽의 증권시장보다 시가총액 규모가 작으며 변동성이 큼. ADS의 시가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보통주 거래가격의 변동에 따라 변동할 수 있음.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은 상장주식 매매가격과 매매수량의 변동에 대한 상당한 변동을 경험한 바 있고, 그에 따라 고정된 범위로 일일 주식가격변동폭을 제한하고 있음. KOSPI는 2007.12.31. 1,897.1에서 2008.10.24. 938.8로 하락하였음. KOSPI는 2011. 6. 17.에 2031.93을 기록함. 한국 기업의 주식 가격이 미래에 하락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음. 선진국의 주식시장을 포함한 여타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국내주식시장은 시장 조작, 내부자거래와 결제제도상의 문제점을 경험한 바 있음. 위와 같은 문제점이 재발하게 된다면 국내와 국제시장에서 국내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당사의 보통주와 ADS를 포함)의 시가와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한국 정부는 민간부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과거에도 때때로 영향력을 행사한 바 있음. 정부는 특정산업이 포화 상태라고 판단되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합병을 유도하고 사

기업으로 하여금 유가증권의 공모를 장려하기도 하였음. 이와 유사한 조치가 정부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국내주식시장의 침체와 활성화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정부의 조치(또는 그러한 조치가 진행 중이거나 시행 또는 중단되리라는 예상과 인식을 포함)는 국내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시가에 급격한 변동을 가져올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당사의 보통주와 ADS의 시가 및 유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위기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한국 정부가 예상한다면, 정부는 당사의 ADS 보유자와 주식에탁기관이 배당금 등을 미달러화로 환전하거나 지불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음.

만약 한국 정부가 국내 또는 국제 경제 상황의 급격한 변동이나, 국제수지안정 및 기타 거시경제 정책 실행에 대한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지급정지 또는 거래시 정부당국의 사전승인과 같은 외국환거래법상 제한을 부과 할 수 있음.

ADS 보유자는 당사에 대한 외국법원의 판결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수 있음.

당사는 국내법상 주식회사로서, 당사의 모든 이사와 임원 그리고 원문에 기재된 사람은 대체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그들의 자산과 당사의 자산은 거의 대부분 국내에 소재하고 있음. 그 결과, ADS 보유자들에 의한 당사와 당사의 이사 및 임원에 대한 미국 내에서의 서류송달 또는 그들과 당사에 대한 미국연방유가증권법의 책임조항에 의한 미국법원의 판결 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 미국연방유가증권법의 책임조항을 적용한 미국법원의 판결을 국내에서 집행할 수 있을 지의 여부는 확실치 않음.

Item 4. 회사의 개황

Item 4A. 회사의 연혁과 발전

전체 개황

당사는 2008.9.29. 국민은행과 그 자회사 등의 포괄적 주식이전을 통하여 금융지주회사로 설립되었음. 당사의 설립근거법령인 금융지주회사법 및 관련 규정에 의하면,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 신용카드회사 및 증권회사 포함)들은 하나의 금융지주회사 체제 하에서 조직 및 경영될 수 있음.

(구)국민은행의 연혁

(구)국민은행은 국민은행법에 따라 한국 정부에 의해 1963년 설립되어 일반 국민 및 중소기업에 게만 은행서비스를 제공하였고, 1994년 9월 기업공개를 시행하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함.

1995년 1월 국민은행법이 폐지되어 (구)국민은행은 특수은행에서 상업은행으로 지위가 변경되었고, 대기업에 여신을 제공할 수 있게 됨. 기타 원문의 (구)국민은행의 연혁 부분은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주택은행의 연혁

주택은행은 저소득층 및 중산층이 주택을 구매하도록 장기 및 저리의 주택자금을 제공하고, 저리의 여신을 건설회사에게 제공함으로써 주택공급을 증진하기 위해 1967년 한국 정부에 의해 설립됨. 주택은행은 1997년까지 비주택자금대출 이외에도 10년 이상 만기의 주택자금대출 및 신규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주택관련 계좌를 국내은행 중 유일하게 제공할 수 있었음.

주택은행은 1999년 7월 ING그룹의 계열사들과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결과 ING그룹은 주택은행 발행주식 총수의 9.99999%인 9,914,777주를 취득하게 되었고, 2010.12.31 현재 당사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보유하고 있음. ING그룹과의 관계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Item 4B. 사업의 개

황-기타 사업-생명보험업무.” “Item 7B.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및 “Item 10C. 중요 계약”을 참조하기 바람. 기타 원문의 주택은행의 연혁 부분은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구)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

원문의 (구)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 부분은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KB금융지주의 설립

주식이전과 관련하여, 주식이전에 반대하는 국민은행의 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매도하였음.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수가격은 한 주당 63,293원이었음. 국민은행은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38,263,249주를 매수하였음. 주식이전 전에 국민은행은 자사주매입을 실행하였는데 그에 따라 16,840,000주를 매입하였음. 결과적으로 국민은행은 당사 주식의 73,607,601주를 주식인수를 통하여 받았으며, 이후 그 중 일부는 매각하였음. 2011.3.31 현재 국민은행은 당사 주식 34,966,962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총 주식의 9.05%를 차지함.

기타 원문의 KB금융지주의 설립 부분은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다만, 원문의 KB금융지주의 설립 부분은 사업보고서 I.회사의 개요 2. 회사의 연혁(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Item 4B. 사업의 개황

사업: 첨부 표8)

당사는 연결재무제표상의 자산 총액기준으로 한국에서 가장 큰 금융지주회사 중의 하나이며, 당사의 영업은 자산(여신포함) 총액을 기준으로 가장 큰 상업은행인 국민은행을 포함함. 당사의 자회사들은 상업금융, 신용카드, 자산운용, 생명보험, 자본시장업무 및 국제금융을 포함한 광범위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2010.12.31 현재 당사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252조원의 자산 총액, 180조원의 예수부채 및 17조원의 자기자본 총액을 보유하고 있음.

당사는 한국법상 “포괄적 주식이전”에 따라 2008년 9월 설립됨. 이에 관해서는 “Item 4A. 회사의 연혁-KB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참조하기 바람.

당사는 자산측면에서, 가계 및 중소기업에게 신용 및 관련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더 적은 규모로, 대기업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함. 당사는 예금과 관련하여 가계 및 모든 규모의 기업들에게 예금상품부터 관련 서비스를 전부 제공함. 이러한 서비스는 대부분 국민은행을 통해 제공됨.

당사의 핵심적인 가계 및 중소기업관련 업무는 고객들의 접근성 및 편의에 중점을 두고 있음. 2010.12.31 현재 1,173개에 달하는 지점으로 이루어진 한국에서 가장 큰 네트워크 중의 하나인 당사의 영업망은 당사의 사업에 견고한 토대를 제공하며 경쟁력의 주된 원천임. 당사의 영업망은 대규모의 안정적이고 비용효율적인 자금조달방식을 제공하며, 당사의 고객에게 편리한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게 하며, 특히 점점 더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고객에게 주의를 기울이며 당사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당사의 지점 네트워크는 자동화 은행 기기, 유무선 전화 및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강화됨. 2010.12.31, 당사는 한국 인구의 약 50%에 달하는 약 2천6백만명을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음.

당사의 대출업무의 주요 구성에 대해서는 표8)을 참조. 2010. 12. 31. 현재 당사의 가계대출, 신용카드대출 및 신용카드채권은 총 여신 포트폴리오의 56.3%에 해당함.

당사는 주택자금대출을 포함하여, 전 범위의 가계대출상품 및 가계금융서비스를 제공함. 당사는 주택자금대출을 가장 많이 제공하는 민간은행임.

중소기업대출은 대출 및 고객 유형에 따라 당사의 비가계여신 포트폴리오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광범위한 영역의 한국기업에 관한 다양하게 분포된 익스포저를 구성하고 있음. 그 중 한 유형은 중소기업 중 가장 규모가 작은 SOHO 기업에게 공여된 담보부대출임. 당사는 중소기업에게 공여된 대출규모 때문에 당사의 숫자가 많고 지리적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지점 네트워크로 가능한 고객 중심의 전략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대기업에 관한 당사의 여신 익스포저는 당사의 총 여신 포트폴리오의 비율 기준으로 업계 경향과 같이, 약간 감소하였음. 다만, 당사는 해당 고객에게 수수료 관련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함으로써 해당 고객과의 양질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확장할 것임.

(구)국민은행이 1980년에 국내신용카드의 발급을 시작한 이래로, 당사의 신용카드사업은 국내의 신용카드 사용이 가속됨에 따라 최근 급속히 성장함. 2010. 12. 31. 현재 약 1,050만 명이 KB카드를 소지하고 있음. 2011년 3월, 당사는 국민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업 부문을 인적 분할하여 신규회사를 설립하였음. 그 결과, 당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신설 자회사인 주식회사 KB국민카드가 당사의 신용카드업을 운영하고 있음.

전략

원문의 전략 부분은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라며, 이하에서는 원문을 개괄적으로 요약하였음. 다만, 원문의 전략 부분은 사업보고서 II.사업의 내용 1.사업의 개요(자본시장법 제 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당사의 전략적 초점은 아시아금융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글로벌 금융그룹이 되는 것임. 당사는 한국의 선도 은행으로서의 시장 점유를 굳히고, 개인과 기업 고객에게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해외영업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임. 주요 전략은 다음과 같음.

금융지주회사 체제하의 종합금융서비스의 제공과 자회사들간의 시너지 극대화

2009년 2월 시행된 자본시장법의 영향 등으로 인하여 국내 금융시장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앞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컨버전스의 확산,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외국 금융기관의 성장과 국내 금융기관들의 해외 영업 확대 등으로 인하여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당사는 개인과 기업 고객에게 다양한 형태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세계적인 금융기관과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음. 이를 위해 그룹 CRM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룹통합 우대고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또한, 금융지주회사 체제를 통하여 폭넓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과 고객정보 공유를 통한 교차판매 활성화, 통합구매를 통한 비용절감 및 집중화된 자본관리 등이 가능해졌음.

핵심 고객분류를 통한 타겟 마케팅 및 이를 통한 양질의 고객가치와 서비스 제공

최근 당사는 성장과 수익 잠재력이 뛰어난 특정 시장부문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 개발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또한 핵심 고객군을 분류하고 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타겟 마케팅을 실행함으로써 이들 고객군에 대한 시장점유율을 높여나갈 것임. 특히 보다 향상된 고객관계관리(CRM) 방법을 통하여 고객자산보유자의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우량 고객에 대한 당사의 지갑점유율(wallet share)을 증가시켜 나갈 것임.

또한, 당사는 이러한 고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차별화된 수수료 기반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량 고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유지해 나갈 것임. 당사의 상품 및 서비스 개발과 마케팅은 고객분류에 의한 각 고객군별 수요를 반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예금상품, 금융투자상품을 포함한 고도화된 형태의 복합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음. 또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영업점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러한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개방형판매전략을 개발함으로써 고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음.

당사의 주요 고객관계 전략 중 하나는, 당사의 고객에게 보다 큰 가치와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당사는 향상된 고객관계 관리기술과 지점망, 자동화기기(ATM), 콜센터, 모바일뱅킹, 인터넷뱅킹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고객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함.

당사의 기업대출영업에 있어서 여신의 질 강화에 전략적 초점을 맞춤

당사는 최상위권 기업들과의 거래를 유치하고 맞춤화 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우리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기업대출에 집중하여 기업금융시장의 선도적인 서비스업자로서의 지위를 구축하고자 함. 기업금융시장에 있어서 당사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하여 당사는, ①보다 균형 있고 강화된 포트폴리오의 구성, ②높은 마진과 낮은 리스크의 금융상품 등 다양한 기업금융상품의 개발과 판매, ③투자은행서비스 뿐 아니라 기업간 거래, 외환거래, 파생상품 등 투자상품을 통한 대기업 고객들로부터의 보다 많은 수수료수익의 창출, ④기업고객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채널 네트워크의 향상 등에 전략적 초점을 맞춤.

내부 리스크 관리능력의 강화

당사는 효과적인 여신리스크 관리를 통하여 자산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당사의 안정적인 성장과 수익성을 유지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믿고 있는바, 리스크 관리는 당사의 주요 전략분야 중 하나임. 당사는 내부 리스크 관리능력의 강화를 위하여, ①선진 신용평가기법에 따른 승인 절차의 강화, ②내부적인 법규준수정책 개선과 일상적인 업무 수행에 있어서 업무매뉴얼의 엄격한 적용 원칙을 시행하고 있음.

업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는 성과주의 및 고객지향적 문화의 형성

당사는 핵심 전문가들을 개발하고 훈련시키기 위하여 상당한 자원을 투자하였으며, 사내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사 직원들의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고자 함. 또한 당사는 당사 직원들이 그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고, 각자의 성과에 대해 즉각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성과주의적 문화를 형성하고자 노력하여 왔음. 당사는 모든 사업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고객에 대한 높은 수준의 서비스 제공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인 인력 풀을 보유하고 있음.

가계금융

원문의 가계금융 부분은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당사의 가계금융은 대출업무와 예금업무로 구성되어 있음. 다만, 원문의 가계금융 부분은 사업보고서 II.사업의 내용 1.나.(2)취급업무 및 상품·서비스의 개요, 3.다.국민은행 중 (1)예금업무, (2)대출업무 등(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대출업무 : 첨부 표9)

가계대출(주택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기타 가계대출)의 잔액과 대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첨부 표9) 참조.

당사의 가계대출은 아래와 같이 구성됨.

- 고객이 주택을 구매, 건설, 개량 또는 임대하는 자금을 조달하도록 제공되는 주택자금대출 및 대출상환을 보장하기 위해서 당사 고객의 주택이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담보대출. 당사는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하여 당좌대출 또한 제공함.
- (주택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기타 목적으로 고객에게 공여된 기타 가계대출. 상기 대출은 고객이 요구불계좌로부터 예치된 자금을 초과하여 자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가 정한 최대 한도까지 해당 부족금액을 보전하기 위해 고객에 공여되는 당좌대출을 포함함.

주택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담보부대출의 경우, 당사의 정책은 조정된 담보가치의 최대 100%(정부가 투기위험이 높은 분야로 지정하여 당사가 담보감정가의 40%에서 60%로 대출을 제한하는 분야는 제외)에서 당사의 담보권보다 우선하는 기타 담보가치를 제외한 금액까지 대출하는 것임. 부동산을 위한 조정된 담보가치를 산정할 때 당사는 일반적으로 40%에서 80% (주택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40%에서 60%)사이의 비율에 의한 담보감정가를 사용함. 이 비율은 부동산의 위치 및 사용 목적에 따라 다르며, 부분적으로는 인근 부동산의 법정 경매 가격을 고려하여 설정됨.

-주택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원문의 주택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부분은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다만, 원문의 주택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부분은 사업보고서 II.사업의 내용 3.라.국민은행 중 (2)대출상품 중 주택자금대출 및 부동산담보대출의 주요내용(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2010.12.31. 현재 당사 주택자금대출의 약 73.3%는 대출의 대상인 주거용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고, 약 6.7%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의하여 보증되고 있으며, 나머지 약 20.0%는 무담보임. 또한 2010.12.31. 현재 당사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초기 LTV 비율은 약 46%로서, 이는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그 이유로는 평균 소득수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가격, 전세제도, 담보목적물 평가가치의 일정 부분만을 담보로 인정하는 것 등이 있음.

이자율 결정 : 당사 가계 주택자금대출의 이자율은 주기적 변동금리(당사의 시장조달금리(Market Opportunity Rate system)을 사용하여 도출된 3개월, 6개월 또는 12개월 만기의 기준금리에 근거함)에 일반적으로 근거함. 2010.12.31. 현재 당사의 3개월, 6개월, 12개월 기준 금리는 각 2.80%, 2.92% 및 3.24%임. 2010.12.31. 현재 주택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금 중 약 97%는 변동금리에 의하여 결정됨.

-기타 가계대출

기타 가계대출은 원칙적으로 무담보이나, 부동산, 예금, 증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경우도 있음. 2010.12.31. 현재 당사의 가계대출금(다만, 주택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은 제외) 총액 중 약 57.4%인 15,957십억원이 무담보대출임. 또한 한도대출 총액은 2010.12.31. 현재 약 8,650십억원임.

이자율 결정 : 2010. 12. 31. 현재 당사의 기타 가계대출의 99%는 시장조달금리를 기준금리로 한 변동금리가 적용됨. 당사의 기타 가계대출의 이자율은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결정되나, 무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당사의 여신승인절차에서 결정된 고객의 신용등급을 고려하여 이자율이 결정됨.

예금수신업무

원문의 예금수신업무 부분은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다만, 원문의 예금수신업무 부분은 사업보고서 II.사업의 내용 3.다.국민은행 중 (1)예금업무, 라.국민은행 중 (1)예금상품(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가계금융고객의 예금잔액은 2008.12.31. 현재 97,378십억원, 2009.12.31 현재 100,778십억원, 2010.12.31. 현재 111,489십억원으로서, 당사 예금 총액의 각 61.4%, 59.6%, 62.0%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당사는 고객 개개인의 재무상태나 특성, 수요에 따라 다양한 예금상품(예를 들면, 요구불예금, 정기적금·예금, 저축성예금, 양도성예금, 외화예금, 주택청약예금, 주택청약부금 등)을 제공하고 있음.

당사는 국민은행, KB투자증권, KB생명을 통하여 KB Star Club이라는 우대고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0년도에 KB Star Club의 고객이 평균잔액 기준으로 개인고객 예금 총액의 약 88%를 차지하고 있음.

예금자보호법은 한국예금보험공사가 예금주들에게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은행예금의 상환을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예금보험제도는 각 예금주에게 각 은행당 최대 50백만원까지 보증하고 있음.

신용카드: 첨부 표10)

원문의 신용카드 부분은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다만, 원문의 신용카드부분은 사업보고서 II.사업의 내용 3.다.국민은행 중 (6)신용카드업무, 라.국민은행 중 (6)신용카드(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당사는 신용카드부문의 위험 관리 및 효율성을 강화함으로써 당사의 신용카드 사업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함. 또한 신용카드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 당사의 기존 고객에 대한 신용카드의 교차판매 강화, 축적된 금융서비스 제공, 각종 사은 프로그램 및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 등을 실행하고 있음.

신용카드 사업운영과 관련한 자료는 첨부 표10) 참조.

기업금융: 첨부 표 11)

원문의 기업금융 부분은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다만, 원문의 기업금융 부분은 사업보고서 II.사업의 내용 3.라.주요 상품·서비스(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대출금과 그 대출금이 당사의 대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것은 첨부 표11) 참조.

당사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하여 대출과 예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원화대출과 관련하여,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 각 177,190개사, 220,407개사, 227,860개사의 중소기업고객과 994개사, 941개사, 993개사의 대기업고객을 각 보유하고 있음. 당사는 기업에게 기업간 자금이체, 지정과 대리점으로부터 본점 계좌로의 자금이체, 기업의 여러 고객으로부터 기업의 주계좌로의 자금이체 등과 같은 펌뱅킹(firm banking)을 포함한 CMS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2008년도에 108십억원, 2009년도에 115십억원, 2010년도에 112십억원의 수수료수익을 올림. 기업금융 고객의 예금 총잔액은 2010.12.31. 현재 59,335십억원으로서 당사 예금 총액의 33.0%를 차지함.

중소기업금융

2010년도에 중소기업에 대한 원화표시대출의 연체율은 금융권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1년 1사분기에는 더욱 증가하였음. 당사의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의 연체율은 향후 한국과 국제 경제의 악화로 더 증가할 수 있음. 한국 정부는 최근 몇 년간 국내 은행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하여 금융지원을 할 것을 장려하였음.

-대출업무

당사의 중소기업에 대한 주요 대출상품은 운전자금대출과 시설자금대출임. 2010.12.31. 현재 운전자금대출과 시설자금대출은 당사의 중소기업대출 중 각 71.4%와 28.6%를 차지함. 2010.12.31. 현재 당사는 227,800개가 넘는 중소기업고객을 확보하고 있음.

중소기업대출은 부동산 또는 예금에 의하여 담보되는 경우도 있고, 무담보인 경우도 있음.2010.12.31. 현재, 중소기업대출 중 87.8%는 담보부대출 또는 보증부대출이고, 담보대출 중 55.7%는 부동산담보대출, 44.3%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 담보대출임.

-이자율 결정

당사는 기업대출상품의 이자율을 거래리스크, 자금조달 비용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음. 당사의 만기대응 시장금리(Market Opportunity Rate system)는 현 시장이자를 고려한 정기 변동이율 시스템임. 2010.12.31. 현재 3개월 시장금리는 2.80%, 6개월 시장금리는 2.92%, 1년 시장금리는 3.24%임.

대기업금융

-대출업무

당사의 대기업에 대한 주요대출상품은 운전자금대출과 시설자금대출임. 2010.12.31. 현재 운전자금대출과 시설자금대출은 대기업에 대한 대출 총액의 각 80.0%와 20.0%를 차지함.

대기업대출 중 30.4%는 담보부대출과 보증부대출임. 담보부대출 중 부동산담보부대출은 25.1%에 해당하고 예금 또는 증권 담보부대출은 74.9%에 해당.2010.12.31. 현재 대기업대출의 37.9%는 제조업, 12.3%는 건설업, 9.4%는 금융업과 보험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여신 공여임.

-이자율 결정

대기업대출의 이자율은 중소기업대출에서의 이자율 결정방법과 같은 방법을 사용함. 위의 중소기업금융 부분 참조.

자본시장업무와 국제금융

유가증권투자 및 매매: 첨부 표12)

당사는 적절한 유동성을 제공하는 원천을 유지하고 이자 및 배당수익과 자본이득을 발생시키는 등 당사의 이익을 위해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매매하고 있음. 만기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 및 단기 매매증권으로 구성된 당사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2008년 말, 2009년 말, 2010년 말 현재, 각 34,461십억원, 37,706십억원, 37,607십억원의 장부가액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 자산 총액의 각 13.3%, 14.9%, 14.9%에 해당됨.

원문의 유가증권투자 및 거래 부분은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다만, 원문의 유가증권투자 및 거래 부분은 K GAAP에 따른 국민은행의 감사보고서 주식 및 사업보고서 II.사업의 내용 3.다.국민은행 중 (4)유가증권 투자업무(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투자유가증권의 현황과 공정가치 등에 관한 자료는 첨부 표12) 참조.

파생금융상품 거래: 첨부 표13)

당사는 1999년 중반 파생상품업무를 완전히 개시하기 전, 대부분 당사의 고객을 위해 제한된 수량의 파생상품 거래에 참가하였음. 그 이후 당사의 거래량은 2008년 207,083십억원이었으나, 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2009년 173,502십억원으로 감소하였고 2010년 174,634십억원으로 소폭 증가하였음. 파생상품 및 외국환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당사의 순수익은 2008.12.31, 2009.12.31, 2010.12.31에 각 36십억원, 181십억원, 390십억원이었음.

기타 원문의 파생금융상품 거래 부분은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다만, 원문의 파생금융상품 거래 부분은 K GAAP에 따른 감사보고서 주식 및 사업보고서 II.사업의 내용 3.라. 국민은행 중 (10)파생상품업무(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2008년 말, 2009년 말, 2010년 말 현재 당사의 파생상품 및 외국환원물계약의 추정공정가치 및 헷지 목적으로 보유 및 발행되고 U.S.GAAP에 따른 헷지회계처리에 적합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표13) 참조.

자산유동화 거래

원문의 자산유동화 거래 부분은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당사는 자산유동화에 관련된 상품개발과 운영능력에 관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산유동화 거래시장에서의 선도은행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금융상품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자회사인 KB투자증권을 통한 거래 등 다양한 자산유동화거래에 참여하고 있음. 또한 당사는 최초 발행금액 기준으로, 2008년도에 1,479십억원(공모기준 1,425십억원), 2009년도에 5,271십억원(공모기준 5,159십억원), 2010년도에 1,858십억원(공모기준 1,858십억원)의 자산유동화 거래를 하였음.

콜론

2009.12.31.에는 446십억원의 콜론 및 1,365십억원의 콜머니가 있었던 것에 비해 2010.12.31.에는 920십억원의 콜론 및 605십억원의 콜머니가 있었음.

투자금융

당사는 수수료수익의 증가와 수익기반의 다양화를 위하여 투자금융분야의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당사 투자금융의 주요 업무에는 프로젝트 금융, M&A 관련 인수금융, 금융자문서비스, 구조화금융 등이 포함됨. K GAAP에 의한 2010년도 당사 투자금융 수익은 총 197십억원(이자수익 92십억원, 수수료수익 105십억원)임. 당사는 2008년 3월 한누리투자증권 발행주식의 95.8%를 266.3십억원에 인수하였음. 이후 위 회사는 'KB투자증권'으로 사명을 변경함.

국제금융: 첨부 표14)

원문의 국제금융 부분은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다만, 원문의 국제금융 부분은 사업보고서 V.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3.계열회사 등의 현황(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일부 기술되어 있음.

당사는 외환서비스, 파생상품거래, 수출입관련서비스, 역외대출, 신디케이트론, 외화증권투자 등의 국제금융업무를 하고 있음.

외화자산 및 외화차입부채 현황은 표14) 참조.

2008년 3월 당사는 카자흐스탄 은행인 JSC Bank CenterCredit의 주식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8월 약 528십억원에 JSC Bank CenterCredit의 당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3.0%에 해당하는 보통주 29,972,840주를 취득하였음. 위 계약 조항에 따라서, 당사는 2008년 11월 및 12월에 JSC Bank CenterCredit의 보통주 총 14,163,836 주를 추가적으로 취득하였음. 당사는 2009년 9월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및 JSC Bank CenterCredit의 일부 주주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2010년 1월 및 2월 JSC Bank CenterCredit의 보통주 3,886,574주와 의결권 없는 전환우선주 36,561,465주를 취득함. 당사는 2011년 3월 31일 현재 JSC Bank CenterCredit의 보통주 총수의 29.6%를 보유하고 있음.

2009년 5월 당사는 약 10십억원에 캄보디아 은행인 Khmer Union Bank 의 보통주 132,600주를 취득하였음. 그 결과, 당사는 Khmer Union Bank의 의결권의 51%를 취득하였고, Khmer Union Bank는 Kookmin Bank Cambodia PLC로 사명이 변경되었음. 2010년 12월, 당사는 Kookmin Bank Cambodia PLC의 보통주 37,602주를 추가로 취득하였음. 2011년 3월 31일자 현재, 당사는 Kookmin Bank Cambodia PLC의 보통주 발행총수의 53.2%를 보유하고 있음.

투자신탁과 기타업무와 관련된 수탁 및 자산보관

당사는 투자신탁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 금융기관을 위하여 자산 수탁, 보관, 사무수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업무와 관련된 결제업무도 대행하고 있음.

기타 원문의 투자신탁 등 업무 부분은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다만, 원문의 투자신탁 등 업무 부분은 사업보고서 II.사업의 내용 3.다.국민은행 중 (5)신탁업무, 3.라.국민은행 중 (3)신탁상품, (4)투자신탁상품(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기타 사업

신탁계정운용서비스

-금전신탁관리: 첨부 표15)

K GAAP에 따른 당사의 유형별 금전신탁 잔액은 표15) 참조.

원문의 금전신탁관리 부분은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다만, 원문의 금전신탁관리 부분은 사업보고서 II.사업의 내용 3.다.국민은행 중 (5)신탁업무, 3.라.국민은행 중 (3)신탁상품,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또한 신탁관련법령 및 관련규정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금융감독법규’에 상세하게 공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조.

-재산신탁관리

2010.12.31. 현재 당사의 재산신탁 총액은 2009년도의 2,217십억원에 비교하여, 2,646십억원으로 증가하였음. 재산신탁은 당사의 US GAAP 재무제표상으로는 연결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투자신탁운용

당사는 KB자산운용을 통하여 고객에게 증권투자신탁상품을 제공하고 고객의 투자자금을 운용하고 있음. 2008년 9월 포괄적 주식이전에 의해, KB자산운용의 20%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ING Insurance International B.V.의 모든 KB자산운용 발행보통주식이 당사의 주식으로 교환되었음. 이러한 주식이전에 따라 KB자산운용은 당사의 완전 자회사가 되었음. 2010.12.31. 현재 KB자산운용이 운용중인 수탁고의 총액은 18,067십억원임.

국민주택기금의 관리

국민은행은 2008년 2월, 국토해양부(이전 건설교통부)의 국민주택기금 수탁기관 선정에 참여하지 않아 현재는 기존의 기금 계좌만 관리하고 있으며, 그 대가로 위탁수수료를 분기별로 지급받고 있음. 2009년도에는 52십억원의 위탁수수료를, 2010년도에는 42십억원의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았음.

방카슈랑스

원문의 방카슈랑스 부분은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다만, 원문의 방카슈랑스 부분은 사업보고서 II.사업의 내용 3.다. 국민은행 중 (7)방카슈랑스(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현재 당사의 방카슈랑스 사업은 16개의 생명보험사 및 9개의 손해보험사와 업무제휴를 하고 있으며, 당사의 각 지점을 통하여 58개의 차별화된 방카슈랑스 상품을 제공하고 있음. 2010년도 현재, 당사의 방카슈랑스 사업을 통한 수수료 수익은 147십억원임.

영업망

은행지점 네트워크

2010.12.31. 현재 국민은행은 국내에 1,173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시중은행 중 가장 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기타 영업망: 첨부 표16)

인터넷뱅킹 사업이나 폰뱅킹 사업으로 인하여 얻은 수수료 수익은 표16) 참조. 원문의 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부분은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다만, 원문의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부분은 사업보고서 3.다. 국민은행 중 (11)기타 중 인터넷뱅킹서비스와 모바일뱅킹서비스(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당사의 모바일뱅킹을 통하여 자금 및 계좌이체, 증권거래를 할 수 있음.

당사는 지속적으로 펌 banking 서비스(firm banking service)를 개발하여 왔음. 2010.12.31. 현재 당사는 1,557개가 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CMS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경쟁

본 요약본의 “Item 3D. 투자 리스크 요소 - 경쟁 관련 리스크” 부분 참조.

정보기술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의 정착을 위해 그룹과 자회사 차원에서 다양한 IT시스템의 개발을 꾀하고 있음. 당사는 IT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이 업무관리지원과 고품질의 고객서비스제공에 중대하다고 믿고 있으며, 그에 따라 당사의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키고 있음

메인프레임(Mainframe) 기반의 은행 및 카드 IT시스템은 재해복구센터의 백업기능을 통하여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도록 설계 되었음. 또한, 당사의 은행 및 카드 IT시스템은 ‘Parallel Sysplex’라는 ‘멀티CPU시스템’의 구현을 통해, CPU 장애시에 심각한 중단 없이 거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 운영되고 있음. 2010년 2월, 당사는 금융거래에서 더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장하고 새로운 금융상품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고안된 차세대 금융 및 신용카드 IT시스템의 운영을 개시함. 당사는 또한 영업의 연속성을 위해 새로운 재해복구시스템의 운영을 시작하였고, 당사의 IT시스템을 표준화하고 IT시스템의 운영리스크를 좀 더 잘 관리하기 위하여, 다채널 통합 및 기업 애플리케이션 통합 시스템을 포함하여, 신기술을 채택함.

당사는 2010년도에, IT시스템에 약 412십억원을 사용하였는데, 여기에는 당사의 차세대 핵심 금융 시스템, 기업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Enterprise Data Warehouse system) 및 기타 새로운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음. 2010.12.31. 현재, IT운영과 관련하여 총 793여명의 상근직원을 고용하고 있음.

자산과 부채

여신 현황

당사의 2009.12.31. 현재 여신 총액은 196,225십억원이었으나 2010.12.31. 196,496십억원으로 감소하였음. 2010.12.31. 현재 당사 여신 총액의 95.5%은 원화대출임.

-여신 유형: 첨부 표17)

각 기간별 여신 유형에 관해서는 표17) 참조.

원문의 여신 유형 부분은 당사가 금융감독원에 공시한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참조.

-여신 집중

당사의 동일차주 또는 단일 재벌그룹에 대한 익스포저는 금융지주회사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각 20%와 25%로 제한됨. 국민은행의 동일차주 또는 단일 재벌그룹에 대한 익스포저는 은행법에 따라 국민은행의 기본자본(Tier I)과 보완자본(Tier II)의 합계액의 각 20%와 25%로 제한됨.

-상위 20 대 차주에 대한 익스포저 현황: 첨부 표 18)

2010.12.31. 현재 상위 20대 차주에 대한 당사의 총 익스포저는 20,618십억원에 달하며, 당사의 총 익스포저의 8.3%에 해당됨. 2010.12.31. 현재 당사의 상위 20대 차주 또는 발행회사 중 5개사가 잔여 여신규모에 근거하여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한국의 상위 37대 재벌에 속함. 상위 20대 차주에 대한 익스포저 현황은 표18) 참조.

-재벌에 대한 익스포저: 첨부 표 19)

2010.12.31. 현재 당사의 총 익스포저의 7.4%는 잔여 여신규모에 근거하여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37대 재벌에 대한 것임. 당사가 가장 높은 익스포저를 보유하고 있는 상위 10대 재벌에 대한 당사의 익스포저는 표19) 참조.

- 산업별 여신의 집중: 첨부 표20)

2010.12.31. 현재 당사의 산업별 국내 및 해외 기업에 대한 기업여신의 총잔액은 표20) 참조.

-여신규모에 따른 여신의 집중: 첨부 표21)

2010.12.31. 현재 미상환대출금의 여신잔액 규모별 현황은 표 21)참조.

- 만기 분석: 첨부 표22)

당사는 그 여신심사절차에 따라 통상적인 여신심사를 거친 후 통상 운전자금대출과 가계대출(분할상환금은 제외)의 만기를 연장해주고 있음. 운전자금대출은 총 5년의 기간 동안 일년씩 연장 가능하며, 가계대출은 총 5년의 기간 동안 한 번에 최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함. 당사의 2010.12.31. 현재 잔존만기별 여신 현황에 관하여는 표22) 참조.

- 이자율 민감도

당사의 2010.12.31. 현재 잔존만기가 1년 초과인 여신 중 고정금리 여신은 2,927십억원, 변동 또는 조정금리 여신은 86,943십억원임. 당사의 이자율 리스크 관리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위해서는, "Item 11.시장리스크에 대한 계량적. 비계량적 정보-운영리스크 관리"부분 참조.

-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한 크레딧 익스포저 : 첨부 표23)

원문은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다만, 원문의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회생, 화의 또는 기업구조조정절차 등 포함) 대상 기업에 대한 크레딧 익스포저 부분은 K GAAP에 따른 감사보고서 중 주식(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워크아웃은 당사가 차주와 기타 채권자들과 함께 해당 차주의 신용대출조건을 구조조정하는 자발적 절차를 말함. 과거에, 워크아웃은 2007년 제정되고 2010년 12월 31일에 만료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하여 규율됨. 2011년 4월, 국회는 2011년 5월 19일자로 효력이 발생하는 신규 기업구조조정법을 가결함. 일몰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개시된 워크아웃은 2011년 5월 19일자로 효력이 발생하는 신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하여 또한 규율을 받음. 일몰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과 유사한 신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르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의 모든 채권 금융기관들은 그들의 차주를 상대로 한 자신들의 권리행사의 금지, 워크아웃 절차의 개시 또는

채주가 마련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승인에 대한 권한을 가진 채권은행협의회에 참석해야 함. 채권은행협의회 결정 시 채주의 미상환된 총 부채의 75% 이상을 보유하는 채권금융기관들의 승인이 요구됨. 채주의 부채구조조정과 관련하여는 담보부부채의 75% 이상을 보유하는 채권금융기관의 추가 승인이 요구됨. 채권은행협의회 결정은 일단 승인이 되면, 채주의 모든 채권금융기관에 구속력을 가짐. 워크아웃의 개시, 부채구조조정이나 신규 신용공여에 반대투표한 금융채권기관은 해당 사안에 찬성투표한 채권금융기관에게 그들의 채권을 상호 합의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당사자들이 매수조건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는 해당 조건을 결정할 수 있음. 조정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반대하는 채권금융기관은 법원에 해당 결정을 변경하라고 요청할 수 있음. 신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2013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임.

당사는 현재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 진행 중인 기업들에게 여신을 공여하거나 해당 기업의 채무증권을 보유하고 있음. 2010.12.31. 현재 해당 기업에 대한 당사의 여신 및 보유 채무증권은 1,334십억원이며, 이는 당사의 여신 및 보유 채무증권 총액의 0.6%을 차지함. 여기에는 대기업 차주에게 공여된 여신 및 당사가 보유하는 그 채무증권의 합계액인 793십억원과 중소기업 차주에게 공여된 여신 및 당사가 보유하는 그 채무증권의 합계액인 541십억원이 포함됨.

2010.12.31. 현재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 진행 중인 기업을 포함한 기업개선작업에 있는 10대 기업에 대한 익스포저 현황에 관한 자료는 표23) 참조.

-총당금 설정정책 : 첨부 표24)

당사는 금융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총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부실기업여신의 자산건전성별 대손총당금 설정비율에 관해서는 표24) 참조. 기타 원문이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조.

-연체기간별 여신 현황 : 첨부 표25)

표시된 일자로 당사의 연체기간별 여신 현황(발생이자는 제외)은 표 25) 참조.

- 이자미보정 여신 및 이자보정 연체여신 : 첨부 표26)

당사는 통상적으로 이자 및/또는 원금의 지급이 하루라도 연체된 경우, 해당 여신을 이자미보정으로 분류함. 당사는 해당 여신이 이자미보정으로 분류된 날로부터 해당 여신에 대하여 이자를 인식하지 않음. 당사는 이자 및 원금 납입이 최근에 이행되고 있고 향후 원금 및 이자 납입이 될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여신을 이자보정 여신으로 재분류함. 당사는 일반적으로 수금될 때까지 이자미보정 여신에 대한 이자수익을 인식하지 않음.

미보정이자수익이란 이자미보정 여신에 관하여 지급기한이 도래하였으나 당사의 회계장부에 인식되지 아니한 이자를 말함. 당사가 해당 여신에 발생한 이자를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당사는 일년 동안 또는 대출실행 이후로 일년 미만의 기간 동안 이자미보정 여신으로 회계처리된 여신에 관한 이자수익으로서 2008년 및 2009년 말의 각 413십억원 및 278십억원의 비교하여 2010년 말 총 307십억원을 인식하였을 것임.

“이자보정 연체여신”은 원금이나 이자의 지급이 계약상으로 1일 이상 연체되었으나 여신에 대한 이자를 이자수익으로 인식하는 여신을 말함. 당사는 요구불 예금에 의해 전액 담보되거나 정부, 예금보험공사나 특정 금융기관으로부터 재정보증이 있는 경우 해당 여신에 대한 이자수익을 계속 인식함.

이자미보정 여신 및 이자보정 연체여신은 표26) 참조.

- 부실채권채무재조정으로 조정된 여신: 첨부 표27)

U.S. GAAP에 따라 정의된 “부실채권채무재조정으로 조정된 여신”은 표27) 참조.

해당 여신은 채무조정 시 계약조건 변경의 결과로 계약상의 원래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이자가 발생하는 기업대출로 주로 이루어짐.

2010년 동안, 채무 재조정된 여신의 원래 계약에 따라 인식되었을 이자수익은 45십억원에 달하며, 이 중 35십억원이 2010년의 이자수익으로 인식됨.

- 잠재적 문제여신

2010.12.31. 현재 당사는 차주가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변제 조건을 준수할 수 있는 차주의 능력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3,043십억원의 여신을 보유하고 있음.

- 기타 문제시되는 이자부자산

당사는 위와 같이 공시된 이자미보정 여신, 이자보정 연체여신, 재조정된 여신, 잠재적 문제 여신의 일부로서 공시할 것이 요구되는 부실채권채무재조정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기타 이자수익자산을 보유하고 있음. 2006년 말, 2007년 말, 2008년 말, 2009년 말 그리고 2010년 말 기준으로, 당사는 이자가 연체된 채무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 무수익여신

무수익여신은 90일 초과 연체된 여신으로 정의됨. 해당 여신은 “고정” 또는 “고정 이하” 여신으로 통상적으로 분류됨. 한국 규제요건에 따른 무수익여신의 분류에 관한 추가적 정보를 위해서는 상기 “충당금 설정정책”을 참조.

당사의 무수익여신 총액은, 2006.12.31. 2,143십억원, 2007.12.31. 1,339십억원, 2008.12.31. 1,068십억원, 2009.12.31. 1,365십억원이었고, 2010.12.31. 현재 1,316십억원임. 위 금액에는 당사 또는 당사의 전신인 회사가 한국 은행업 및 기타 당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한국자산공사에 매각한 고정 이하 여신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당사는 무수익 여신과 부채담보부증권을 기초로 증권을 발행하였음. 이들 중 일부 거래는 유동화를 통해 대출자산을 이전하였으나 그에 대한 지배가 포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출매매 거래로 처리되지 않음. 대신 해당 자산은 유동화 수익이 담보부차입부채로 회계처리되어 당사의 재무상태표에 여전히 인식되어 있음.

- 무수익 여신 분석: 첨부 표28)

차주별 당사의 총 무수익여신은 표28) 참조.

- 상위 20대 무수익여신: 첨부 표29)

2010.12.31. 현재 당사의 상위 20대 무수익여신은 당사의 무수익여신 총액의 34.2%를 차지함. 2010.12.31. 현재 당사의 상위 20대 무수익여신은 표29) 참조.

워크아웃 또는 구조조정대상 회사에 공여된 대부분의 여신은 변제시기가 재조정되고 재조정된 여신이 90일 초과 연체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0.12.31. 현재 무수익여신으로 분류되지 않음.

- 무수익여신에 대한 전략

당사의 무수익여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수익여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임. 당사는 자체 기업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하여 무수익여신과 관련된 리스크를 감소시킬 것임.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수익여신이 발생한다면, 각 지점에서 이를 모니터링할 의무가 있는 직원은 고객의 자산

에 관하여 실사를 개시하고, 지급청구 및 법적 조치 관련 통지를 하며 법적 조치를 준비함. 이와 동시에 당사는 채권매각, 대손상각, 고객의 현금흐름에 기초한 채권정상화 등의 조치를 진행함.

무수익여신의 해소를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연체된 채권 및 도산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상각 이전 단계까지 각 영업점에서의 관리, 지급청구서의 발송, 법적 절차의 착수, 경매절차의 개시 등을 수행하고 있음.

2011년 5월 금융감독원은 당사를 포함한 7개 은행과 사이에 2011년 6월말까지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 중에 있는 건설회사들에 대한 약 1조 2,000억원 상당의 무수익 은행 여신을 취득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함. 그 법인은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를 업무집행사원, 당사를 포함한 7개 은행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형태로 설립될 것으로 예상됨. 무수익 은행 여신은 시장 가격으로 그 법인에 매수되고, 그 매수자금은 그 법인에 무수익여신을 매도하는 은행에 의하여 전적으로 조달될 것임. 양해각서에 의하면, 당사는 그 법인에 148십억원을 출자하고, 109십억원을 대출할 것임.

여신유형별 대손충당금 현황, 대손충당금의 분석은 원문이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조.

- 여신유형별 대손충당금 현황: 첨부 표 30)

여신유형별 대손충당금 현황은 표30) 참조. 해당 비율은 여신 총액에 대한 각 유형별 여신의 비중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임.

당사의 대손충당금 총액은 2008.12.31 3,043십억원에서 2009.12.31. 3,341십억원으로 298십억원 또는 9.8%가 증가함. 2010년 동안 대손충당금은 906십억원, 또는 27.1% 증가하여2010.12.31 현재 4,247십억원임.

- 대손충당금 분석: 첨부 표 31)

해당 각 연도별 당사의 대손충당금 변동 현황은 표31) 참조

대손상각

당사는 가능한 한 대손상각채권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려고 노력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손상각 대상채권이 발생한다면 조기에 이를 상각할 것임. 대손상각을 위해서는, 추정손실 또는 회수의문으로 분류된 때로부터 조속한 시일 내에 대손상각신청을 하여야 하며, 여신관리부는 상각신청건에 대하여 영업감사부에 책임심의의 의뢰함. 책임심의 이후 여신관리부는 상각처리가 필요한 채권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게 대손인정을 신청한 후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경영진의 승인을 얻어야 함. 다만, 카드채권(및 US GAAP하에서의 무담보 가계대출)에 대하여는 연체기간에 따라 별도의 대손상각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대손상각된 대출이 당사의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된 이후에도, 당사는 자회사인 KB신용정보를 통한 방법 등으로 그 추심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

담보부대출이 연체된 경우, 당사는 통상적으로 연체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경우에 따라서는 그보다 긴 기간 이후) 법원에 담보물의 경매를 신청하여 담보물의 매각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함.

2008년 10월 금융감독원은 당사를 비롯한 한국의 은행들이 중소기업에게 신속하게 유동성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fast track program)”을 수립할 것을 요청함. 2011.12.31까지 시행될 당사의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fast track program)”에서, 당사는 해당 지원을 요청하는 중소기업차주들에게 신속한 여신심사 및 승인 후에 신규대출 또는 만기연장이나 기존대출과 관련한 금리조정 형식으로 유동성 지원을 제공할 것임.

2009년 3월, 금융위원회는 당사를 비롯한 한국의 은행들에게 단기미상환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계차주들을 위해 신용상담 및 신용회복 서비스를 포함한, “프리 워크아웃 프로그램(pre-workout

program)”을 수립할 것을 요청하였음. 상기 “프리 워크아웃 프로그램(pre-workout program)”은 2009년 4월에 개시되었고, 한국 정부가 프로그램의 시행기간을 연장하여 2013년 4월까지 운영될 예정임. 상기 프로그램 하에서, 30일 초과 90일 미만의 기간 동안 500백만원 미만의 대출금을 연체한 가계차주는 만기연장 및/또는 금리조정을 제공받을 예정임.

투자유가증권 포트폴리오

투자 정책

당사는 당사의 계산으로 다음 목적으로 원화표시증권과 그보다 적은 규모로 외화표시증권에 투자하고 이를 매매함.

- 당사 자산의 안정성 및 다양성을 유지
- 당사의 자금조달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예비 유동성의 적절한 원천을 유지
- 당사의 핵심 대출업무로부터의 수익을 보완

당사는 증권투자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거시경제 경향, 산업분석 및 신용평가를 포함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함.

기타 원문의 투자정책에 관한 부분은 자산운용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임. 다만, 원문은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조.

장부가치와 시장가치 및 만기분석: 첨부 표32) 및 표33)

투자유가증권의 장부가치 및 시장가치에 관하여는 표32), 채무증권의 만기분석 및 가중평균수익률에 관하여는 표33) 참조

리스크의 집중: 첨부 표 34)

리스크의 집중에 관하여는 표34) 참조.

자금조달

예금은 2008년 말, 2009년 말, 2010년 말 현재 자금조달 총액의 70.9%, 75.9% 및 81.0%를 각 차지함. 기타 원문의 자금조달에 관한 부분은 당사의 국내외 다양한 자금조달에 관한 내용임. 원문은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조.

예수부채: 첨부 표 35)

예수부채 평균잔액 및 평균금리에 관하여는 표35) 참조. 다만, 원문은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조.

양도성예금과 기타 정기에금: 첨부 표 36)

잔여만기별 양도성예금과 기타 정기에금에 관하여는 표36) 참조.

장기차입부채: 첨부 표 37)

계약만기별 장기차입부채에 관하여는 표37) 참조.

단기차입부채: 첨부 표 38)

단기차입부채에 관하여는 표38) 참조.

감독 및 규정

금융지주회사에 적용되는 주요 규정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소유제한, 업무 및 자회사의 편입,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대주주 또는 자회사간의 거래제한, 금융지주회사의 운영과 감독 등을 정한 금융지주회사법 및 관련규정은 금융감독원의 홈페이지상의 ‘금융감독법규’에 상세하게 공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조.

은행에 적용되는 주요 규정 : 첨부 표39)

자본적정성 및 총당금, 유동성, 개인차주 및 주요주주에 대한 금융 익스포져, 이자율,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주요경영사항의 공시, 대출에 대한 규제, 가계대출 관련 최근 규정(가계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율은 첨부 표 39) 참조), 부동산투자에 대한 규제, 다른 회사의 지분취득에 대한 제한, 은행 소유에 대한 제한, 예금자보호제도, 외환거래 관련 규제, 신탁업 등에 관한 내용으로서, 이와 관련하여서는 금융감독원의 홈페이지상의 ‘금융감독법규’에 상세하게 공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조.

기타 사업과 관련된 법령과 규정

자본시장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보험업법 등 금융관련 법령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금융감독원의 홈페이지상의 ‘금융감독법규’에 상세하게 공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조.

Item 4C. 조직구조 : 첨부 표 40)

원문의 조직구조에 관한 부분은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다만, 원문의 조직구조에 관한 부분은 자회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에 기공시되었으며, 첨부 표40) 참조.

Item 4D. 부동산, 시설, 설비 : 첨부 표41)

2010. 12. 31. 현재 당사가 보유한 모든 부동산의 순 장부가액은 1,243십억원임. 부동산, 시설, 설비에 관하여는 표41) 참조. 기타 원문은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조.

Item4.A. 미해결된 SEC 의견(Unresolved Staff Comment)

당사는 당사의 Form 20-F Annual Report와 관련하여 1934년 개정 증권거래법에 따라 미국 SEC로부터 받은 의견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사항은 없음.

Item 5. 영업 및 재무상태에 대한 검토 및 전망

Item 5A. 영업실적

개관

이하는 US GAAP에 의거하여 작성된 당사의 연결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서술된 것임. 다만, 부문별 분석은 K GAAP에 의거하여 작성되었고 K GAAP상의 요약재무정보는 당사의 K GAAP에 의거하여 작성된 연결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서술하였음.

당사는 국민은행과 그 자회사들의 보통주 소유자들이 모든 주식을 당사에 이전하고 대신 당사의 보통주를 수령하는 “포괄적 주식이전”에 따라 2008.9.29.에 설립됨. 여기에 포함된 주식이전일 이전 기간 동안의 연결재무제표는 국민은행과 그 자회사에 관한 것이며, 주식이전일 이후에는 당사와 국민은행을 포함한 당사의 자회사에 관한 것임.

국내경제의 동향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은 한국의 금융 및 경제상황에 의해 상당부분 영향을 받아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임.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상업은행, 신용카드회사, 소비자금융회사 및 기타 금융기관들은 가계대출부문(주택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포함)에 상당한 투자를 하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고, 그 결과 이 부문에 경쟁이 상당부분 심화되었음. 가계대출의 급격한 성장과 2008년 후반부터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해, 대손충당금, 무수익여신 및 대손상각이 증가하였음.

한국경제는 세계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세계경제의 진전사항에 영향을 받음. 2008년 9월 및 10월 주요 미국 및 유럽의 금융기관의 도산으로 촉발된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하여 한국경제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 세계 각국 정부는 위기에 빠진 금융기관에 직접적 또한 간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금융시장에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많은 정책수단을 이행하였음. 세계경제는 안정화 및 호전의 징후를 보이면서 그 악화 속도가 완화되었음에도, 국내 및 세계경제의 2010년 그 이후의 전반적인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함. 전세계의 많은 정부, 특히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나 남부 유럽의 기타 국가들은 재정 악화의 징후를 보이고 있으며 채무원리금 상환요건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또한, 이집트, 튀니지, 리비아 및 바레인을 포함한,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의 최근 정치적 불안정은 전세계적 금융 및 에너지 시장에서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초래하였음. 2011년 3월 일본 북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및 쓰나미와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해당 지역의 원자력발전소로부터의 방사능 유출은 이러한 세계 경제전망에 불확실성을 가중시켰음. 나아가, 전세계적으로 많은 정부가 “출구 전략”을 이행하는 과정을 고려하거나 이행하는 중인 상황임. 세계 경제의 높은 상호의존성을 고려할 때, 상기와 같은 진전사항은 한국경제 및 금융시장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또한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당사는 또한 당사의 부채 및 채무가 외국통화로 표시되고 구조화 상품을 포함한, 단기매매증권 및 투자유가증권을 보유한 결과로 세계 및 한국 금융시장의 부정적 변동 상황과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음.

한국과 세계경제의 변동적인 상황 및 취약점과 세계 금융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 석유 및 원자재의 가격변동, 금리 및 환율 변동, 높은 실업률, 낮은 소비심리, 인플레이션율의 상승, 재정 및 통화정책의 잠재적인 긴축운동과 북한과의 지속적인 긴장과 같은 요인 때문에, 2011년 한국 금융시장과 미래에 대한 전망은 불확실함.

국내 일반적인 경제동향에 대한 일반적 내용은 SEC에 공시된 원문을 참조하고, 본 요약번역본의 “Item 3D. 투자 리스크 요소” 부분을 참조.

신BIS 협약

금융감독원은 2008.1.1.부터 국내에서 신BIS협약을 시행하고 있음. 신BIS협약 시행으로 국민은행을 포함한 국내 금융기관들의 리스크측정방법에 큰 변화가 발생하였음. 1988년도 최초로 시행된 바젤 협약은 신용 및 시장리스크와 리스크의 측정기준이 되는 자본적정성 및 자산건전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신BIS협약은 이러한 리스크 측정 대상을 기존의 신용리스크 및 시장리스크 뿐만 아니라 운영리스크까지 포함하여 확대함.

국민은행의 2008년 내부등급법의 시행이 기존 방법(1988년도 최초로 시행된 바젤협약)을 적용하는 것에 비교하여 자본적정성비율 증가와 신용위험관련 필요자기자본의 감소를 가져왔으나, 신BIS 협약 하에서의 내부등급법으로 인하여 국민은행의 신용위험 필요자기자본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으며, 이 경우 국민은행은 자산건전성을 개선하거나 추가자본을 조달해야 할 수도 있음. 이에 관하여는 “Item 5B. 유동성 및 자본조달재원-재무상태-자본적정성” 참조.

2009년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더 높은 수준의 최소자본요건, 자본적정비율의 보완수단으로서의 레버리지 비율의 도입과 서로 다른 경기순환 단계별로 유동적인 자기자본요건 들을 포함하여 신 BIS협약을 보완하는 새로운 일련의 조치들을 발표함.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이사들(Governors) 및 국장들(Heads) 그룹은 2010년 9월 추가적인 자본보존 완충장치 및 경기 역행적 완충자본금, 단기 유동성비율 및 기타 보완적인 조치들을 포함한, 해당 신규 조치들에 관한 추가적인 세부사항을 발표하였음.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새로운 규제의 영향을 추가적으로 평가하고 관찰기간을 가진 후에 바젤 III라고 명명된 새로운 일련의 조치들을 2013년에 시행할 것으로 예상됨. 한국에서 바젤III의 시행시기 및 범위는 불확실하게 남아있음. 한국에서 바젤III의 시행은 당사를 포함한 한국 금융기관의 필요자기자본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음.

주가, 환율, 이자율의 변화

원문의 주가, 환율, 이자율의 변화 부분은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라며,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등재되어 있는 내용임.

중요 회계정책

원문 연결재무제표의 주석은 최근에 발표된 회계기준 등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 당사의 중요한 회계정책의 요약을 담고 있음.

신용손실충당금

당사는 매 결산기의 결산일을 기준으로 당사의 여신 포트폴리오(여신관련 난외계정 포함)에서 발생한 예상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수준의 신용손실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음.

당사는 여신 포트폴리오(여신관련 난외계정 포함)상 리스크의 특징을 평가하여 신용손실충당금의 수준을 결정하고, 그러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 과거 손실경험, 차주의 재무상태 및 현 경제상황 등의 요소를 고려하며, 기업대출, 가계대출, 여신관련 난외계정 등은 각각의 특징에 맞추어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하고 있음.

2010년 당사의 연결재무제표상 신용손실충당금(여신관련 난외계정에 대한 731십억원의 총당금 포함) 총액은 4,978십억원임. 2009년도에 당사의 회수가액을 차감한 순대손상각액은 2,311십억원이며, 3,568십억원의 신용손실충당금을 전입하였음.

증권 및 금융상품의 평가

원문의 증권 및 금융상품의 평가 부분은 US GAAP에 의한 것이고,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다만, 원문의 증권 및 금융상품의 평가 부분은 K GAAP에 따른 감사보고서상의 연결 재무상태표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중 유가증권과 파생상품부분(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당사는 채무증권 및 지분증권, 파생상품 및 벤처캐피탈 등에 대한 증권을 포함하여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있음. 금융상품은 각각 유형에 따라서 그 회계처리방법이 상이하므로, 각 금융상품이 당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기 위하여는 공정가치의 산정이 필요함.

당사는 2008.1.1.부터 재무회계기준서(“SFAS”) 제 157 호 “공정가치측정”(ASC 820-10)을 채택하였음. ASC 820-10 의 정의에 의하면, 공정가치는 측정일 당시 시장참여자 간의 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가격임.

각종 유가증권의 공정가치 결정에 관한 회계상 평가방법은 당사의 중요한 회계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바, 그 이유로는 유가증권의 공정가치 및 일시적이지 않은 손상차손은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로 인하여 기간별로 크게 변동할 수 있고, 특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 유가증권의 공정가치와 다른 날을 기준으로 한 유가증권의 공정가치 또는 해당 유가증권의 실제 매각대금 사이의 차

액은 당사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평가손실이나 처분손실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임.

영업권 및 기타 무형자산

당사는 (구)국민은행과 한국장기신용은행의 합병 및 KB투자증권 인수 및 2008년의 포괄적 주식 이전에 따른 연결자회사들의 비지배지분 취득과 관련하여 상당한 액수의 영업권을 인식하였음. 또한 당사는 2009년 5월 Khmer Union Bank(현재는 Kookmin Bank Cambodia PLC.로 사명이 변경됨)의 의결권의 51%를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영업권을 인식하였음. 나아가 주택은행과의 합병에 의하여 핵심 예금 및 신용카드와 관련된 무형자산을 취득하였음.

영업권은 합병 등으로 인하여 취득된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취득원가 부분인바, 당사는 이러한 영업권에 관하여 상각을 하지 않음. 대신 영업권의 손상징후가 보이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그 영업권을 평가하여 손상차손을 영업권의 장부가치에 반영함.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평가충당금과 불확실한 과세 항목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당사와 당사의 자회사들은 세금 부과 여부가 불확실하고 세법상 넓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래들을 수행하고 있음. 당사는 법령, 규제, 판례 기타 정보들을 검토하고,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무조정에 대하여 위험과 효익을 평가함. 당사의 평가 결과는 추정에 의한 것임. 당사와 자회사들은 정기적으로 과세관청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기존에 세무 신고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차이금액이 실현되는 기간에 회계 처리함. 2007. 1. 1.부터 불확실한 과세 항목에 대한 회계보고를 위해 당사는 ASC 740을 채택하였으며, 불확실한 과세 항목에 대한 적절한 조세충당금을 결정하는 일관된 기준을 설정하게 됨.

위 해석서는 2단계 접근방법을 채택함. 첫째, 과세관청의 조사에 대해 당사의 세무적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50%를 초과하는 과세항목에 대하여 세무 효익을 인식하고, 둘째, 인식한 세무 효익에 대하여 최종 결정 금액의 실현 가능성이 50%를 초과하는 최대금액으로 측정함. 신고한 금액과 인식한 금액의 차이는 법인세비용 또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조정하여 재무제표에 반영됨. 나아가, 불확실한 과세 항목과 관련된 이자 및 가산세는 법인세비용으로 분류함. 또한, ASC 740은,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한 불확실한 세무 효익의 상세내역을 포함하여 각 회계기간별로 불확실한 법인세 과세 항목에 대해 공시하도록 규정함.

당사는 2009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여 2010년 법인세차감전순손실을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ASC 740에 의거하여 2009년 15십억원의 법인세 수익이 2010년 379십억원의 법인세 비용으로 변경됨에 따라 2009년과 비교하여 2010년에 더 높은 법인세비용을 기록하였음. “영업실적-법인세비용-2009년과 2010년 비교”를 참조.

당사의 일부 자회사들로부터 발생한 손실로 인하여 당사는 2010.12.31. 현재 총 148십억원에 이르는 이월결손금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소멸될 것으로 전망됨. 당사는 조세 및 회계 목적상 금액의 일시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이월결손금을 당사가 장래에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을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음.

당사는 이연법인세자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조세수익을 인식하고, 장래 수익에 대한 내부 추산액에 기초하여, 위와 같은 이연법인세자산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평가손에 대한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음. 당사는 일정 기간 동안 당사의 총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에 순증감이 있는 경우, 당사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수익을 인식함. 2008년 2009년 및 2010년에 당사는, 당사의 장래 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위 이월결손금 및 토지자산재평가로부터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에 해당하는 평가손실에 대하여 충당금을 적립하였음.

당사는 불확실한 과세 항목의 인식 및 평가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평가손 충당금 적립이 당사의 “중요한 회계정책”이라고 판단함. 이는 (1) 위 인식 및 평가 그리고 충당금 적립은 특정 기간에 있어서 불확실한 과세 항목에 대한 최종 결과와 당사의 장래 수익성에 관한 가정에 따라 민감

하게 변동될 수 있고, (2) 각기 다른 날을 기준으로 한 불확실한 과세 항목의 최종 결과 및 장래 수익에 대한 추정들 사이의 중대한 차이는 각 기간별로 당사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인세비용 또는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임. 당사의 불확실한 과세 항목의 최종 결과 및 장래 수익성에 대한 당사의 가정은 신중한 판단을 필요로 하고 본질적으로 주관적인 것임.

영업실적

순이자이익

원문의 순이자이익 부분은 US GAAP에 의한 것이고,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다만, 원문의 순이자이익 부분은 K GAAP상의 감사보고서상의 연결손익계산서(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의 내용에 해당.

2010년과 2009년의 비교

이자 및 배당금수익 : 대출이자 및 대출수수료가 5.3% 감소함에 따라, 당사의 이자 및 배당금수익은 2009년 13,590십억원에서 2010년 13,036십억원으로 4.1% 감소하였음. 당사 이자부자산의 평균수익률이 2009년 5.61%에서 2010년 5.38%로 23 베이스 포인트 감소한 반면, 당사의 이자부자산의 평균잔액은 2009년에 242,156십억원과 비교하여 2010년 242,187십억원으로 상대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됨.

이자비용 : 예수부채와 장기차입부채에 관한 이자비용이 각각 13.6%와 15.8% 감소함에 따라, 이자비용은 2009년 8,231십억원에서 2010년 6,971십억원으로 15.3% 감소함. 주로 평균 장기차입부채가 감소하고, 이자부부채의 평균 비용률이 2009년 3.64%에서 2010년 3.13%로 51 베이스 포인트 감소함에 따라 당사의 이자부부채의 평균잔액은 2009년 226,341십억원에서 2010년 222,457십억원으로 1.7% 감소함.

순이자마진 : 순이자마진은 이자부자산 평균잔액에 대한 순이자이익의 비율을 의미함. 당사의 전반적인 순이자마진은 2009년 2.21%에서 2010년 2.50%로 증가함. 순이자이익은 2009년 5,359십억원에서 2010년 6,065십억원으로 13.2% 증가한 반면, 이자부자산의 평균잔액은 2009년 242,156십억원과 비교하여 2010년 242,187십억원으로 상대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됨.

2009년과 2008년의 비교

이자 및 배당금수익 : 대출이자 및 대출수수료가 14.6% 감소함에 따라, 당사의 이자 및 배당금수익은 2008년 15,737십억원에서 2009년 13,590십억원으로 13.6% 감소하였음. 주로 대출 및 투자유가증권의 증가로 인하여, 당사의 이자부자산의 평균잔액은 2008년에 225,102십억원에서 2009년 242,156십억원으로 7.6% 증가하였음.

이자비용 : 예수부채와 기타 차입부채에 관한 이자비용이 각각 13.7%와 32.4% 감소함에 따라, 이자비용은 2008년 9,360십억원에서 2009년 8,231십억원으로 12.1% 감소함. 주로 예수부채 및 장기차입부채가 증가한 결과로, 당사의 이자부부채의 평균잔액은 2008년 207,335십억원에서 2009년 226,341십억원으로 9.2% 증가함.

순이자마진 : 당사의 전반적인 순이자마진은 2008년 2.83%에서 2009년 2.21%로 감소함. 순이자이익은 2008년 6,377십억원에서 2009년 5,359십억원으로 16.0% 감소한 반면, 이자부자산의 평균잔액은 2008년 225,102십억원에서 2009년 242,156십억원으로 7.6% 증가함.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

당사의 대손충당금 전입액에 대한 정책에 관하여는 “Item 4B. 사업의 개황-자산과 부채-여신현황-충당금설정정책”을 참조.

2010년과 2009년의 비교

당사의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은 주로 당사의 기업대출에 관한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의 증가로 인하여, 2009년도 2,204십억원에서 2010년도 3,568십억원으로 61.9% 증가함.

당사의 상각채권 회수금액을 차감한 순대손상각액은 2009년 1,925십억원에서 2010년 2,311십억원으로 20.1% 증가하였음.

2009년과 2008년의 비교

당사의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은 당사의 여신관련 난외계정에 대한 신용손실충당금의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08년도 2,313십억원에서 2009년도 2,204십억원으로 4.7% 감소함.

당사의 상각채권 회수금액을 차감한 순대손상각액은 2008년 966십억원에서 2009년 1,925십억원으로 99.3% 증가하였음.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에 관한 정보에 관해서는 “중요한 회계정책-대손충당금” 및 “Item 4B. 사업의 개황-자산 및 부채-여신 포트폴리오-대손충당금 할당”을 참조하기 바람.

기업대출 : 당사는 특정 여신의 부실여부를 기준으로 기업대출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함. “Item 4B. 사업의 개황-자산 및 부채-여신 포트폴리오-대손충당금 할당”을 참조하기 바람. 당사는 또한 당사의 과거 대손경험에 비추어 부실대출로 분류되지 않은 기업대출에 관해서도 충당금을 설정함. 2010년 동안 기업대출 총액에 관한 부실대출 및 대손충당금 비율은 증가하였고, 부실대출에 관한 대손충당금 비율 또한 증가함. 2009년 동안 기업대출 총액에 관한 부실대출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총기업대출 및 부실대출에 관한 비율로 표시된 대손충당금 수준은 증가함.

가계대출 : 당사는 과거 대손, 연체와 인수 및 신용관리 정책의 변경사항에 기반하여 가계대출(신용카드채권을 포함)을 위한 충당금을 설정함. 2010년 동안 총가계대출에 관한 무수익가계대출의 비율은 당사의 가계대출이 증가되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당사의 무수익대출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함. 2009년 동안 총가계대출에 관한 무수익가계대출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됨.

원문의 대손충당금 부분은 US GAAP에 의한 것이고, 상세한 내용은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다만, 원문의 대손충당금 부분은 K GAAP에 따른 감사보고서상의 연결재무상태표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의 대손충당금 부분(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비이자수익

원문의 비이자수익 부분은 US GAAP에 의한 것이고,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다만, 원문의 비이자수익 부분은 K GAAP에 따른 감사보고서상의 연결손익계산서(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의 내용에 해당.

2010년과 2009년의 비교

순투자손실, 기타 비이자수익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당사의 비이자수익은 2009년도 3,513십억원에서 2010년도 3,363십억원으로 4.3% 감소함.

2009년과 2008년의 비교

기타 비이자수익, 순투자수익, 투자유가증권의 순이익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당사의 비이자수익은 2008년도 2,952십억원에서 2009년도 3,513십억원으로 19.0% 증가함.

비이자비용

원문의 비이자비용 부분은 US GAAP에 의한 것이고,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다만, 원문의 비이자비용 부분은 K GAAP에 따른 감사보고서상의 연결손익계산서(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의 내용에 해당.

2010년과 2009년의 비교

비이자비용은 2009년 5,742십억원에서 2010년 6,149십억원으로 7.1% 증가하였는바, 이러한 증가는 급여 및 복리후생비와 신용카드 수수료 증가에서 주로 기인함.

2009년과 2008년 비교

비이자비용은 2008년 5,321십억원에서 2009년 5,742십억원으로 7.9% 증가하였는바, 이러한 증가는 기타 비이자비용이 446십억원 증가함에 주로 기인함.

법인세비용

2010년과 2009년의 비교

법인세비용은 2009년 207십억원에서 2010년 304십억원으로 46.9% 증가함. 당사가 (2009년 법인세차감전순이익 926십억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여) 2010년 법인세차감전순손실 288십억원을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ASC 740에 의거하여 2009년 15십억원의 법인세 수익이 2010년 379십억원의 법인세 비용으로 증가됨에 따라 2009년과 비교하여 더 높은 법인세비용을 기록하였음.

2009년과 2008년 비교

법인세비용은 당사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2008년도와 비교하여 2009년에 감소하고, 당사에 적용되는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2008년 454십억원에서 2009년 207십억원으로 54.4% 감소함.

당기순이익

위의 결과로 당사의 당기순손실은 2010년도에 593십억원이며, 이와 비교하여 2008년도 및 2009년도 당기순이익은 각각 1,333십억원과 719십억원이었음.

K GAAP상의 주요 사업부문별 영업실적: 첨부 표42)

당사의 사업은 다음과 같은 4개의 주요 사업부문으로 구성됨: 가계금융, 신용카드, 기업금융, 자금시장. 사업부문별 영업실적에 대하여는 표42) 참조.

가계금융

원문의 해당 부분은 가계금융 부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바, 자세한 내용은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다만, 원문의 가계금융 부분은 K GAAP에 따른 감사보고서 주석 및 사업보고서 Ⅲ.재무에 관한 사항 1.다.(2)연결손익계산서(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2010년과 2009년의 비교

가계금융 부분의 세전 순이익은 2009년 1,164십억원에서 2009년 631십억원으로 45.8% 감소함. 가계금융 부분의 이자수익은 2009년 9,890십억원에서 2010년 9,018십억원으로 8.8% 감소함. 당사의

가장 크고 중요한 자금조달재원은 가계부문 예금이며, 당사 예금 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 가계여신에 관한 신용손실총당금 전입액은 2009년 264십억원에서 2010년 301십억원으로 14.0% 증가함. 비이자수익은 2009년 878십억원에서 2010년 718십억원으로 18.2% 감소함. 비이자비용은 2009년 1,890십억원에서 2010년 2,084십억원으로 10.3% 증가함.

2009 년과 2008 년의 비교

가계금융 부문의 세전 순이익은 2008년 1,719십억원에서 2009년 1,164십억원으로 32.3% 감소함. 가계금융 부문의 이자수익은 2008년 12,225십억원에서 2009년 9,890십억원으로 19.1% 감소함. 가계여신에 관한 신용손실총당금 전입액은 2008년 203십억원에서 2009년 264십억원으로 30.0% 증가함. 비이자수익은 2008년 996십억원에서 2009년 878십억원으로 11.8% 감소함. 비이자비용은 2008년 2,042십억원에서 2009년 1,890십억원으로 7.4% 감소함.

신용카드사업

원문의 해당 부분은 신용카드 사업 부문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바, 자세한 내용은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다만, 원문의 신용카드 사업 부분은 K GAAP에 따른 감사보고서 주석 및 사업보고서 Ⅲ.재무에 관한 사항 1.다.(2)연결손익계산서(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2010 년과 2009 년 비교

신용카드사업 부문의 세전 순이익은 2009년 626십억원에서 2010년 560십억원으로 10.5% 감소함. 신용카드사업 부문의 이자수익은 2009년 2,288십억원에서 2010년 2,230십억원으로 2.5% 감소함. 이자비용은 2009년 464십억원에서 2010년 429십억원으로 7.5% 감소함. 신용손실총당금 전입액은 2009년 266십억원에서 2010년 115십억원으로 56.8% 감소함. 비이자수익은 2009년 271십억원에서 2010년 321십억원으로 18.5% 증가함. 비이자비용은 2009년 1,203십억원에서 2010년 1,447십억원으로 20.3% 증가함.

2009 년과 2008 년 비교

신용카드사업 부문의 세전 순이익은 2008년 483십억원에서 2009년 626십억원으로 29.6% 증가함. 신용카드사업 부문의 이자수익은 2008년 2,115십억원에서 2009년 2,288십억원으로 8.2% 증가함. 이자비용은 2008년 615십억원에서 2009년 464십억원으로 24.6% 감소함. 신용손실총당금 전입액은 2008년 98십억원에서 2009년 266십억원으로 171.4% 증가함. 비이자수익은 2008년 306십억원에서 2009년 271십억원으로 11.4% 감소함. 비이자비용은 2008년 1,225십억원에서 2009년 1,203십억원으로 1.8% 감소함.

기업금융

원문의 해당 부분은 기업금융 부문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바, 자세한 내용은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다만, 원문의 기업금융부문은 K GAAP에 따른 감사보고서 주석 및 사업보고서 Ⅲ.재무에 관한 사항 1.다.(2)연결손익계산서(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2010년과 2009년 비교

기업금융부문의 세전 순손실은 2009년 49십억원에서 2010년 757십억원으로 1,444.9% 증가함. 기업금융부문의 이자수익은 2009년 8,379십억원에서 2010년 7,836십억원으로 6.5% 감소함. 이자비용은 2009년 6,557십억원에서 2010년 5,835십억원으로 11.0% 감소함. 기업금융부문의 신용손실총당금

전입액은 2009년 1,392십억원에서 2010년 2,202십억원으로 58.2% 증가함. 비이자수익은 2009년 739십억원에서 2010년 356십억원으로 51.8% 감소함. 비이자비용은 2009년 1,218십억원에서 2010년 912십억원으로 25.1% 감소함.

2009년과 2008년 비교

기업금융부문의 세전 순손실은 2008년 202십억원에서 2009년 49십억원으로 75.7% 감소함. 기업금융부문의 이자수익은 2008년 9,551십억원에서 2009년 8,379십억원으로 12.3% 감소함. 이자비용은 2008년 8,207십억원에서 2009년 6,557십억원으로 20.1% 감소함. 기업금융부문의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은 2008년 1,351십억원에서 2009년 1,392십억원으로 3.0% 증가함. 비이자수익은 2008년 1,244십억원에서 2009년 739십억원으로 40.6% 감소함. 비이자비용은 2008년 1,439십억원에서 2009년 1,218십억원으로 15.4% 감소함.

자금시장

원문의 해당부분은 자금시장 부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바, 자세한 내용은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다만, 원문의 자금시장 부분은 K GAAP에 따른 감사보고서 주석 및 사업보고서 Ⅲ.재무에 관한 사항 1.다.(2)연결손익계산서(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2010년과 2009년 비교

자금시장부문의 경우 2009년 114십억원 세전 순이익에서 2010년 82십억원 순손실로 변경됨. 이자수익은 2009년 3,846십억원에서 2010년 3,353십억원으로 12.8% 감소함. 이자비용은 2009년 3,702십억원에서 2010년 3,431십억원으로 7.3% 감소함. 비이자수익은 2009년 15,663십억원에서 2010년 7,694십억원으로 50.9% 감소함. 비이자비용은 2009년 15,640십억원에서 2010년 7,698십억원으로 50.8% 감소함.

2009년과 2008년 비교

자금시장부문의 세전 순이익은 2008년 118십억원에서 2009년 114십억원으로 3.4% 감소함. 이자수익은 2008년 4,353십억원에서 2009년 3,846십억원으로 11.6% 감소함. 이자비용은 2008년 4,205십억원에서 2009년 3,702십억원으로 12.0% 감소함. 비이자수익은 2008년 30,707십억원에서 2009년 15,663십억원으로 49.0% 감소함. 비이자비용은 2008년 30,724십억원에서 2009년 15,640십억원으로 49.1% 감소함.

기타 사업

원문의 해당부분은 기타 사업 부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바, 자세한 내용은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다만, 원문의 기타 부분은 K GAAP에 따른 감사보고서 주석 및 사업보고서 Ⅲ.재무에 관한 사항 1.다.(2)연결손익계산서(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2010년과 2009년 비교

기타 부문의 세전 순손실은 2009년 608십억원에서 2010년 224십억원으로 63.2% 감소함. 이자수익은 2009년 136십억원에서 2010년 1,067십억원으로 684.6% 증가하였음. 이자비용은 2009년 593십억원에서 2010년 518십억원으로 12.6% 감소함. 비이자수익은 2009년 2,727십억원으로부터 2010년 3,061십억원으로 12.2% 증가함. 비이자비용은 2009년 2,554십억원으로부터 2010년 3,764십억원으로 47.4% 증가함.

2009년과 2008년 비교

기타 부문의 세전 순이익은 2008년 763십억원의 순이익에서 2009년 608십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함. 이자수익은 2008년 1,385십억원에서 2009년 136십억원으로 90.2% 감소하였음. 이자비용은 2008년 564십억원에서 2009년 593십억원으로 5.1% 증가함. 비이자수익은 2008년 2,960십억원으로부터 2009년 2,727십억원으로 7.9% 감소함. 비이자비용은 2008년 2,855십억원으로부터 2009년 2,554십억원으로 10.5% 감소함.

Item 5B. 유동성 및 자본조달재원

재무상태

자산

원문의 자산 부분은 US GAAP에 의한 것이고,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다만, 원문의 자산 부분은 사업보고서 III.재무에 관한 사항, XI.재무제표 등(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2010년과 2009년 비교

당사의 자산은 2009.12.31 현재 253,855십억원에서 2010.12.31 현재 251,752십억원으로 0.8% 감소함. 사용제한예금은 2009.12.31 현재 6,050십억원에서 2010.12.31 현재 3,360십억원으로 44.5% 감소함. 건설자금대출은 2009.12.31 현재 8,097십억원에서 2010.12.31 현재 6,422십억원으로 20.7% 감소함. 당사의 대출금(대손충당금은 차감)은 2009.12.31 현재 193,454십억원에서 2010.12.31 현재 192,947십억원으로 0.3% 감소함. 트레이딩자산은 2009.12.31 현재 7,721십억원에서 2010.12.31 현재 6,085십억원으로 21.2% 감소하였음. 현금 및 현금등가물은 2009.12.31 현재 2,696십억원에서 2010.12.31 현재 3,867십억원으로 43.4% 증가함.

2009년과 2008년 비교

당사의 자산은 2008.12.31 현재 258,327십억원에서 2009.12.31 현재 253,855십억원으로 1.7% 감소함. 당사의 대출금(대손충당금을 차감)은 2008.12.31 현재 197,067십억원에서 2009.12.31 현재 193,454십억원으로 1.8% 감소함. 기업자금대출은 2008.12.31 현재 88,143십억원에서 2009.12.31 현재 84,886십억원으로 3.7% 감소함. 트레이딩자산은 2008.12.31 현재 13,095십억원에서 2009.12.31 현재 7,721십억원으로 41.0% 감소하였고, 투자자산은 2008.12.31 현재 29,209십억원에서 2009.12.31 현재 33,245십억원으로 13.8% 증가함. 사용제한예금은 2008.12.31 현재 4,794십억원에서 2009.12.31 현재 6,050십억원으로 26.2% 증가함.

부채와 자본

원문의 부채와 자본 부분은 US GAAP에 의한 것이고,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다만, 원문의 부채와 자본 부분은 사업보고서 III.재무에 관한 사항, XI.재무제표 등(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2010년과 2009년 비교

당사의 부채 총액은 2009.12.31 현재 236,279십억원에서 2010.12.31 현재 234,716십억원으로 0.7% 감소함. 장기차입부채는 2009.12.31 현재 39,570십억원에서 2010.12.31 현재 30,080십억원으로 24.0% 감소함. 담보부차입부채는 2009.12.31 현재 4,670십억원에서 2010.12.31 현재 2,651십억원으로

로 43.2% 감소함. 이자부예수부채는 2009.12.31 현재 166,079십억원에서 2010.12.31 현재 176,846십
원으로 6.5% 증가함.

당사의 자본 총액은 2009.12.31. 현재 17,576십억원에서 2010.12.31. 현재 17,036십억원으로 3.1% 감
소함.

2009년과 2008년 비교

당사의 부채 총액은 2008.12.31 현재 242,732십억원에서 2009.12.31 현재 236,279십억원으로 2.7%
감소함. 장기차입부채는 2008.12.31 현재 45,148십억원에서 2009.12.31 현재 39,570십억원으로
12.4% 감소함. 트레이딩부채는 2008.12.31 현재 8,191십억원에서 2009.12.31 현재 4,246십억원으로
48.2% 감소함. 기타 차입부채는 2008.12.31 현재 10,527십억원에서 2009.12.31 현재 8,176십억원으
로 22.3% 감소함. 콜머니는 2008.12.31 현재 3,444십억원에서 2009.12.31 현재 1,365십억원으로
60.4% 감소함. 이자부예수부채는 2008.12.31 현재 155,263십억원에서 2009.12.31 현재 166,079십억
원으로 7.0% 증가함.

당사의 자본 총액은 2008.12.31. 현재 15,595십억원에서 2009.12.31. 현재 17,576십억원으로 12.7%
증가함.

유동성

당사의 주요 자금조달원(예금, 장기차입부채, 한국은행 차입부채, 기타 단기차입부채, 담보부차입
부채, 콜머니를 포함)은 고객 예금부문이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고객예금액은 2008.12.31., 2009.12.31., 2010.12.31. 현재 각 158,701십억원, 169,183십억원, 179,928십억
원으로 당사의 조달자금 총액 중 각 70.9%, 75.9%, 81.0%를 차지하였음. 당사는 고객예금을 유동성
확보에 이용하는 등 당사의 영업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음. 당사는 현금 및 현금등가물, 대출상환액,
단기매대증권을 통하여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유동성확보를 위한 콜머니, 한국은행 차입부채,
기타 단기차입부채 등의 총계는 2008.12.31., 2009.12.31., 2010.12.31. 현재 각 13,971십억원, 9,541십
억원, 9,380십억원이고, 이는 당사 총 자금조달액 중 6.3%, 4.3%, 4.2%를 각 차지함. 또한 위 차입
부채들의 만기는 1년 이하로 구성되어 있음. 당사의 자금조달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Item 4B. 사
업의 개황-자금조달” 부분 참조.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지주회사와 은행들이 원화 및 외화 유동성비율(유동성부채 대비 유동성자
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요구함. “Item 4B. 사업의 개황-감독 및 규정-금
용지주회사에 적용되는 주요 규정”과 “Item 4B. 사업의 개황-감독 및 규정-은행에 적용되는 주요
규정” 참조. 당사는 대출, 유가증권매매 및 투자, 유가증권매매 포지션 관리 등에 필요한 자금조
달과 관련하여 유동성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으며, 예금인출 및 차입부채의 만기도래로 인하여 유
동성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 당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채의 만기상환 및 투자자금의 완전조
달을 유지하는 것을 유동성관리의 목표로 하고 있음. 당사의 유동성리스크 관리에 관하여는 “Item
11. 시장리스크에 대한 계량적·비계량적 정보-유동성리스크관리” 부분 참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모든 사업은 당사의 자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짐. 따라서 당사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자회사로부터의 배당, 직접 차입, 사채 및 지분증권의 발행에 의존함. 2008년 9월
금융지주회사로 설립된 이후, 당사는 당사의 자회사들로부터 2009년도에 총 98십억원의 배당금을
수령하였고, 2010년도에 총 95십억원의 배당금을 수령하였음. “Item 3D. 투자 리스크 요소 — 당사
의 금융지주회사구조와 전략 관련 리스크” 부분 참조.

계약상 현금지급 의무: 첨부 표43)

2010.12.31. 현재 당사의 계약상 현금지급 의무에 관하여는 표43) 참조.

약정사항 및 보증부채: 첨부 표44)

2010.12.31. 현재 약정사항 및 보증부채는 표44) 참조. 보증부채와 달리, 약정사항은 연결재무제표
에 반영되지 않음. 보증부채는 발생 당시의 공정가액으로 기록되고, 그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됨.

자본적정성: 첨부 표 45)

아래의 수치는 당사가 국내감독기관에의 보고목적으로 K GAAP에 의거하여 작성한 것임. 국민은행은 2008년부터 한국에서 시행된 2004년도 BIS의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요구하고 있는 신BIS협약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자본적정성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위 기준에 의하면 국민은행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최소 8% 이상으로 유지해야만 함. “Item 4B. 사업의 개황-감독 및 규정-은행에 적용되는 주요규정” 부분 참조.

국민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2009.12.31. 14.04%와 비교하여, 2010.12.31 현재 13.44%였음(상기 비율 모두, 바젤 II에 따라 산정됨). 자기자본비율의 감소는 주로 더 이상 보완자본(Tier II)으로 적합하지 않은 후순위채의 증가에 따름.

국민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2008.12.31 13.18%, 2009.12.31 현재 14.04%(상기 비율 모두 신BIS협약에 의해 산정됨)임. 이러한 자기자본의 증가는 국민은행의 1조원 상당의 후순위채 및 1조원 상당의 신종자본증권(hybrid Tier I)의 발행과 국민은행이 새로이 발행한 보통주를 당사가 매입하여 발생한 3천억원 상당의 납입자본금의 증가에 기인함.

2008.12.31., 2009.12.31., 2010.12.31. 현재 국민은행의 자본과 자본적정성에 관한 사항은 표45) 참조.

2009년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더 높은 수준의 최소자본요건, 자본적정비율의 보완수단으로서의 레버리지 비율의 도입과 경기순환 단계별로 유동적인 자기자본요건 등을 포함하여 신BIS협약을 보완하는 새로운 일련의 조치들을 발표함.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이사들(Governors) 및 국장들(Heads) 그룹은 2010년 9월 추가적인 자본보존 완충장치 및 경기 역행적 완충자본금, 단기유동성 비율 및 기타 보완적인 조치들을 포함한, 해당 신규 조치들에 관한 추가적인 세부사항을 발표하였음.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새로운 규제의 영향을 추가적으로 평가하고 관찰기관을 거친 후에 바젤 III라고 명명된 새로운 일련의 조치들을 2013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상됨. 한국에서 바젤 III의 시행시기 및 범위는 불확실하게 남아있음. 한국에서 해당 조치의 시행은 당사를 포함한 한국 금융기관의 필요자기자본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음.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금융위원회의 자본적정성기준 하에서 8% 이상의 연결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여야 함.

최근 회계 관련 공표

- 한정적 특정목적실체의 제거 및 변동지분실체를 위한 연결모델의 변경
- 공정가치측정에 관한 추가적인 공시
- 내재 신용파생상품 관련 범위의 예외
- 대출이 단일자산으로 회계처리된 공동기금의 일부인 경우 대출조건조정 효과
- 금융채권의 신용건전성에 관한 공시의 강화

상세한 내용은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조.

K GAAP상의 요약재무정보

아래에서 요약하는 연결재무제표와 기타 다른 자료는 K GAAP에 의거하여 작성된 당사의 연결재무제표에서 발췌된 것임.

K GAAP상의 연결손익계산서

원문의 연결손익계산서 부분은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다만, 원문의 연결손익계산서 부분은 사업보고서 XI.재무제표 1.나. 연결손익계산서와 K GAAP상의 감사보고서 중 연결손익계산서(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단, 당사의 2008년 손익항목은 한국기업회계기준상 국민은행의 2008.1.1.부터 2008.6.30.까지의 수치(연결 당기순이익 1,263십억원)와 당사의 2008.9.29.부터 2008.12.31.까지의 수치(연결 당기순이익 610십억원)를 단순 합산한 금액임. 당사의 수치에는 회사 설립시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통해 취득하는 국민은행 및 종속회사의 주식 가액을 2008.6.30. 기준 연결재무제표상 순자산가액으로 하였기 때문에 국민은행 및 종속회사의 2008.7.1.부터 2008.9.28.까지의 결산 결과가 포함됨.

K GAAP상의 연결재무상태표

원문의 연결재무상태표 부분은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다만, 원문의 연결재무상태표 부분은 사업보고서 XI.재무제표 1.가. 연결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와 K GAAP상의 감사보고서 중 연결재무상태표(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K GAAP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상의 수익성지표 및 기타 자료

원문의 수익성지표 및 기타 자료 부분은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다만, 원문의 수익성지표 및 기타 자료 부분은 K GAAP상의 감사보고서 중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K GAAP상의 자기자본비율: 첨부 표46) 참조

K GAAP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상의 자산건전성비율: 첨부 표47) 참조

K GAAP으로의 조정: 첨부 표48) 및 표49)

원문 연결재무제표는 주석1에서 요약되어 있는 회계원리와 회계정책(K GAAP과는 조금씩 차이를 보임)에 의거하여 작성됨. 원문에서는 연결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K GAAP과 비교하여 요약하고 있는바, 이에 관하여는 표48) 참조.

원문에서는 US GAAP과 K GAAP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연결당기순이익과 자본 총액에의 중요한 조정을 요약하여 정리하고 있음. 다만 이하에서 서술하는 문단에 부여된 번호는 첨부 표48)의 각 항목에 대한 번호에 대응함.

1. 당사는 대출의 유효이자율로 할인된 예상현금흐름의 현재가치, 담보물의 공정가치 또는 시장가격 등을 근거로 US GAAP상의 동질적이지 아니한 부실대출 포트폴리오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함. 소규모의 동종 부실대출 포트폴리오 및 가계대출에 대하여 그 실적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함. K GAAP상 대손충당금은 2004년도 이전까지는 금융감독원 감독규정에 의한 여신종류별 건전성 분류 결과에 따라 결정된 최저적립비율 이상을 적립하였으나, 2004년도 기말부터는 과거경험손실에 근거한 대손충당금과 금융감독원 감독규정에 따라 설정한 대손충당금 중 큰 금액을 적립함. K GAAP과 US GAAP에서 사용되는 과거경험손실율의 차이는 방법론과 업계관행의 차이로부터 발생됨. K GAAP상 여신종류별 건전성 분류 결과에 따른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에 대하여는 첨부 표49) 참조.
2. US GAAP상에서는 대출실행과 관련된 특정 인건비 및 기타 비용은 대출의 잔여기간에 걸쳐서 수익조정의 방법으로 이연되고 상각됨. K GAAP상에서는 일부 대출 관련 수수료 및 비용은 대출기간 동안 이연 및 상각이 요구됨.
3. US GAAP상의 연결재무제표에서는 US GAAP 기준으로 작성된 지분법 피투자회사의 영업성과에 대하여 당사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포함하여야 함.

4. US GAAP상에서는 지분증권의 취득원가 대비 일시적이지 않은 공정가치의 하락은 손상 처리를 하며, 이는 손익에 반영됨. K GAAP상에서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 유가증권의 회수가능한 가액이 동 증권들의 상각 후 취득원가(단, 주식의 경우에는 그 취득원가)보다 낮으면서 위 유가증권의 가치하락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동 증권들의 장부가액은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되며, 회수가능가액을 초과하는 상각 후 취득원가와 전기에 인식한 손상차손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상차손으로 반영됨. 또한 US GAAP상 헷지회계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파생상품들은 헷지대상이 되는 익스포저와 관련되는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어야만 함. 각 파생상품은 공식적으로 헷지수단으로 지정되어야만 하며, 리스크관리 목표와 헷지전략, 헷지수단과 대상 및 리스크익스포저의 정의, 그리고 헷지효과에 대한 사전, 사후 평가에 대한 문서화가 요구됨. K GAAP상에서는 헷지회계의 적용을 받기 위한 기준이 US GAAP에 비하여 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5. US GAAP상의 채권양도는 양도인의 통제포기와 관련된 기준이 충족되면 매각으로 인식되었음. K GAAP상의 자산유동화와 관련된 매각의 부외거래처리의 기준은 US GAAP상의 그것과 다름.
6. 종전에 당사는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특정한 고정자산을 재평가하였고, 그러한 기간 동안 적용되는 K GAAP에 따라 재평가 증가분을 자본잉여금에 전입함. 위 재평가의 결과로서 특정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재평가 증가분을 반영하여 조정함. 2008년 자산재평가가 허용되는 것으로 K GAAP이 변경되었고, 당사는 토지를 재평가함. 재평가증가분은 새로운 K GAAP에 의거,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반영함. US GAAP상에서는 이러한 재평가가 허용되지 않으며,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에 근거하여야 함.
7. K GAAP에 따르면, 한국장기신용은행의 인수대금은 합병기일의 당사의 보통주 가격을 근거로 산정함. 이 거래는 K GAAP상의 부의 영업권이 발생하여 자본으로 인식됨. US GAAP 상으로는 영업권이 인식됨.
8. K GAAP상에서는 부실채권채무재조정을 통하여 조정된 대출은 조정 전 장부가액과 조정된 현가 중 적은 금액으로 인식됨. 만약 현재가치로 인식된다면, 관련 현재가치 할인차금은 조정된 대출의 만기의 잔여기간 동안 이익으로 인식됨. US GAAP상에서는 부실채권채무재조정을 통하여 조정된 대출은 부실대출채권으로 처리되며, 관련된 대손충당금은 기대미래현금흐름의 현가 및 담보물의 공정가치나 시장가격에 근거하여 설정됨.
9. US GAAP상 매도가능증권의 외화환산으로 인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은 누적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어야 하나, K GAAP상에는 손익으로 인식됨.
10. K GAAP상에서 주택은행의 인수대금은 합병기일의 주가에 근거하여 측정되며, US GAAP상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서 합병 발표일 2일 전부터 2일 후까지의 평균종가에 근거하여 계산됨. US GAAP을 적용하면 부의 영업권이 발생되고, K GAAP상에서는 영업권이 발생됨. K GAAP상에서 자회사의 단계적 취득을 위한 인수대금은 합병기일의 자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에 근거하여 계산함. 따라서 국민신용카드의 인수대금은 국민신용카드의 순자산 장부가액에 근거하여 계산됨. US GAAP상의 인수대금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서 합병 발표일의 2일 전부터 2일 후까지의 평균종가에 근거하여 계산됨. US GAAP상에서는 국민신용카드의 순자산 공정가치보다 초과 지급된 인수대금만큼 영업권으로 인식되나, K GAAP상에서는 순자산 장부가액과 합병기일 당시 지급된 인수대금이 동일하므로 영업권이 인식되지 않음.
11. K GAAP상에서 수익증권은 단기매매증권 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인식됨.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된 수익증권의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수익증권 매도시 관련된 거래이익이나 거래손실은 당기손익에 반영함. US GAAP상에서는 사모단독펀드인 수익증권은 연결회계로 처리되어, 펀드의 순이익, 순손실을 연도별로 당사의 당기순이익에 반영됨. (US GAAP상과 K GAAP상에서의) 자본 총액에서의 차이는 대부분 매도가능증권으로 처리되는 수익증권에 대한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과 관련이 있음.

12. K GAAP에 따라 영업권은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내용연수 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됨. US GAAP에 의하면 영업권은 상각되지 않고, 연단위로 손상차손 인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평가함.

13. 이 조정 항목은 개별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은 기타 항목들의 영향을 반영함.

조정에 따른 세금효과와 관련하여 US GAAP 상에서는 한계 세율을 적용하여 조정사항에 대한 법인세 효과를 인식함. US GAAP 상에서는 관련되는 이의제기나 소송절차를 포함하여 과세관청의 조사에 대해 당사의 세무적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50%를 초과하는 과세항목에 대하여 세무 효익을 인식하고, 인식한 세무 효익에 대하여 최종 결정 금액의 실현 가능성이 50%를 초과하는 최대금액으로 측정함. 신고한 금액과 인식한 금액의 차이는 법인세비용 또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조정하여 재무제표에 반영됨. 나아가, 불확실한 과세 항목과 관련된 이자 및 가산세는 법인세비용으로 분류함. K GAAP에서는 불확실한 과세 항목의 인식 및 측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으며, 이에 따라 실제로 불확실한 과세 항목이 실현될 때 법인세비용에서 조정하여 인식함.

Item 5C. 연구 및 개발, 특허 및 라이선스 : 해당사항 없음.

Item 5D. 시장동향에 관한 정보

이에 관하여는 “Item 5A. 영업실적”과 “Item 5B. 유동성 및 자본조달재원” 부분 참조.

Item 5E. 난외계정

이에 관하여는 “Item 5B. 유동성 및 자본조달재원” 부분 참조.

Item 5F. 계약상 의무

“Item 5B. 유동성 및 자본조달재원-재무상태-계약상 현금지급 의무” 부분 참조.

Item 6. 이사, 임원 및 직원

Item 6A. 이사 및 임원

이사회

당사의 이사회는 현재 두 명의 사내이사, 두 명의 기타비상무이사 및 여덟 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는 당사의 경영에 관한 궁극적인 책임을 부담함. 기타 원문의 이사회 부분은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다만, 원문의 이사회 부분은 사업보고서 VI.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1.이사회에 관한 사항(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사내이사

어윤대는 현재 당사의 회장 겸 최고경영자임. 임영록은 당사의 사장(president)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원문의 “Item 6A. 이사 및 임원” 참조. 다만, 원문의 사내이사 부분은 사업보고서 VIII.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가.임원의 현황(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기타비상무이사

당사의 현재 기타비상무이사는 민병덕, Vaughn Richtor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원문의 “Item 6A. 이사 및 임원” 참조. 다만, 원문의 사내이사 부분은 사업보고서 VIII.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가.임원의 현황(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사외이사

당사의 현재 사외이사는 이경재, 배재욱, 김영진, 이종천, 함상문, 고승희, 이영남, 조재묵 등 8명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원문의 “Item 6A. 이사 및 임원” 참조. 다만, 원문의 사외이사 부분은 사업보고서 VIII.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가.임원의 현황(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집행임원

당사의 집행임원은 박동창, 윤종규, 김왕기, 유석흥, 이민호, 양원근, 강용희, 남훈 등 8명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원문의 “Item 6A. 이사 및 임원” 참조. 다만, 원문의 임원 부분은 사업보고서 VIII.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가.임원의 현황(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Item 6B. 보수

2010.12.31. 현재까지 당사가 회장(대표이사), 대표이사가 아닌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 및 집행임원에게 지급한 총 보수 및 현물급여는 3,757백만원이며, 당사는 2010.12.31. 현재까지 당사의 회장(대표이사), 대표이사가 아닌 사내이사 및 집행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104백만원을 적립하였음.

2008년 9월의 주식이전에 의한 당사의 설립 이래로, 당사는 이사들 및 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바 없음. 당사의 설립 이전 국민은행은 은행장(대표이사), 이사 및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고, 포괄적인 주식이전에 의하여 그러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당사의 보통주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변환되었음.

국민은행은 최고경영자, 기타 이사들, 집행임원들과 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함. 당사가 설립된 2008년 9월 포괄적 주식이전에 따라,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은 당사의 보통주에 관한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전환됨. “Item 6E. 주식 소유-주식매수선택권”을 참조하기 바람. 부여된 모든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는 경우, 당사는 행사가격과 행사당일 당사 보통주의 시장가격간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함. 일반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일로부터 최소 2년간 지속적으로 근무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여 옵션 행사에 대한 제한이 소멸하여 권리가 확정되는 경우, 부여일로부터 3년에서 최대 8년까지 행사 가능함.

국민은행은 2004.11.1. 700,000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전 대표이사 겸 최고경영자인 강정원에게 부여하였음. 그 중 610,000주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권리가 2007.11.1. 확정적으로 발생하였으나, 90,000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은 발생되지 않고 만료됨. 2010년 12월 10일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610,000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취소됨

2010년 당사는 당사의 주식매수선택권제도에 따라 교부된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식보상비용 10,385백만원의 환입을 인식함. 이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위해서는, 당사의 연결재무제표 주석 28을 참조하기 바람.

2008년 당사는 주식관련 보상계획을 수립함. 이 계획에 따라서, 당사는 당사의 이사, 집행임원 등과 성과연동 주식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계약에 의하면 당사는 특정 기간 동안 사전에 정해진 성과 목표에 따른 장기 인센티브로서 당사의 보통주(또는 부여 시점의 주식의 시장가격에 따른 금액)을 부여할 수 있음. 이에 관하여 “Item 6E. 주식 소유—성과연동 주식 계약” 참조. 2010년 당사는 성과연동 주식 계약에 따른 지급을 위한 보상비용으로서 15,185백만원을 인식하였음.

기타 원문의 주식매수선택권 부분은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다만, 원문의 주식매수선택권 부분은 사

업보고서 VIII.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2.나.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Item 6C. 이사회의 활동

위 부분은 “Item 6A. 이사 및 임원” 부분 참조.

이사회내 소위원회

이사회내 소위원회에는 감사위원회, 이사회운영위원회, 경영전략위원회, 그룹리스크관리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등이 있음. 기타 원문의 이사회내 소위원회 부분은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다만, 원문의 이사회내의 위원회 부분은 사업보고서 VI.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1.다. 이사회내 위원회(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Item 6D. 직원

2010.12.31. 현재 KB금융지주의 상근직원은 155명(10명의 집행임원 제외), 국민은행의 상근직원은 16,615명(임원 제외), 기타 자회사의 상근직원은 1,113명(집행임원 제외)임. 기타 원문의 직원 부분은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다만, 원문의 직원 부분은 사업보고서 VIII.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나.직원의 현황(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Item 6E. 주식 소유

보통주

2011.3.31. 현재 당사의 이사들과 임원들이 소유하는 당사의 보통주 총수는 17,330주이며, 이는 당사의 보통주 발행주식 총수의 약 0.05%에 해당함. 상기의 어떠한 임원도 해당일자를 기준으로 당사의 보통주 유통주식 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주식매수선택권

K GAAP상, 2011.4.30. 현재 국민은행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된 주식수는 2,189,609주,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된 주식수는 38,330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가능한 주식수는 2,151,279주임. 기타 원문의 주식매수선택권 부분은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다만, 원문의 주식매수선택권 부분은 사업보고서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2.나.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성과연동 주식 계약

2009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당사의 보통주 250,000주를 상한(혹은 지급시의 시가에 의하여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하여 이사와 회사 사이에 체결한 성과연동 주식 계약에서 정한 성과목표에 따라서 2008.9.29.에서 2011.9.28. 사이에 이사들에게 이사들의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장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안건을 의결함. 2009년 6월 당사는 전 사외이사 정기영에게 당사의 보통주 733주의 시가에 상당하는 24백만원을 지급하였음. 2010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당사의 보통주 250,000주를 상한(혹은 지급시의 시가에 의하여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하여 이사와 회사 사이에 체결한 성과연동 주식 계약에서 정한 성과목표에 따라서 2009.9.29.에서 2012.9.28. 사이에 이사들에게 이사들의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장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안건을 의결함. 2010년 4월 당사는 전 사외이사 조담 및 변보경에게 당사의 보통주 3,563주의 시가에 상당하는 총 184백만원을 지급하였음. 2010년 11월, 당사는 당사 보통주 4,742주의 금전적 가치에 상응하는 총 244백만원을 당사의

전 사외이사인 김치중 및 강찬수에게 지급하였음. 향후에 이사의 퇴임시 해당 주식이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이사들의 성과를 기준으로 지급할 예정임.

당사는 이사가 아닌 일부 임직원과도 성과 목표에 따른 성과연동 주식 계약을 체결하였음. 당사는 성과연동 주식 계약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실제 성과의 지급은 일반적으로 지급시의 시가에 의하여 주식에 상응하는 금액의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함.

Item 7. 5%이상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Item 7A. 주요 주주

2010.12.31. 현재 당사의 5%이상 주주는 Citibank N.A., ING Bank N.V.임. 기타 원문의 5%이상 주주 부분은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다만, 원문의 5%이상 주주 부분은 사업보고서 VII.주주에 관한 사항 3.가.5%이상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Item 7B.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당사는 2008년 말, 2009년 말 및 2010년 말 현재 당사 및 국민은행의 집행임원 및 이사들에 대하여 2,581백만원, 3,818백만원 및 7,176백만원의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음. 당사는 또한 상기 해당 일자에 당사의 이사들이나 집행임원이 이사나 집행임원으로 겸직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한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음. 당사 연결재무제표의 주석 33을 참조하기 바람. 상기의 모든 대출은 금리 및 담보를 포함하여, 다른 대출 차주와의 비교 가능한 거래에서 당시 일반적인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통상적 사업과정에서 이루어졌으며, 통상적인 회수 위험을 초과하거나 기타 불리한 특징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음.

당사의 이사들이나 임원들 중 어느 누구도 당사가 실시한 거래 중에 그 성질이나 조건이 특이하거나 올해나 직전연도 중에 한 거래 중에 당사의 사업에 중요하거나 이전연도에 실시되었으나 현재 어떠한 점에서 미지급되거나 이행되지 않은 거래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있지 않았음.

2002년 12월, 당사는 주택은행과 ING Bank N.V. 사이의 과거 투자계약을 대체하는 ING Bank N.V.와의 전략적 제휴계약을 공식적으로 연장함. 당사의 이사회는 2003년 8월, ING Bank N.V.와의 변경 및 재진술된 전략적 제휴계약을 승인하고 추인함.

당사는 2003년 8월 ING Insurance International B.V. 및 ING생명보험과 합작투자계약을 변경함. 해당 계약은 ING생명보험에 관한 당사와 ING Insurance International B.V. 간의 조건을 규정함. 당사는 2008년 12월 ING생명보험에 관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잔여지분을 매각하였고, 해당 합작투자계약도 종료됨.

당사는 2003년 8월, ING Insurance International B.V.와 KB자산운용회사와의 합작투자계약에서 특정 조항들을 수정하였음.

당사는 2004년 4월 한일생명보험의 취득한 자산과 부채를 출연하여 당사 100% 소유 자회사인 KB생명보험주식회사를 설립함.

국민은행과 KB자산운용은 2008년 4월 포괄적 주식이전을 통해 KB금융그룹을 설립하기 위한 계획과 관련하여 ING Bank N.V. 및 ING Insurance International B.V.와 계약을 체결함.

당사가 설립된 한국법에 따른 “포괄적 주식이전”에 관련해서는, KB자산운용에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ING Insurance International B.V.는 그 모든 주식을 2008년 9월 당사에 이 전하였고, 그 대가로 주식이전비율에 따라 당사의 보통주 1,290,815주를 수령함. 기타 원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부분은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Item 7C. 전문가 및 자문인의 이해관계 : 해당사항 없음.

Item 8. 재무정보

Item 8A. 연결재무제표 및 기타 재무정보

“Item 18. 재무제표” 참조.

법적 분쟁

아래에서 요약하는 법적 분쟁을 제외하고서는 당사와 당사의 자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적 분쟁은 없음.

2006년 8월, 한국 정부는 국민은행, 한영회계법인, 코리아로터리서비스 및 그 해당 직원들을 상대로 복권업무와 관련한 321십억원의 과도한 수수료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9년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부의 이와 같은 청구를 기각함. 2009년 5월, 한국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0년 9월에 이를 기각함. 한국 정부는 2010년 10월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며, 해당 상고심은 현재 계속 중임.

2004년 4월, 복권위원회는 코리아로터리서비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율을 9.523%에서 3.144%로 인하하였는데, 코리아로터리서비스는 2004년 5월 복권위원회에 의한 수수료율 인하는 무효임을 주장하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기존 수수료율과 변경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수수료간의 차액인 약 20십억원의 미지급 수수료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함. 2006년 12월, 서울중앙지법은 코리아로터리서비스 승소판결을 내렸고, 국민은행은 2007년 1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함. 2008년 5월, 서울고등법원은 코리아로터리서비스에게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으나 손해배상금액을 4.5십억원으로 감액함. 2008년 6월, 국민은행과 코리아로터리서비스는 모두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며, 현재 본 소송의 상고심이 계속 중임.

추가적으로, 2007년 1월, 코리아로터리서비스는 2004년 6월과 2006년 12월 사이에 기발생한 수수료와 관련하여 국민은행을 상대로 기존 수수료율과 변경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수수료간의 차액인 총 446십억원의 미지급 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또 다른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게 제기함. 2008년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3십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하는 국민은행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고, 2008년 8월, 국민은행과 코리아로터리서비스는 해당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며,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임.

또한, 2008년 6월, 코리아로터리서비스는 2007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국민은행이 기존 수수료율과 변경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수수료간의 차액인 총 134십억원의 미지급 수수료의 지급을 구하는 또 다른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며, 현재 해당 법원에 계속 중임.

2006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은행을 포함한 수개 은행에 대하여 수수료에 관한 부당한 담합 행위 또는 반경쟁적 행위에 연관되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였음. 조사 결과로서 2008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은행에 수출환어음 매입과 기한부신용장(뱅크스 유산스)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신설하는 데에 있어서 가격을 담합하였다는 혐의 사실에 대해 이를 중단할 것을 명하고 각각에 대해 257백만원 및 439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국민은행은 2008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음. 기한부신용장(뱅크스 유산스) 수수료 신설 행위에 있어서 가격을 담합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는 2009년 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하여 상고하였음. 수출환어음 매입 수수료 신설 행위에 대하여 가격을 담합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는 2009년 4월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하여 상고하였음. 2011년 4월 대법원은 양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국민은행 패소판결이 확정됨.

또한 2008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은행에 대해 지로수수료를 인상하면서 가격을 담합하였다는 혐의사실에 대해 이를 중단할 것을 명하고 537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국민은행은

2008년 7월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9년 5월 패소하였음. 2009년 6월, 국민은행은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현재 계속 중임.

2007년 상반기 중 국세청은 국민은행에 대하여, 2002년, 2003년, 2004년 및 2005 회계연도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 그 결과 세액 190십억원(주민세 포함)이 부과되었고, 2007년 하반기에 국세청은 과거 회계연도에 대한 법인세로 국민은행에 292십억원(주민세 포함)을 추가적으로 부과하였으며, 국민은행은 세액 전부를 2007년에 납부하였음. 국민은행은 2007년에 부과된 세액 482십억원(주민세 포함)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년 3월 해당 청구를 기각함. 2010년 6월, 국민은행은 서울행정법원에 항소하였으며, 서울행정법원은 2011년 4월 1일 국민은행에게 승소판결을 내림. 국세청은 2011년 4월 19일 본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현재 계속 중임.

2008년 11월 이래로 국민은행의 고객들이 은행과 체결한 통화옵션계약(KIKO)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함. 2008년 및 2009년의 달러화 대비 원화가치하락으로 인하여 이들 고객들은 국민은행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상태임. 7개의 회사가 KIKO 상품계약은 무효이므로, 국민은행이 해당 계약에 따라 수령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민은행에 대해 소를 제기함. 상기 제기된 소송 중 3건의 소송이 기각되었으나 원고들을 항소하지 아니함. 2011.3.31. 현재 남아있는 3건의 소송의 실제 분쟁 금액은 약 12,428백만원이며, 원화가 달러화에 대해 미래에 평가절하되면 증가될 수 있음. KIKO 상품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소송이나 가치분신청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될 수 있으며, 해당 쟁송의 최종 결과는 불확실한 상태임.

2008년 11월 이래로 국민은행의 많은 고객들이 역외펀드와 통화선물계약의 매매와 관련하여 국민은행을 상대로 11개의 소를 제기함. 고객들은 해당 손실이 고객들에게 해당 투자상품의 위험을 부적절히 설명한 국민은행의 업무상의 과실 및 해당 상품의 불완전 판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함. 원고들의 총 손해배상청구액이 557백만원에 달하는 5건의 소송은 기각되어 항소되지 않았으며,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액이 154백만원인 1건의 소송은 2009년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해 기각되어서, 원고들은 서울고등법원에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추후에 항소를 취하함. 원고들의 총 손해배상청구액이 221백만원에 달하는 1건의 소송은 2009년 7월에 기각되었으며 원고들은 2009년 8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함. 그러나, 당사자들은 조정을 통하여 합의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고 본 사건은 44백만원으로 감액된 손해배상액에 합의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들의 총 손해배상청구액이 5,581백만원인 세 건의 소송을 2010년 하반기에 기각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해당 항소심은 현재 계속 중임. 원고들의 총 손해배상청구액이 199백만원에 달하는 1건의 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속 중임. 추가적인 소송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될 수 있으며, 해당 쟁송의 최종 결과는 불확실한 상태임.

2009년 8월, 한국의 조선회사와 선박건조계약을 각자 체결한 6인의 발주자들은 국민은행을 상대로, 해당 계약에 따라 해당 발주자들이 조선회사에게 지급한 선수금 미화 46.6 백만달러를 환급해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영국에서 제기함. 상기 계약들과 관련하여, 국민은행은 2007년 8월 각 발주자에게 해당 조선회사가 선박건조계약들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발주자들이 지급한 선수금을 반환해야 하는 조선회사를 대신하여 선수금을 환급하겠다는 취지의 보증서를 발행함. 그 조선회사에 대해서 2009년 1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워크아웃 절차가 개시됨. 6인의 발주자들은 이것이 각 선박건조계약상의 채무불이행사유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며 조선회사에 이미 지급된 선수금을 환급보증서 조건에 따라 환급할 것을 요구함. 영국의 제1심법원(High Court of Justice, Queen's Bench Division, Commercial Court)은 2009년 10월 6인의 발주자들에게 승소판결을 내렸음. 이에 국민은행은 항소법원(Court of Appeal, Queen's Bench Division, Commercial Court)에 항소하였고, 항소법원은 2010년 5월 하급심법원의 판결을 파기함. 6인의 발주자들은 영국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해당 사건은 영국 대법원에 현재 계속 중임

한국 정부는 2010년 7월에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국민은행을 상대로 총 120 십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4건의 소송을 제기하였음. 한국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의 대손(loan losses)이 국민은행이 해당 기금의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4건의 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속 중임

2010년 9월,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의 JSC Bank CenterCredit에 관한 투자손실 및 2009년 5월 미화 10억 달러의 액면가로 발행한 커버드본드(covered bonds)와 주로 관련하여 국민은행에게 기관경고를 부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은행의 일부 전·현직 임원들에게는 문책적 경고 등을, 일부 전·현직 직원들에게는 견책이나 감봉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였음.

원문의 기타 소송 부분은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원문의 기타 소송 부분은 사업보고서 X.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가.중요한 소송사건(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배당

당사는 2010년 총 41,163백만원을 현금배당하였음. 기타 원문의 배당 부분은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원문의 배당 부분은 사업보고서 I.회사의 개요 6.배당에 관한 사항 등(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Item 8B. 중요한 변경 : 해당사항 없음.

Item 9. 공모 및 상장

Item 9A. 공모 및 상장의 세부사항

시장가격 정보

원문의 시장가격 정보 부분은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국내와 뉴욕 증권시장의 가격현황에 관한 내용으로 Global Stock Information Financial Network(GSIFN)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등재되어 있음.

Item 9B. 판매 계획 : 해당사항 없음.

Item 9C. 시장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원문의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부분은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한국거래소의 연혁 등에 관한 내용으로, 한국거래소의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음.

투자중개업자의 도산시 투자자 보호

한국법상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고객을 위해 예약된 증권은, 투자중개업자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고객에게 속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투자중개업자가 도산하는 경우에도 그 증권에 대한 권리는 고객에게 있음. 기타 원문의 투자중개업자의 도산시 투자자 보호 부분은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자본시장법, 예금자 보호법에 관한 내용에 해당함.

주식 등의 보유에 대한 보고 의무

한국법상 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을 취득한 주주는 그 5% 이상 취득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그 주식보유 상태와 목적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1% 이상 지분 변동시에도 5영업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함. 기타 원문의 주식등의 보유에 대한 보고의무 부분은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자본시장법의 내용에 해당함.

ADS에 대한 규제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외국인 투자등록증을 취득하여야 함. 그 밖에 ADS를 국외 유통시장에서 매매하는 행위, ADS의 원주인 당사의 보통주를 인출하는 행위 또는 인출된 원주를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 등을 위하여 당국의 승인을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음. 외국인의 주식취득의 경우 본인이나 국내 상임대리인이 취득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함.

ADS의 원주를 인출하여 당사의 보통주를 취득한 자는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신주인수권의 행사, 무상신주 또는 배당금의 수령이 가능함.

국내 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ADS의 발행(ADS의 신규발행(initial issuance)과 공모, ADS에 대한 이익 배당 또는 주식배당과 관련한 예탁을 포함)을 위하여 당사가 예탁한 보통주의 총수와 주식예탁기관의 명의로 국내보관기관에 예탁한 보통주의 수 사이의 차이를 초과하는 보통주에 대하여는, 당사의 동의 없이는 추가로 주식예탁기관에 예탁할 수 없음. 당사는 주식예탁기관에 예탁된 보통주의 총수가 어떠한 경우라도 116,583,985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탁을 승인하고 있음.

주식에 대한 규제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은 한국의 상장주식을 장내에서만 거래하여야 함. 한국의 상장증권을 거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금융감독원에 미리 등록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함. 외국인이 장내에서 상장증권을 거래하는 것에 관해서는 개별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지만, 장외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함. 기타 원문의 주식에 대한 규제 부분은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라며, 외국환거래법 및 금융위원회의 규제에 관련한 내용임.

Item 9D. 판매 주주 : 해당사항 없음.

Item 9E. 주식가치 희석 : 해당사항 없음.

Item 9F. 발행회사의 비용 : 해당사항 없음.

Item 10. 추가 정보

Item 10A. 자본금 : 해당사항 없음.

Item 10B. 정관

자본에 대한 설명

2010. 12. 31. 현재 정관상 당사의 발행가능 주식수는 1,000,000,000주이고, 발행주식 총수의 50%까지는 우선주식을, 20%까지는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음. 연례보고서 작성일 현재 당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386,351,693주(보통주)임. 기타 원문의 당사 자본에 대한 설명 부분은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원문의 당사 자본에 대한 설명 부분은 자본시장법, 상법 및 사업보고서 중 I.회사의 개요 4.주식의 총수등과 VII.주주에 관한 사항(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조직 및 등기

당사는 한국 금융지주회사법 상의 금융지주회사임. 당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상업등기소에 등기되어 있음.

배당 및 기타 배분

-배당

배당은 매년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각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서 지급됨. 상법 및 기타 관련법상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당사는 신주가 발행되는 연도에 발행된 주식에 대하여도 해당 배당금을 전부 지급하고 있음.

금융지주회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는 적립금이 자본금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결산순이익금을 배당할 때마다 그 순이익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적립하여야 함. 이러한 이익 준비금 외에도 당사는 대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및 퇴직금을 적립할 예정임.

-주식배당

순이익이나 이익잉여금에서 지급하는 주식배당 이외에도, 상법은 회사가 주주들에게 무상주식의 형태로 자본잉여금 및 법정적립금으로부터 해당 자본으로 전입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 무상주식은 모든 주주들에게 지분율에 따라 지급되어야 함. 당사의 정관에 따르면 우선주 보유 주주들에게 지급되는 주식의 형태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함.

신주인수권 및 증자

당사의 주주들은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당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나, 당사 정관 규정에 따라서, (1) 일반공모증자, (2)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신주우선배정, (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의한 신주 발행, (4) 증권예탁증권 발행에 따른 신주발행, (5) 당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신주발행, (6) 당사의 경영에 기여한 제3자에 대한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예외임. 기타 원문의 신주인수권 및 증자 부분은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원문의 신주인수권 및 증자 부분은 사업보고서 VII.주주에 관한 사항 4.주식사무(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의결권

당사 발행의 보통주 1주당 1의결권이 부여되어 있으나, 당사 및 자회사등이 보유한 당사 발행의 주식에 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기타 원문의 의결권 부분은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원문의 의결권 부분은 상법과 사업보고서 VI.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3.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청산시 권리

당사가 청산되는 경우, 모든 부채, 청산비용과 세금을 지불하고서 남는 자산은 먼저 발행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잔여재산분배에 관하여 우선권을 갖는 우선주 보유 주주들에게 분배되고, 그 나머지가 보유 지분율에 따라서 주주들에게 분배될 것임.

정기주주총회

당사의 정기주주총회는 매 회계연도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최되어야 함. 기타 원문의 정기주주총회 부분은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원문의 정기주주총회 부분은 상법과 사업보고서 VI.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3.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반대주주의 권리

영업양수도, 합병 등의 일정한 안건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자본시장법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당사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기타 원문의 반대주주의 권리부분은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자본시장법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해당함.

보유지분에 관한 의무공시

당사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 및 그들의 특별관계자 또는 공동보유자 등은 관련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관련 정부기관에 그들의 주식보유상황을 신고하여야 함. 원문의 의무 공시에 대한 부분은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라며, 금융지주회사법 및 자본시장법 관련 내용임.

기타 규정

-주주의 명의개서 및 기준일

원문의 주주의 명의개서 및 기준일 부분은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원문의 주주의 명의개서 및 기준일 부분은 사업보고서 중 VII.주주에 관한 사항 4.주식사무(증권거래법 제186조의2, 동법 시행령 제83조의 3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한편 당사는 정관 규정에 따라 분기별로 배당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준일은 매년 3월, 6월 및 9월의 각 말일임.

-영업보고서

원문의 영업보고서와 사업보고서 부분은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라며, 상법 및 자본시장법 내용임.

-주식의 양도

한국법상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 이루어지지만,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라서 예탁자계좌부 및 투자자계좌부의 대체 기재를 통하여 양도될 수 있음. 기타 원문의 주식의 양도부분은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라며, 상법 및 자본시장법 내용임.

-자기주식의 취득

당사는 감자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 발행주식을 취득하지 못함. 위와 같은 제한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주식취득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 후,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서 당사의 주식을 매입하거나 공개매수를 통하여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또한 당사의 자회사등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금융지주회사법상 당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음.

Item 10C. 중요 계약

당사는 2002년 12월 ING Bank N.V.와 전략적 제휴계약을 공식적으로 연장하였는데, 상기 계약에 따라 당사는 ING Bank N.V.의 계열사와 주택은행간에 체결된 과거 투자계약을 상기 계약으로 대체하고, 방카슈랑스사업과 KB자산운용과 관련하여 ING Bank N.V.의 계열사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함. 당사의 이사회는 2003년 8월 ING Bank N.V.와의 전략적 제휴계약을 승인하고 추진하였음.

당사가 설립된 한국법에 따른 “포괄적 주식이전”에 관련하여, KB자산운용에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ING International Insurance B.V.는 그 모든 보유 보통주를 2008년 9월 당사에게 이전하였고, 그 대가로 특정된 주식이전비율에 따라 당사의 보통주 1,290,815주를 수령함.

당사와 ING Groep N.V.와의 관계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을 관해서는 “Item 4A. 회사의 연혁-주책은 행의 연혁” “Item 4B.사업의 개황-기타 사업-방카슈랑스” 및 “Item 7B.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및 원문의 중요 계약 부분 참조.

Item 10D. 외환 관리

개요

외국환거래법 및 그 시행령, 기타 관련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한국 증권에 대한 투자 및 한국 회사의 한국 외에서의 증권발행이 규제됨. 기타 원문의 외환 관리 부분은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라며, 외국환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관한 내용임.

주식에 대한 규제

외국환거래법에 의하면, 한국에서 주식을 취득하려는 외국 투자자는 외국환은행에 투자전용대외 계정 및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을 개설하여 거래할 수 있음. 기타 원문의 주식에 대한 규제 부분은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라며, 외국환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관한 내용임.

Item 10E. 세제

미국의 세제

원문의 배당, 매각이나 기타 처분, 해외 납세세금에 대한 고려사항, 정보의 제공 및 원천징수 관련 규정은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라며, 모두 미국 거주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미국 세법상의 내용임.

국내의 세제

국내 거주자, 국내 상법상 법인,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영위하고 있거나 국내원천소득 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아래에 기술하는 세제와 관련사항에 적용됨.

주식이나 ADS에 대한 배당에 관한 과세

당사는 (현금 또는 주식으로) 지급된 배당금의 22.0%(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할 것임. 배당금의 수익적 귀속자가 한국과 조세계약을 체결한 국가에 거주하면, 더 낮은 세율의 적용대상이 될 수도 있음. 기타 원문의 배당에 관한 과세부분은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라며,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지방세법에 관한 내용임.

주식이나 ADS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관한 과세

일반적으로, 당사의 보통주나 ADS를 이전함으로써 발생한 비거주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비거주자의 세무상 거주지인 국가가 한국과 체결한 해당 조세계약에 따라 한국발생소득이 비과세되지 않는 한, 한국에서 원천징수의 대상이 됨. 기타 원문의 양도차익에 관한 과세부분은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라며,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지방세법에 관한 내용임.

조세 조약

한국은 보통주나 ADS의 배당 및 그 이전으로 인한 양도차익을 감액하거나 비과세하는 기타 국가들(미국 포함)과의 많은 소득관련 조세조약을 체결함. 기타 원문의 조세조약 부분은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라며, 소득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및 한미조세조약을 포함한 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에 관한 내용임.

상속세 및 증여세

ADS의 보유자가 사망하거나 ADS를 증여하는 경우,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하여 ADS의 기존 보유자가 ADS의 기초자산인 보통주의 소유주로 간주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음. 기타 원문의 상속세 및 증여세 부분은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관한 내용임.

증권거래세

투자자가 한국거래소에서 당사의 보통주를 이전하는 경우, 보통주 매도가격의 각 0.15%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대상이 됨. 기타 원문의 증권거래세 부분은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라며, 증권거래세법, 농어촌특별세법에 관한 내용임.

Item 10F. 배당 및 지급 대리인 : 해당사항 없음.

Item 10G. 전문가의 진술 : 해당사항 없음.

Item 10H. 문서의 열람

원문의 문서의 열람 부분은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라며, 미국 증권거래법에 관한 내용임.

Item 10I. 계열사 정보 : 해당사항 없음.

Item 11. 시장리스크에 대한 계량적·비계량적 정보

개관

당사는 금융서비스 제공자로서 주로 은행자회사인 국민은행을 통하여 여신, 트레이딩, 자금 조달 및 영업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음. 당사의 리스크관리 목표는 이러한 리스크를 정확히 인식, 측정, 모니터링하여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절차를 당사 내 모든 조직에 확립시키도록 하는 것임.

조직

당사는 여러 단계의 리스크관리구조를 가지고 있음. 당사의 그룹리스크관리위원회는 그룹 전체의 리스크관리에 대한 궁극적 책임을 맡고 있으며 여러 하부 리스크관리조직을 지휘함. 그룹리스크관리협의회는 그룹리스크관리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며, 자회사의 리스크 관리 조직과 협력하여 그룹리스크관리위원회에 의해 제시된 세부 사항을 수행함. 자회사마다 설치된 자회사의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그룹리스크관리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리스크관리전략을 결정하고 해당 자회사에 대한 리스크관리 정책을 실시하며, 그룹 차원에서 정한 리스크지침에 부합하도록 자회사의 리스크관리조직의 활동을 지휘함. 각 자회사의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그룹리스크관리위원회에게도 직접 보고함.

그룹리스크관리위원회

당사의 그룹리스크관리위원회는 이사회 수준의 위원회로서 당사의 리스크 전반을 감독하고 이사회에 리스크관리 관련 사항에 대해 조언을 하고 있음.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위원은 1명의 사내이사, 1명의 기타비상무이사 및 3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이사회에서 수립한 전략방향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전략의 수립, 당사의 위험성향(Risk Appetite)의 결정, 당사가 당면한 리스크의 수준과 리스크 관리 정책, 시스템 및 활동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및 자회사에 대한 위험자본의 배분 및 자회사의 리스크한도설정에 대한 승인 등임.

그룹리스크관리협의회

당사의 그룹리스크관리협의회는 그룹리스크관리위원회가 정한 정책, 지침 등을 자회사가 시행하도록 자회사의 리스크관리조직과 협조하는 책임을 담당함. 협의회의 임무는 각 자회사의 리스크관리조직이 제공한 정보를 이용하여 당사의 리스크 수준 분석, 리스크를 반영한 통합 자본분배계획 및 자회사 각각에 대한 리스크 한도 조정, 그룹 차원의 리스크관리 기능통합에 관한 사안 조율 등임.

그룹리스크관리협의회는 당사의 최고리스크관리자 및 모든 자회사의 최고리스크관리자들로 구성되어 있음. 그룹리스크관리협의회는 사업조직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그룹리스크관리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며 분기별로 개최됨.

자회사의 리스크관리위원회

당사의 각 자회사는 리스크 관리 권한을 자회사의 리스크관리위원회로 위임함. 각 자회사의 리스크관리위원회는 해당 자회사가 직면한 다양한 리스크 요소를 측정, 감독하고 리스크 관리 문제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자회사의 이사회에 보고함. 위원회는 해당 자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신용 리스크 한도분배, 총 익스포져 한도 및 시장 리스크 관련 기준 설정, 리스크 관련 전략적 의사결정을 내림. 각 자회사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음.

- 그룹 리스크관리정책에 따라 자회사의 리스크정책, 지침, 한도 및 리스크 허용가능수준(등을 결정하고, 그리고 자회사 리스크 현황을 모니터링함.
- 자회사 리스크 프로파일을 검토하고 분석함.
- 자회사 내에서 각 사업단위의 위험자본 배분계획 및 리스크 관련 한도를 설정하고 조정함.
- 사업 단위 및 자회사 수준에서 당사의 전사적 리스크 관리 정책 및 관행의 이행여부를 감독함.

각 자회사 리스크 관리위원회는 자회사의 최고경영자, 자회사 이사회 사외이사 및 리스크 관리 담당임원으로 구성됨.

당사의 은행자회사인 국민은행의 경우, 국민은행의 리스크관리협의회가 리스크관리위원회의 활동을 보조함. 리스크관리협의회는 국민은행의 리스크관리 수행에 있어 집행의사결정기구임.

신용리스크 관리

신용리스크(차주나 거래상대방이 채무불이행을 하는 경우에 예상되거나 또는 예상치 못한 손실에 관한 리스크) 관리는 여신포트폴리오의 다각화 및 균형을 통하여 자산건전성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당사는 신용평가전문가와 신용평가시스템 분석을 통해 차주나 거래상대방의 유형별 신용도를 결정하고 각각의 신용공여한도를 설정함.

당사는 차주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대출, 증권 투자, 신용장, 은행인수어음과 파생금융상품 등을 포함하는 모든 신용익스포져(재무상태표에 난내 및 난외자산 포함)를 평가 및 관리함. 가용장부자본에 대한 소요 경제적자본의 비율로 표시되는 당사의 위험성향은 연 1회 그룹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결정됨. 국민은행은 그룹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승인된 위험성향에 따라 할당된 경제적 자본을 기초로 하여 각 사업부문 및 전행에 대한 경제적 자본을 매월 측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사업부문 및 경영진에 보고하고 있음.

당사는 예상부도율과 회수율을 차주 및 거래상대방의 예상손실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바, 이러한 예상손실율은 대출가격의 결정, 대출승인과 각 의사결정의 단계에서 준수해야 하는 지침의 설정 등 여신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사용함. 다만, 위 손실율은 당사의 내부 데이

타베이스에서 추출된 정보를 이용하여 계산되며, 대기업고객에 대해서는 부도율과 회수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외부신용평가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이용함.

당사의 신용리스크 관리절차는 여신정책의 수립, 신용평가와 대출승인, 산업평가, 총익스포저 관리, 신용리스크 평가, 담보물 평가와 모니터링, 조기경보 및 신용감리, 여신사후관리 등으로 이루어짐.

신용평가

국민은행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이 보증한 대출과 국민은행에 예치된 예금으로 충분히 담보되는 대출을 제외한 다른 대출에 대해 승인을 하기 전에 모든 대출신청자들의 상환능력을 평가하고 있음. 국민은행은 국민은행의 신용평가전문가 또는 적절한 신용평가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산된 점수를 바탕으로 각 차주들과 보증인 등의 신용등급을 부여함.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경우, 국민은행이 고려하는 요소에는 재무적 요소와 비재무적 요소가 있는바, 비재무적 요소에는 차주의 신뢰성, 경영 및 운영리스크와 차주가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리스크 등이 포함됨.

대기업에 대해서는 AAA부터 D까지의 17개의 신용등급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AA부터 D까지의 15개의 신용등급을, 개인에 대해서는 1등급부터 13등급까지의 13개의 신용등급을 사용함.

가계대출 승인절차

주택자금대출과 담보(보증)부대출: 지점의 담당자가 대출신청내용을 대출실행센터로 송부하고, 대출실행센터 담당자가 심사 및 승인하고 있으며, 다만 예금담보대출의 경우 지점 담당자가 승인하고 있음. 국민은행은 담보물의 가치평가, 부채상환능력 및 국민은행 신용평가에 의한 차주 신용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하여 대출결정을 함.

국민은행은 주택자금대출과 부동산담보부(또는 보증부)대출의 담보목적물인 부동산의 가치를 국민은행이 자체 개발하거나 외부로부터 제공받은 국내 부동산 가격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평가하고 있음.

예금담보부대출에 대해서, 국민은행은 일반적으로 국민은행예금의 95%까지 대출을 승인하고 있음.

주택자금대출과 담보(보증)부대출에 관하여, 국민은행은 국민은행의 내부정보와 신용기관의 평가정보에 따라 고객의 현 신용상태에 관한 체크리스트의 각종 항목(주거용 주택의 종류, 직업, 가족 정보, 연봉, 나이, 신용카드 연체정보, 당사 및 기타 금융기관과의 거래내역 등의 항목)을 기초로 하여 적격 고객을 선별함.

무담보가계대출: 국민은행은 국민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에 따라 무담보가계대출의 신청을 검토함. 위 시스템의 주요 효익은 사용자가 누구더라도 정형화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신용평가에 관한 경험이 없는 직원도 효과적으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각 평가항목의 가중치를 조정함으로써 유동적인 시장상황을 쉽게 반영할 수 있다는 데 있음.

기업대출 승인절차

국민은행은 대출의 규모와 종류, 신용평가시스템이 평가한 신용리스크 수준, 담보 여부, 담보가치 등에 따라 기업대출을 승인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대출의 승인은 해당 권한을 가진 하나의 부서에서 검토하고 승인하는 것이 보통이나, 대출의 규모와 조건 또는 해당 고객의 신용리스크에 따라서 1개 이상의 부서에서 대출신청을 검토할 수도 있음.

국민은행은, 예금으로 충분히 담보되는 대출신청자 또는 정부나 매우 높은 신용등급자가 보증하는 대출신청자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시스템을 이용하여 모든 기업고객을 평가함.

국민은행은 대출채권 1십억원 미만인 자영업자(소호 고객)에 대하여는 소호신용평가시스템을 적용함.

국민은행은 대출채권 1십억원 이상인 기업형 소호 고객에 대해서는 기업형소호신용평가시스템(SOHO CRS)을 이용함. 국민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신용평가시스템(CRS)을 이용하며, 대기업에 대하여는 대기업신용평가시스템(LCRS)을 적용함. 국민은행은 금융기관, 비영리기관 및 공공기관에 관하여서는 FNP CRS로 알려진 유사한 신용평가시스템을 적용함. SOHO CRS, CRS와 FNP CRS 모델은 아래와 같은 3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짐.

1. 재무모형: 재무모형은 재무제표에서 산출된 재무비율의 추세와 차주의 현재 상태를 사용하여 잠재적 차주를 규모(3개) 및 업종(5개)에 따라 분류하고 있음. 사용되는 재무비율은 안정성, 현금흐름, 수익성, 활동성 비율을 사용하며, 통계적 모델개발 방법의 하나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개발하였음.

2. 정성적 평가모형(QCA, qualitative credit assessment): 정성적 평가모형은 미래채무상환능력, 시장의 전망, 경영능력, 영업능력 등의 여러 가지 정성적인 요소를 평가하고 있으며, 기업규모 및 업종에 따라 평가항목 및 배점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음.

3. 기업부실에측점검모형(Default Signal Check Model): 이 모형은 초기등급 부여단계에서의 일관성을 검사하는 모형으로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채무불이행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와 과거 경험을 고려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등급의 최고등급을 제한하는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위 세가지 요소 이외에도 SOHO CRS는 CEO평가모형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소호의 영업주의 개인적 정보와 거래이력에 관한 정보를 분석함.

당사는 신용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와 같은 외부신용등급심사기관에서 평가한 등급을 신용평가지 고려하여 평가하고 있음.

신용카드 승인절차

당사는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결제능력 심사기준 및 KB국민카드가 내부개발한 신청평점시스템과 독립된 신용기관인 CB(Credit Bureaus)사의 신용평점시스템의 조합을 기초로 하여 신용카드 발급 승인 여부를 결정함.

KB국민카드의 신용평점시스템은 여러 가지 신용정보를 반영하는데, 그 정보들은 기초고객정보(신용거래이력 등), KB국민카드와의 거래이력, 타 신용카드회사 등 외부 금융기관들의 연체내역과 거래이력, 은행연합회와 CB사가 제공한 신용정보 등임. 또한, KB국민카드는 상환능력 및 자산, 총미상환 부채 및 거래 지속성과 과거 수익기여도도 고려하고 있음.

CB사의 신용평점시스템은 외부 여러 금융기관들의 다양한 연체내역과 거래이력 등 고객의 신용리스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반영함.

결제능력 심사기준 및 신청평점시스템과 CB사의 신용평점시스템의 신용평점 조합을 기초로 하여, 신용카드에 대한 초기한도, 수수료율 등 신규 승인의 계약조건을 결정함. KB국민카드의 시스템은 신규 신청자들을 자동승인대상, 자동거절대상, 추가심사대상그룹으로 나누고, 신규 신청자의 초기한도는 직업과 개인자산의 가치를 토대로 추정된 월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고, 수수료율은 리스크 프리미엄과 수익성에 따라 적용됨.

총익스포저 관리

당사는 신용공여한도를 최적화하고 과도한 리스크 집중을 회피하고자 대기업, 재벌, 일부 중소기업 및 각 산업별로 총익스포저 관리한도를 설정·관리하고 있음. 당사는 5십억원이 넘는 (증권 또는 대출의 형태로) 익스포저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과 20십억원 이상의 (증권 또는 대출의 형태로) 익스포저가 있는 중소기업 및 금융감독위원회나 국민은행이 지정한 재벌에 대한 총익스포저관리한도는 산업, 규모, 현금흐름, 재무비율 및 신용등급을 검토하여 설정하고, 산업에 대한 총익스포

저관리한도는 산업별 EAD(Exposure at Default), 산업별 부도율 및 성장률, 익스포져 비중을 검토하여 설정함. 총익스포져를 설정하는 가이드라인은, 신용리스크관리심의회의 심의 후, 국민은행의 리스크관리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국민은행의 최고 익스포져 관리한도는 단일 재벌그룹에 대하여는 국민은행의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20% 이하, 단일 대기업에 대하여는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10% 이내임.

당사는 총익스포져 관리한도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총익스포져한도 관리시스템을 두고 있는바, 동 시스템은 대기업, 재벌, 각 산업에 대한 당사의 총익스포져를 모니터링하고 통제하는 것임. 당사는 익스포져가 5십억원 이상인 대기업, 20십억원 이상인 개별기업, 그리고 잔여 여신규모에 근거하여 금융감독원이 선정한 37대 재벌과 국민은행의 리스크관리본부의 본부장이 별도로 정한 22개 재벌을 포함하여 총 59개의 재벌에 대하여 당사의 익스포져를 모니터링함. 또한 산업별 익스포져도 모니터링하고 있음. 총익스포져한도 관리시스템은 당사의 해외지점과 자회사가 제공한 여신을 포함한 모든 여신리스크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음. 시스템이 관리하는 자산은 모든 원화/외화 대출, 증권, 특정금전신탁 이외의 모든 신탁계정자산, 보증, 무역관련여신, CP, 회사채 및 파생상품을 포함함.

담보가치 평가와 모니터링 시스템

국민은행은 국민은행이 보유하는 담보물의 청산가치를 관리하기 위하여 담보가치평가 및 모니터링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바, 국민은행의 본점과 지점은 전산화된 담보물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다 정확한 담보물의 청산가치를 평가할 수 있고, 대출에 대한 회수율을 결정할 수 있음. 이를 이용하여 국민은행은 신용리스크 관리와 여신정책을 수립함.

국민은행은 담보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산정하는 경우, 제3의 기관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전국에서 거래되는 여러 종류의 부동산 가격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기도 함. 국민은행이 신규 대출을 하거나 만기가 되어 갹신하는 경우 또는 담보가치가 변하는 경우에도 담보가치를 각각 산정함.

신용리스크관리와 모니터링

국민은행의 신용리스크관리부서는 당사의 여신 포트폴리오 정책을 관리 및 규제함. 신용리스크관리부서는 또한 당사의 여신 포트폴리오를 분석 및 점검하며 나아가 당사가 신용리스크의 해당 한도를 준수하는 지를 점검함. 또한, 신용리스크관리부서는 적절한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과 시장교차형 파생상품들과 같은 고위험 제품들을 별도로 관리함.

신용감리

국민은행의 신용감리 업무는 사업그룹과는 독립적으로 수행됨. 신용감리부는 여신관련 제도/정책/시스템에 대한 검토, 영업점 및 본부심사역이 수행한 신용평가 및 여신승인 업무의 적정성 점검, 잠재부실기업에 대한 기업신용 위험 상시 평가 등을 담당함.

보다 구체적으로는 감리대상으로 선정된 차주의 현재 부채, 담보, 영업, 관계사들과의 거래 및 부채상환능력 등을 포함한 재무상태를 고려하여, 현재 신용상태에 적정한 신용등급, 자산건전성 분류, 여신정책을 조정하고 있음.

또한, 주요 이슈가 발생한 업종 및 취약산업에 대해서는 성장성, 안정성, 경쟁요소,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등을 감안하여 소속업체들에 대한 여신정책과 산업별 총익스포져 관리한도를 조정하고 있음.

시장리스크 관리

당사가 보유한 주요 시장리스크는 채권과 이자율 상품에 대한 금리리스크이며, 그 다음으로는 주식리스크 및 외환리스크임. 이러한 리스크와 관련된 당사의 금융상품으로는 증권과 파생상품이

있음. 당사는 상품(commodity)에 대하여 back-to-back 거래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리스크의 다른 한 축인 상품(commodity) 리스크 노출은 없음. 또한 국민은행의 은행계정에도 금리리스크와 유동성리스크가 존재하는바, 당사는 시장리스크를 트레이딩 부문의 시장리스크와 비트레이딩 부문의 시장리스크로 구분하고 있음.

국민은행의 리스크관리협의회는 전반적인 시장리스크 관리원칙을 수립하며, 트레이딩 부문에 대한 시장리스크 관리책임을 리스크관리본부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시장리스크관리심의회에 위임하고 있음. 동 심의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그리고 시장 및 경제동향에 따라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시장리스크관리심의회는 국민은행의 리스크관리협의회가 승인한 정책에 기초하여 트레이딩 부문에 대한 손익, 포지션, 한도관리, 민감도분석 및 VaR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함.

국민은행의 재무전략협의회는 비트레이딩 부문의 일별 금리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바, 정기적으로 그리고 시장 및 경제동향에 따라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동 협의회의 위원들은 국민은행의 재무관리부를 통하여 월별로 국민은행의 금리 및 유동성 갭포지션을 검토하고, 금리전망과 예금 및 대출금리에 대한 현행전략을 검토하며, 경영여건 및 ALM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음.

또한 국민은행은 금리리스크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ALM 통제에 대한 책임을 국민은행의 리스크관리본부 내의 리스크관리부에 부여하고 있는바, 리스크관리부는 재무관리부가 수행하는 ALM 리스크 관리의 절차 및 업무에 대한 모니터링과 검토를 수행하고, 관련 사항들에 대해 독자적으로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음.

트레이딩부문에 관한 시장리스크 관리

당사의 트레이딩 부문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음.

- 시장상황에 대한 단기에측에 기초하여 원화채권시장, 원화주식시장 및 외환시장에서의 단기매매차익을 실현하기 위한 당사 고유계정의 트레이딩 거래.
- 스왑, 선도, 선물, 옵션과 같은 파생상품 트레이딩 거래의 대부분은 재정거래 목적이며, 일부는 당사고객에 대한 파생상품 매매를 통해 이익을 실현하는 거래와 상기 거래들에서 발생하는 시장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한 거래임. 한편 시장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한 일부 파생상품거래들은 US GAAP 상 헷지회계처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트레이딩 거래로 분류되었으나, 이러한 파생상품거래는 경제적 의미의 헷지거래로서 유효하다고 판단됨.

당사는 시장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하여 파생상품을 이용하고 있으며, 리스크 한도 범위 내에서 일정부분 이익실현을 위한 파생상품 트레이딩 거래를 하고 있음. 당사 헷지전략의 주목적은 설정된 한도 내에서 당사의 시장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임. 당사는 관련 리스크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헷지 금융상품을 이용하고 있음.

- 국민은행의 트레이딩부는 트레이딩 거래에 따른 금리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해 금리선물(원화국채선물) 및 금리스왑을 이용하고 있으며,
- 국민은행의 트레이딩 거래에 따른 주식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해 주가지수선물을 이용하고 있음.
- 국민은행의 트레이딩부, 자금부, IB 사업부는 트레이딩거래 및 외화자산·부채 포지션에 따른 금리리스크와 외환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해 금리스왑, 통화스왑, 외환선도, 외환선물, 유로달러선물 및 통화옵션을 이용하고 있음.
- 국민은행은 투자 혹은 자금조달 후 자산 및 부채의 금리속성을 변경시키기 위해 스왑을 이용하고 있음. 예를 들면, 시장상황에 따라 고정금리부 자금조달 조건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리스왑을 통해 변동금리로 조달한 자금을 고정금리부로 전환할 수 있음.

당사는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시장리스크를 관리하는바, 시장리스크에 대한 당사의 익스포저를 통제하기 위해 국민은행의 리스크관리협의회가 설정한 경제적 자본한도 및 전행 및 그룹별 VaR 한도, 포지션 한도, 손실 한도와 국민은행의 시장리스크관리심의회가 설정한 부서별 VaR 한도, 포지션 한도, 손실 한도 및 민감도한도(PVBP, 델타, 감마, 베가)를 이용하고 있음. 당사는 금융감독원의 감독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파생상품거래에 관한 리스크통제 및 관리지침을 수립하였음.

당사는 각 사업그룹 및 운용부서의 트레이딩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시장리스크를 모니터링함. 원화 표시 및 외화표시 트레이딩 거래에 대한 당사의 시장리스크 측정모델은 'Adaptiv'라고 하는 시장리스크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은행의 모든 트레이딩 거래에 관한 일관성 있는 VaR수치를 산출하고 있음.

VaR 분석: 당사는 일간 시장리스크 측정기준으로 VaR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바, 이 모델은 금융변수의 정규분포 조건 하에서 1일 기준으로 손실발생 가능한 최대추정치를 통계적으로 계산한 것임. 당사는 일간 VaR수치를 계산하기 위해 99% 단측신뢰구간을 이용하는데, 그 의미는 실제 손실금액이 VaR수치를 초과하는 경우는, 평균적으로 100영업일 중 단 1일에 불과함을 의미함.

VaR는 시장리스크 관리를 위해 통상 사용되는 기법이기기는 하지만, 약간의 단점도 내포되어 있음. 이 모델은 과거의 시장변동데이터를 사용하여 특정 신뢰도 구간에서 특정 기간 동안의 예상손실액을 추정하는 것임. 그러나 미래의 시장 상황을 모델이 예측하지 못하므로 과거의 시장 움직임만으로 미래사건을 추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계산시점의 가정들에 따라 손익발생의 시기와 크기가 달라질 수 있음. 또한 이 모델에 사용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1일 또는 10일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간단위가 관련 기초자산포지션을 청산하기에 충분한 자산보유기간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자산보유기간이 불충분하거나 너무 장기인 경우 VaR추정결과치는 잠재적 손실을 너무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할 소지도 있음. VaR은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에서 트레이딩 포지션리스크를 측정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며, 극도의 유동성부족의 상황 등에서는 리스크를 과소평가할 수 있음.

당사는 VaR를 측정하기 위해 분산-공분산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바, 이에 의해 단일 리스크 범주뿐만 아니라 리스크 범주간의 분산효과도 반영하고 있음. 다양한 VaR 방식 및 분산추정이 존재하는 결과, 결과적으로 중대한 차이를 유발할 수 있음.

국민은행의 트레이딩거래와 관련되는 금리리스크, 주식리스크, 외환리스크에 대한 2009.12.31. 현재 일간 VaR수치(보유기간 1일에 대한 신뢰도 99% 수준)는 각 8.9십억원, 3.6십억원, 5.8십억원임. 기타 원문이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람.

사후검증: 당사는 매일 시장리스크 모델의 타당성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음. 이러한 검증 절차에서 실제손익, 가상손익과 VaR값을 비교하고, 99%의 신뢰구간을 벗어난 결과값들을 분석함.

위기상황분석: 정상적인 시장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VaR모델 이외에도, 당사는 비정상적인 시장 변동상황에 대한 시장리스크 측정모델로서 위기상황분석을 활용하고 있는바, 이러한 비정상적인 시장변동상황으로는 주식시장의 급격한 하락과 금리수준의 급격한 상승과 같은 경우를 포함함. VaR모델은 특정 보유기간과 특정 신뢰수준 하에서 예상손실액을 통계적으로 추정하는 모델이고 시장의 움직임이 일반적인 기대치를 벗어난 경우의 잠재적 손실을 추정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위기상황분석은 VaR모델에 대한 중요한 보완도구가 됨. 위기상황분석모델은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동안에는,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를 변화시키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특정 시나리오에 따른 보유포지션의 가치변화를 추정하는 것임. 국민은행의 트레이딩부문 리스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트레이딩 유가증권 포트폴리오의 경우, 국민은행의 위기상황분석에 의하면 2010.12.31. 현재 비정상적인 위기상황 하에서 주식시장이 단기간에 약 25% 정도 급락하고 금리가 약 113bp 상승하는 경우에 157십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국민은행은 위기상황분석을 수행하여 그 결과가 시장위험한도 내에 있음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시장상황의 급변이나 비정상적인 경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음. 만약 위기상황에 의한 영향력

이 크면, 국민은행의 리스크관리본부장은 포트폴리오 조정 또는 다른 적절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청할 것임.

-금리리스크

당사의 트레이딩 거래와 관련한 금리리스크는 대부분 원화채권 매매에서 발생하고 있음. 당사의 매매전략은 금리변동으로 인한 채무증권가격의 단기 매매차익을 얻는 것임. 국민은행의 트레이딩 계정은 일별로 시가평가 되므로 VaR모델이나 민감도분석과 같은 시가분석기법을 통하여 트레이딩계정의 금리리스크를 관리함. 2010.12.31. 현재 국민은행의 트레이딩 부문 금리리스크 VaR는 5십 억원이고, 원화트레이딩채무증권의 가중평균듀레이션 또는 가중평균만기는 대략 2년으로 나타남.

-외환리스크

당사의 외환리스크는 외환선도거래 및 통화스왑과 같은 난외계정을 포함하여 외화자산과 부채를 보유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리스크임.

2010년 8월 이전에는 미 달러화, 일본 엔화 그리고 유로화 표시 자산과 부채가 당사의 외화자산과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2010년 8월부터는 카자흐스탄 텡게로 표시된 자산과 부채가 당사의 외화자산 및 부채의 다수를 차지함. 2010년 8월까지, 카자흐스탄 은행인 JSC Bank CenterCredit에 대한 당사의 투자는 환율위험에 대해 완전히 헤징됨. “Item 4B. 사업의 개황-자본시장업무 및 국제금융-국제금융.”을 참조. 2010년 8월, 당사는 카자흐스탄 텡게 대비 원화가치가 상당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해당 환율 헤지를 중단하기로 결정함.

당사의 순외환포지션은 외화자산과 외화부채간의 차액에서 외환선도포지션, 통화옵션 및 통화스왑을 합산하여 계산함. 국민은행의 리스크관리협의회 및 시장리스크관리심의회는 손실한도와 함께 순외환포지션한도를 설정함으로써 트레이딩부문 및 비트레이딩부문을 포괄한 국민은행의 외환 익스포저를 감독하고 있음. VaR한도는 당사의 국내영업과 해외지점을 통합하여 설정되어 있음.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말 국민은행의 비연결 순외환포지션의 원문은 SEC에 공시되었으므로 이를 참조하기 바람. 양(+)의 값은 매입포지션, 음(-)의 값은 매도포지션을 의미하며 국민은행을 제외한 당사의 다른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는 순외환포지션은 미미함.

-주식가격리스크

당사는 외화 주식에 대한 트레이딩 익스포저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의 주식가격리스크는 원화트레이딩주식 포트폴리오로부터 발생하고 있음.

원화트레이딩주식 포트폴리오는 거래소 상장 주식과 최근월물 및 차근월물 주가지수선물계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포지션한도, 손실한도 외에 엄격한 분산투자한도로 관리되고 있음.

국민은행의 리스크관리협의회 및 시장리스크관리심의회는 월간 및 연간 손실한도를 설정하고 리스크관리부가 한도준수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있음.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종목에 대한 손실한도는 관련 미들오피스에서 수행하고 있음.

2010.12.31. 현재 국민은행의 트레이딩주식포지션은 27십억원임.

-파생상품 시장리스크

당사가 거래하는 파생상품에는 금리스왑, 통화스왑, 외환선도, 주가지수선물, 금리선물, 통화옵션 등이 있는바, 파생상품거래는 주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짐.

- 현물과 선물시장간, 혹은 파생상품시장에서 이익을 실현하는 재정거래.

- 당사 기업고객의 다양한 금융수요에 적합한 고객지향 파생상품의 판매와 이러한 판매로부터 발생하는 당사 익스포저 감소목적의 파생상품거래.
- 당사의 시장예측에 근거하여 단기수익이 예상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포지션 유지.
- 위에 기술된 금리 및 외환리스크 익스포저를 헷지하기 위한 트레이딩거래.

당사의 경우 트레이딩 파생상품거래는 주로 재정거래 또는 고객과의 거래이고,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오픈포지션을 보유하기 때문에 파생상품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시장리스크는 미미한 수준임.

비트레이딩활동에 관한 시장리스크 관리

-금리리스크

당사의 비트레이딩 활동에서의 주요 시장리스크는 금리리스크임. 금리리스크는 만기나 이자율에 민감한 자산과 부채의 금리 재조정 기간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함. 당사는 당사의 은행계정의 원화 및 외화표시 자산과 부채(파생상품을 포함) 및 원본보전신탁계정에 대하여 금리리스크를 측정하고 있음. 당사의 대부분의 이자부자산 및 이자부부채는 원화이며, 당사의 외화표시자산 및 부채는 대부분 미국 달러화임.

당사의 금리리스크 관리의 주요 목표는 안정적인 순이자수익을 발생시키고, 당사의 자산가치를 이자율 변동으로부터 유지하기 위한 것임. 당사는 주로 이자부자산과 이자부부채간의 만기갭과 듀레이션갭을 분석함으로써 관리하고 있음. 당사의 비트레이딩 활동에서의 금리리스크 관리를 위해 헷지상품을 제한적인 수준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국내 금융시장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정도로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였음. 당사는 가까운 장래에 국내 자본시장이 조금 더 발달하게 된다면, 이러한 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한 당사의 파생상품 사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함.

이자율 갭분석: 각 만기와 이자율 재조정 시점마다 이자부자산과 이자부부채간의 차이를 계산함으로써 순 이자수익의 예상되는 변동을 측정하는바, 당사는 일반적으로 자산과 부채의 금리가 재설정되는 만기에 근거하여 이자율 갭 분석을 수행하나, 만기가 없거나 특별한 일부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이자율 갭 분석을 수행하고 있음.

- 자산의 만기와 관련하여서는, 당사는 프라임레이트(prime rate) 연계대출의 경우, 잔여만기가 1년 이상일 경우 1년으로, 잔여만기가 1년 이내일 경우는 실제 만기로 각 가정함.
- 부채의 만기와 관련하여 당사는 과거 3개월간의 평균 잔액 사용에 대한 회귀 분석방법론을 적용하며, 당사의 “비핵심” 요구불예금 및 “금리민감성 핵심” 요구불예금의 잔여만기는 3개월 이하, “금리비민감성 핵심” 요구불예금의 잔여만기는 1년부터 4년으로 가정함.

듀레이션 갭분석: 당사는 금리리스크를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듀레이션 갭분석을 실시하는바, 동 분석은 자산 및 부채의 시장가치보다는 회계상 이익에 더 비중을 두는 이자율 갭분석과는 다르게 장기적 관점의 리스크를 측정하는 분석임. 당사는 장기적으로 이자율 변동과 관련한 당사의 주요 관심사가 순이자수익의 변동이 아닌 순자산가치의 변동이므로 듀레이션 갭분석을 강조하고 있음. 2010년도에는 당사의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 갭이 (-)0.334년과 (-)0.237년 사이에서 변동을 하였으므로, 당사의 순자산가치는 금리가 1%p 하락할 경우 528십억원에서 731십억원 정도 하락할 수 있음.

듀레이션 갭분석시, 당사는 이자율 갭분석에 사용되는 자산과 부채 만기와 동일한 만기를 가정하였음.

-외환리스크

당사는 당사의 비트레이딩 활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외환리스크를 자산운용사업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와 함께 관리를 하고 있음.

유동성리스크 관리

유동성리스크는 자금의 유입과 유출액 사이의 차이로 인한 지급불능 또는 손실에 대한 리스크인 바, 당사는 예금의 지급, 만기도래한 사채의 상환, 차입자금의 만기상환 등 당사의 재정적 채무 등의 지급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당사의 유동성을 관리함. 또한 당사는 대출금의 자금조달, 신용의 연장, 기타 증권에의 투자 등을 하기 위하여 충분한 유동성을 필요로 함.

당사의 유동성리스크의 관리목표는 당사의 모든 채무상환을 적기에 지급할 수 있어야 하며 불리한 시장상황에서도 모든 투자기회에 대한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것임. 당사는 현시점까지도 중대한 유동성리스크를 경험한 적은 없음.

당사는 예금자나 기타 권리자들의 실질적 또는 잠재적 예금 인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충분히 보유함으로써 유동성을 유지하고 있음. 당사는 매일 유동성 상태를 관리하고, 수시로 이자부자산이나 또는 유가증권에 투자되지 못하는 현금보유량을 제한함으로써 당사의 유동성리스크 관리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하고 있음.

당사는 자금소요충족의 탄력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유동성의 다양한 원천을 유지하고 있는바, 당사는 주로 개인 및 법인고객의 예금과 콜론 시장(만기 90일 미만의 단기대출시장)참여 및 사채를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고 있음.

또한 당사는 단기차입부채와 장기자산을 기초로 한 현금흐름구조를 사용함으로써 유동성을 관리함.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당사의 신규 대출과 투자유가증권이 1년 이상의 만기를 가지고 있는 데 반하여, 당사의 원화표시 정기예금의 신규 계약만기는 평균적으로 11개월 정도임.

당사는 금융위원회의 규정에 따라서 원화 및 외국환 계정에 설정된 한도 내에서 유동성리스크를 관리함.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이 원화 유동성비율을 최소 100%로, 외화 유동성비율을 최소 85%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국민은행의 자금부는 매일의 당사의 원화 및 외국환 익스포저에 대한 유동성현황을 점검하고, 자금조달 및 운용을 위한 매월 계획을 재무전략협의회에게 보고함. 국민은행의 재무전략협의회는 이자율 변동, 예금, 대출 및 증권의 만기구조 등에 관하여 논의함.

2010.12.31. 현재 국민은행 원화 계정의 잔존만기 1개월 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1개월 이내 자산의 비율은 126.13%이고,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자산의 비율은 95.24%임.

국민은행 경영관리그룹의 재무관리부는 국민은행의 리스크관리위원회에는 분기별로, 국민은행의 재무전략협의회에는 월별로 이와 같은 제한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보고하여야 함.

운영리스크 관리

개관

당사는 운영리스크를 바젤II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 절차, 인력 및 시스템 혹은 외부적 요인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포함하여 당사의 자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당사의 영업상 생길 수 있는 모든 재무적 또는 비재무적 리스크를 포함(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금리리스크, 유동성리스크를 제외)한 광의적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음. 당사의 운영리스크 관리의 목적은 각종 규제요건들을 충족하는 것 이외에도, 경영진들과 전체 직원들에게 강력한 리스크 관리 문화의 확산, 내부통제 강화, 프로세스의 개선, 시의 적절한 의사결정지원 등을 통하여 내부적인 지원을 하는 것에 있음.

현재 당사는 당사의 은행자회사인 국민은행을 통하여 운영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으며, 국민은행은 다음과 같은 바젤II의 고급측정법에 의해 운영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음.

- “손실분포기반 VaR”와 “시나리오 기반 VaR”를 사용하여 분기별 운영리스크 VaR 산출 및 주요위험지표(KRI)를 통한 운영리스크 모니터링
- 업무 프로세스의 위험과 통제레벨을 평가하고 개선계획을 제안할 수 있는 월별 내부통제-운영리스크 통합 자가진단(혹은 CSA) 수행
- 내/외부 손실데이터 수집 및 분석
- 심각한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익스포저를 평가하는 시나리오 분석 수행
- 운영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수립한 보험전략과 관련된 보험업무의 수행
- 비상상황에 대비한 업무 연속성 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의 수립
- 전행 차원의 운영리스크 정책과 절차의 개선
- 직원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각 사업부서의 운영리스크 담당직원 지원
- 경영진에 대한 운영리스크 보고

또한 국민은행은 모든 자회사, 전부서 및 지점에 내부통제 책임자들을 두고 있으며, 이로써 각 사업본부에 대한 운영리스크를 적절하게 모니터링하거나 관리할 수 있음.

내부통제

당사는 운영리스크를 모니터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정책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으며, 당사의 조직을 통틀어 안정적이고 잘 관리된 운영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고안된 통제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당사의 각 자회사는 그룹차원의 내부통제 원칙에 따라 각 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수립하고 있음. 당사 감사위원회, 감사부 및 준법지원부는 당사의 자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과 관련하여 각 자회사를 모니터하고 자문을 제공함. 당사 감사위원회는 5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된 독립적 기구임. 감사위원회는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시스템과 영업절차의 효과와 효율성을 평가하고 그러한 시스템과 절차에 대한 자회사의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함. 아울러, 경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사 재무제표의 신뢰도를 평가함(외부감사인의 활동을 통한 평가 포함). 자회사는 자사의 운영과 내부통제시스템 및 영업절차에 대한 준수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발견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조치를 당사의 감사위원회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는 준법감시담당임원(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함.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보고 결과에 기초하거나 감사위원회가 발견한 문제점 내지 잠재적 문제점에 대하여 수시로 자회사에게 감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자회사의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감사위원회는 당사의 감사부, 준법지원부 및 외부감사인과 정기적으로 교류함. 이로서 주주와 투자자,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당사의 재산을 보호함.

당사의 감사부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이행함으로써 감사위원회가 당사의 회계 및 사업운영을 모니터하고 각 자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관리를 감독하는 것을 지원함.

-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이행된 전반적인 영업에 관한 종합감사 및 선택된 영업분야에 대한 부문감사를 포함한 일반감사와,
- 사고발생 또는 취약점이 많은 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담당 집행임원이 필요하다고 간주하거나 당사의 이사회, 집행임원 또는 금융감독원과 같은 감독당국에 의한 요청으로 이행되는 특별감사

금융감독원은 당사의 경영실태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리스크 관리, 신용감독 및 유동성과 같은 당사의 특정 분야에 대해서 부문검사를 실시함.

국민은행의 내부 감사부서는 영업감사부와 경영감사부의 2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음. 위 두 부서는 국민은행의 감사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이며 경영목표달성을 지원함. 리스크분석시스템(RAS, Risk Analysis System)을 활용하여 국민은행 영업점 운영을 감사하고 있으며, 사업부문의 리스크와 절차를 평가하여 리스크가 높은 분야에 감사역량을 집중하는 BMP(Business Measurement Process)감사 방법론에 따라 리스크 중심의 감사로 본부 및 자회사의 운영을 감사하고 있음.

최근의 감독방향에 부응하고자 국민은행의 내부 감사부서는 위험기반의 감사기법을 도입함으로써 선진감사시스템과 가치부가적인 내부감사를 실시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당사의 준법지원부는 모든 직원들이 관련된 법과 규정들을 준수할 수 있도록 법규준수시스템을 운영함. 이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법규준수 프로그램의 입안·관리에 관한 사항, 법규준수에 관한 임직원교육, 내부통제제도 프로세스 개선에 관한 사항 등임.

법률적 리스크

법률적 리스크를 운영리스크의 일부로 볼 수 있으며, 당사의 고객과 사업 상대방의 의무이행의 불확실성이 법률 리스크를 만들고 있음. 관련 법령과 규정의 변화도 당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바, 당사의 기존 금융사업영역에 있어서도 한국 내 법규 관련 환경이 변화하는 정도와 금융사업을 규제하는 많은 신규 법규에 대한 판례 부재로 말미암아 법률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으며, 당사의 신규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기존 판례가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률리스크가 더 높다고 할 수 있음.

IT시스템 운영리스크

잠재적 재해 대항 능력을 갖춘 IT시스템과 IT시스템의 무결성은 당사의 지속적 운영에 필수적이므로, 당사는 재해 복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당사는, IT시스템 관련 운영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 전산센터에 여러 개의 CPU를 장착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CPU 중 어느 하나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CPU가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멀티CPU시스템을 구현하였음. 이 시스템은, 원거리에서 데이터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백업하여, CPU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심각한 중단 없이 정상적인 운영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함. 당사는 그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시스템 장애나 사이버 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인터넷상의 거래를 세 개의 분리된 데이터처리센터를 통해서 처리하고 있음.

당사는 현재, 국민은행의 영업점과 메인 IT센터의 재해복구 시스템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재해복구 테스트를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음. 당사의 재해복구 역량은 카드 및 콜센터 거래를 포함하며 여러 기타 운영과도 관련됨. 국민은행 내부적으로는 IT서비스운영부가 모든 전산 네트워크 프로세스 및 IT시스템을 모니터링하며, 영업점에서 보고된 모든 이상 지연이나 불규칙성을 모니터링하여 보고함. 또한 IT기획부는 전체 정보 보안 시스템의 일일 모니터링을 담당함.

Item 12. 지분증권 이외의 증권에 대한 설명

서비스 수수료 및 비용 청구

예탁계약의 조건에 따라서, ADS의 보유자는 예탁기관에 일정한 서비스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예탁기관에 발생한 비용, 세금 및 정부의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함. 기타 원문의 서비스 수수료 및 비용 청구 부분은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예탁기관의 당사에 대한 비용 지급 내역

예탁기관이 상장 수수료 등 ADS 관련 비용을 당사에 지급한 내역은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Item 13. 채무불이행, 배당금 지체, 연체 : 해당사항 없음.

Item 14. 증권 보유자의 권리 및 수익의 사용에 대한 중대한 변경 : 해당사항 없음.

Item 15. 통제와 절차

공시 통제와 절차

당사는 2010.12.31. 현재 최고경영자 및 최고재무책임자의 감독과 참여 하에 공시통제 및 절차의 효과성에 대하여 평가하였음.

재무보고 내부통제 관련 경영진의 연례 보고서

당사의 경영진은 재무보고 내부통제를 구축하고, 유지할 책임을 부담함. 당사 경영진의 참여와 감독하에, 당사는 내부통제 기준(COSO 기준)에 따라 재무보고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음. 당사의 재무보고 내부통제는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부합하는 공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의 신뢰성에 대하여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

이러한 당사의 재무보고 내부통제는, ① 당사 자산의 거래 및 처분에 대한 기록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상세하고 정확하게 유지하고, ②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부합하는 재무제표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 거래가 기록되고, 당사의 수입과 지출이 당사의 경영진과 이사진의 승인 하에 이루어졌다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며, ③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승인받지 않은 자산의 취득, 사용 또는 처분을 예방하거나 적시에 적발할 수 있다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는 정책과 절차를 포함함.

당사의 재무보고 내부통제는, 그 내재적인 한계로 인하여, 재무제표상의 오류를 방지하거나 적발할 수 있다는 절대적 확신을 제공하지 않으며, 또한 미래시점까지의 효과성 추론은 향후 환경 변화 때문에 통제가 적절하지 않게 되거나, 정책과 절차에 대한 준수의 정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위험을 안고 있음. 당사의 평가에 기초하여, 당사의 경영진은 재무보고 내부통제가 2010.12.31. 현재 효과적이라고 결론 내렸으며, 이러한 경영진의 평가는 2010.12.31. 당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한 독립적인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음.

재무보고 내부통제 변경

2009년도에 당사의 재무보고 내부통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 변경이 없었음.

Item 16. 보류 항목

Item 16A. 감사위원회의 재무전문가

당사의 이사회는 사외이사이자 감사위원회 위원인 고승의, 이종천을 Item 16A의 의미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독립적인 재무전문가로 결정하였음.

Item 16B. 윤리강령

당사는 미국 증권거래법상의 Form 20-F, Item 16B에서 정의된 윤리강령을 채택함. 당사의 윤리강령은 현재 당사의 최고경영자, 최고재무책임자,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기타 임원 및 직원에게 적용됨. 당사의 윤리강령은 당사의 홈페이지 <http://www.kbfn.com>에 게시되어 있음. 당사가 윤리강령의 조항을 개정하는 경우, 혹은 해당 조항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당사는 그러한 개정 혹은 포기의 내용을 상기 웹사이트에 공개할 것임.

Item 16C. 주요 회계 수수료 및 서비스

감사 및 비감사 수수료

2009년 및 2010년 기간 중 당사의 독립적인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에게 지급한 수수료 총액은 각 5,030백만원, 8,536백만원임. 기타 원문의 감사 및 비감사 수수료 부분은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감사위원회 사전 승인 정책 및 절차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U.S. GAAP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서비스에 관하여 당사의 외부 감사인들을 고용하는 것을 사전 승인하고 있음.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 감사인들의 독립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간주하는 일정한 기타 서비스들을 외부 감사인들이 당사의 자회사들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사전 승인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이 정책에 따라,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당사 자회사들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관하여 당사 자회사들의 각 감사위원회에게 사전에 승인하였음: (i) 한국 GAAP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감사와 한국 법률 및 규정에 따른 내부통제와 관련된 서비스; (ii) 일반적인 세무 자문업무; (iii) 실사서비스; (iv) 증권모집과 관련한 컴포트 레터(comfort letters)의 발행업무; 그리고 (v)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기타 다른 감사 서비스나 허용된 비감사 서비스를 사안별로 사전 승인해야 함.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가 공표한 Regulation S-X의 Rule 2.01(c)(7)(i)(C)의 최저 예외조항(de minimis exception)에 따른 비감사 서비스를 사전 승인한 적이 없음.

Item 16D. 감사위원회에 관한 상장기준으로부터의 면제 : 해당사항 없음.

Item 16E. 당사 및 관계회사에 의한 주식 매수

당사 및 미국증권거래법에서 정한 “관계회사”는 이 연간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되는 기간 동안 당사의 지분증권을 매수하지 않았음.

Item 16F. 등록회사의 공인회계사의 변경: 해당사항 없음.

Item 16G. 기업지배구조

기업지배구조 비교: 표50)

미국 NYSE가 요구하는 기업지배구조 기준과 국내 관련법규상 기준에 따른 당사의 기업지배구조의 상이점에 대해서는 표50) 참조.

Item 17. 재무제표 : 해당사항 없음.

Item 18(재무제표), Item 19(별첨) 부분은 원문의 Exhibit을 참조.